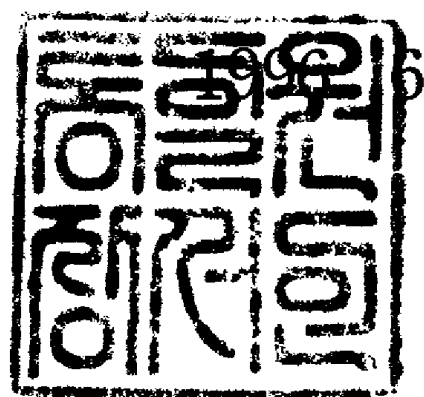


# 獨逸統一 6年，東獨再建 6年

— 附 錄 —



統 一 院

## 책 을 내 면 서

공산주의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변혁 과정에서 동·서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7년, 그리고 독일이 통일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부란덴브르크 문을 열고 평화통일의 큰 길을 연 시민혁명의 승리에 이어, 독일인들에게 찾아 온 또 하나의 도전은 『내적 통합의 완성』이라는 과제였습니다.

실패한 동독체제의 급속한 전환과 재건을 통해 『하나의 독일』을 향한 제2의 통일작업은 동독국민들에게는 철저한 자기변화를 의미하였고, 서독국민에게는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인고의 과정이었습니다.

한때 통일당시의 환희와 기대는 엄청난 후유증과 비용발생에 따라 실망으로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6년이 지난 오늘의 독일국민들은 통일의 결실을 하나씩 거둬들이면서 더 큰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구 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신연방주 경제는 어느정도 회복되었고, 양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도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제도적 통합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40년동안의 공산잔재를 청산하는 작업도 금세기내에는 모두 완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가지 어려운 과제는 소위 『마음속의 분단』이라고 하는 심리적 장벽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분야는 적어도 한세대는 흘러가야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독일의 내적 통합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온 자유민주주의, 연방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 등의 제원칙은 사실상 통일이전부터 서독의 기본이념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독일 연방내무부는 1993년 6월 통합을 위한 독일인들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그 기본원칙들을 담은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을 발간한 바 있으며, 1995년 7월에는 이에 대한 수정판을 펴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원은 1993년도 보고서를 『독일통일백서』라는 제하로 발간한데 이어, 이번의 수정판을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이라는 제목하에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책자의 발간을 위한 번역에는 주독대사관 통일관실의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이 책자의 전반에는 통일을 성취하고 내적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으로 접근한 독일인들의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후 내적 통합과정에서 동·서독인들이 보여준 인내와 나눔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을 준비하고 완성해야 할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책당무자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1996. 6. 10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권 오 기

## 附 錄 目 次

1. 통일조약 제12조에 압각한 구동독 조약관련 정부간 협의.....	1
2. 1990년 10월 3일 이후의 신설 제외공관 .....	5
3.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에 즈음한 연방국방장관 게어하르트 스톨텐베익 박사의 일일명령.....	7
4. 1993년 5월 5일자 초당적 연방위원회에 제출된 연방군의 동독지역내 주둔계획에 관한 제4차 최종보고서.....	9
5. NVA군인(구동독 인민군)의 연방군으로의 편입.....	18
6. “통일과정의 연방군”에 관한 각종 일반문헌(발췌).....	25
7. 신연방주내 연방군, 통일독일군.....	26
8. 신연방주의 구축: 연방정부의 급부제공개관 .....	30
9. 동독의 법원, 동독의 고등법원.....	33
10. 동독의 법관, 검사, 군법무관 .....	34
11. 동독의 군(Kreis)법원 및 지구(Bezirk)법원 법원서기.....	35
12. 1990년도(통일시점까지) 동독의 법규정들 .....	36
13. 신연방주 재판관할권의 구조.....	38
14. 법원의 접수사건수 비교 .....	39
15. 신연방주(및 베를린 일부) 법원의 사건처리 현황.....	40
15a. 민사사건 .....	43
15b. 가사사건 .....	46
15c. 형사사건 .....	49
15d. 복권관련사건 .....	52
15e. 판결파기관련사건 .....	53
15f. 노동법관련사건 .....	54
15g. 행정법관련사건 .....	57
15h. 사회법관련사건 .....	59
15i. 재정법원관련사건 .....	61

16.	신연방주의 법조인 현황 및 배치: 판사, 검사, 사법고위직 .....	62
17.	판사 및 검사의 자격 심사 .....	63
18.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재판소, 연방대검찰청의 통일관련 전문연구원 및 재판부 증설 현황 .....	64
19.	법조인 교육 .....	65
20.	각 지역별 사법보조관 .....	68
21.	1990년 10월 3일 이후 법원서기들의 임용.....	69
22.	신연방주의 사법보조관 및 유사 사법보조관의 현황 및 배치.....	70
23.	사법보조관의 교육지원생의 수 .....	71
24.	사법직 중급공무원의 교육 .....	72
25.	구동독 판사의 보수교육비용 분담에 관한 행정합의 (1990년/91년) .....	73
26.	신연방주 변호사의 수 .....	78
27.	신연방주 공증인의 수 .....	78
28.	주(州) 법률로서 계속 유효한 구동독법률의 확정 및 수정시 연방법무부의 지원 .....	79
29.	계속 유효한 공무원법 관련 경과규정 .....	80
30.	신연방주 공무원 임용현황 .....	81
31.	신연방주 행정을 위한 인력지원에 따른 연방 공직자 파견 .....	82
32.	연방국경수비대 조직 .....	87
33.	구동독에서의 사형선고, 집행에 관한 보고서 .....	88
34.	원본에 누락	
35.	베를린장벽에서의 구동독 국경수비대에 의한 고의적 살인행위에 대한 판결과 관련 .....	107

36.	구동독 최고법원(대법원) 자료.....	140
37.	공산주의 폭정의 희생자를 위한 명예회복 선언 .....	189
38.	Kohl 수상과 Jelzin 대통령의 불법피해자 복권관련 공동성명 (’92. 12. 16) .....	191
39.	1991년에서 1995년까지 동기소의 미결건수 현황.....	192
40.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신연방주 법률행정구축을 위해 지출된 연방자원프로그램에 의한 재원.....	193
41.	1990년부터 구연방주 노무직, 사무직 및 광부 연금보험의 수입 .....	194
42.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구연방주 노무직, 사무직 및 광부 연금보험의 지출 .....	195
43.	1990년부터 신연방주 노무직, 사무직 및 광부 연금보험의 수입 .....	196
44.	1990년부터 신연방주 노무직, 사무직 및 광부 연금보험의 지출 .....	197
45.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구연방주 노무직 및 사무직 연금보험의 예상 수입과 지출 .....	198
46.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신연방주 노무직 및 사무직 연금보험의 예상 수입과 지출 .....	199
47.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소비·분배 지수.....	200
<del>48.</del>	<del>동·서독지역 및 전체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대비.....</del>	<del>203</del>
<del>49.</del>	<del>신연방주 경제현황.....</del>	<del>204</del>
<del>50.</del>	<del>소득관련 지표 .....</del>	<del>205</del>
<del>51.</del>	<del>신연방주 취업자 현황.....</del>	<del>206</del>
52.	고용촉진법에 따른 월별 보험불입 의무자 현황 .....	212

53.	신연방주 실업현황.....	213
54.	생계비에 대한 물가지수.....	219
55.	원평균 소득 : 노부직 및 사부직.....	221
56.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수입 및 지출.....	222
57.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현황.....	223
58.	동독지역 주민 1인당 및 취업자 1인당 투자현황.....	224
59.	신연방주 부문별 투자현황.....	225
60.	"지역경제구조개선" 특별사업 및 EU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 투자 촉진 .....	226
61.	대외무역현황 .....	230
62.	생산업의 생산지수 및 신연방주(동베를린 포함)의 기업체.....	234
63.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현황지수, 생산지수 및 취업자 수.....	236
64.	건설업의 수주현황지수, 생산지수 및 취업자 수.....	240
65.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기업등록 및 취소 .....	244
66.	도·소매업의 매출고 및 취업자 지수.....	248
67.	에너지공급업 생산지수 및 취업자 수.....	250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에너지 소비 .....	252
68.	1989년도 구동독지역 농업의 구조 .....	253
69.	구동독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의 연도별 생산 현황 .....	254
70.	구동독지역 농경지의 중급속 오염실태 .....	255
71.	풍수해로 침식된 경작지(농경지 전체에 대한 비율) .....	256
72.	1994년 신연방주 기업농의 구조 .....	256
73.	1993/94년 신연방주의 기업형태별 농업의 구조 및 실적 .....	257



74.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교통분야 주요 투자 .....	258
75.	독일통일교통계획(선로부문) .....	259
76.	전철화현황 .....	260
77.	신연방주 및 베를린에서의 연방고속도로 건설 실적 .....	261
78.	신연방주 화물교통 및 여객교통의 발전 .....	262
79.	1985-1994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전화 가설 .....	263
80.	동·서독지역 인구 100명당 전화가설 비교 .....	264
81.	신연방주를 위한 긴급 환경 지원 .....	265
82.	환경오염 경감을 위한 시범계획(1990-1994) .....	266
83.	1992년 가을 중금속 및 유기물로 인한 신연방주 지하수 오염실태 .....	267
84.	식수오염 실태 .....	269
85.	환경 인프라스트럭처 : 하수처리/민간경제적 해결방안 .....	271
86.	하천오염 실태 .....	272
87.	엘베강 오염감소 추이('89년, '93년 비교) .....	274
88.	신연방주 가정 쓰레기 적치장 현황 .....	275
89.	신연방주 도시건설 및 지역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	276
90.	신연방주의 노동시장에 관한 기초자료 .....	278
9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재원조달 .....	279
9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인력 .....	282
93.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동·서독지역 사회복지 예산추이 .....	284
94.	1994년 7월 1일 기준 서독지역의 연금 현황 .....	286

95.	1994년 7월 1일 기준 동독지역의 연금 현황 .....	287
96.	이산화유황가스(SO <sub>2</sub> ), 일산화탄소(CO), 분진 방출 현황.....	288
97.	이산화유황가스 방출 연간 평균치('86-'93).....	290
98.	오존 발생 연간 평균치('88-'94).....	291
99.	Gelsenkirchen과 Leipzig의 이산화유황가스 방출 연간 평균치 비교 .....	292
100.	Dresden과 Gelsenkirchen의 대기오염 비교.....	293
101.	쓰레기 적치장 "Antonie"(Bitterfeld 소재 Chemie회사)의 단면도 .....	294
102.	1990년 12월 4일자 환경보호에 관한 EC 특별규정중 독일에서 적용될 과도기 조치에 관한 지침.....	295
103.	1990년 12월 4일자 역내시장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EC 특별규정중 독일에서 적용될 과도기 조치에 관한 EC각료이사회의 지침 .....	305
104.	신연방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주제별 안내책자 및 출판물.....	308
105.	신연방주의 생태학적 연구대상지역(연방환경부 보고, 1995년 2월 기준) .....	310
106.	지금까지 파악된 환경오염 가능지역의 수 .....	311
107.	각 주별 군사관련 환경오염 가능주분지 .....	312
108.	고용촉진법 제249h조에 입각한 신연방주내 임금보조금.....	313
109.	신연방주의 고귀한 자연유산 .....	314
110.	독일의 국립자연공원(1994년 1월 1일 기준).....	318
111.	독일의 생물서식권 보호구역(1992년 12월 31일 기준).....	319
112.	독일의 자연경관 보호지역 (1992년 12월 31일 기준).....	320
113.	구동독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	321

114.	독일연방공화국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	322
115.	독일의 막스플랑크협회가 있는 곳 .....	326
116.	프라운호퍼협회가 있는 곳.....	327
117.	대형연구시설이 있는 곳.....	328
118.	청색목록연구소의 소재지.....	329
119.	독일내 연구와 개발임무를 수행하는 연방시설의 소재지 .....	330
120.	1991-1993년 문화분야 과도기 재원조달 (각 주별 지원재원).....	331
121.	구동독 39개 일간지 발행기관 .....	332
122.	구동독공산당 15대 지역신문.....	334
123.	1991년 이후 연방내무부 체육예산을 통해 동독지역 정상급 선수 체육분야를 위해 투입된 재원 내역 .....	336
124.	신연방주 임신상담소·성교육상담소의 수 .....	338
125.	신연방주 가족휴양지에 대한 연방재원의 승인내역 .....	338
126.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구조(1994년) .....	339
127.	동·서독지역 청소년청 기관장이 판단한 삼각한 청소년 문제 .....	340
128.	신연방주 청소년 여가선용 활동 .....	341
129.	신연방주 청소년 소비성향.....	342
130.	청소년 실업율.....	342
131.	동·서독지역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343
132.	OSCE구조 및 기구 .....	346
133.	신구모델 대비 EU의회 각 국별 의석수 .....	347

134.	구소련지역 및 CIS의 개혁과정에 대한 독일의 각종 지원.....	348
135.	통구권에 대한 독일의 지원 .....	351
136.	新방명보호법 .....	353
137.	UN 평화유지대책에 대한 독일의 참여.....	361

<부록 1>

統一條約 제12조에 입각한 舊東獨 조약관련

정부간 협의 -1995. 3. 8 현재-

국 가	효력 消滅 조약의 數	협의원료일자	公知 일자	헌법전색인 (BGBl. II)	효력 未消滅 조약의 數
1. Afghanistan					24
2. Ägypten	37 1 4	11.02.92 27.05.92 12.04.94	29.05.92 18.12.92 09.11.94	1992 S. 451 1993 S. 70 1994 S. 3762	2
3. Albanien	13	22.07.93	26.11.93	1994 S. 15	4
4. Algerien	31 3	08.04.92 14. u. 22.4.94 VN	18.04.92 29.08.94	1992 S. 380 1994 S. 2654	4
5. Angola	37 1	28.02.92 12.04.94	06.03.92 24.05.94	1992 S. 239 1994 S. 729	3
6. Äquat. guinea	1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11.06.92	1992 S. 496	0
7. Argentinien	9	14.09.92	22.12.92	1993 S. 132	0
8. Äthiopien	25 5	09.02.92 28.01.94	19.03.92 24.05.94	1992 S. 269 1994 S. 799	0
9. Australien	8	August 91	22.10.91	1991 S. 1075	0
10. Bangladesch	12	26.04.93	04.06.93	1993 S. 929	0
11. Belgien	22	12.08.92	21.08.92	1992 S. 984	0
12. Benin	6	14.09.92	27.10.92	1992 S. 1147	0
13. Bolivien	4	14.09.92	08.01.93	1993 S. 140	0
14. Botsuana	1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24.04.92	1992 S. 383	0
15. Brasilien	8 1	20.11.92/26.02.93 22.10.93	02.04.93 23.11.93	1993 S. 850 1993 S. 2403	0
16. Bulgarien	49 10 6 2 2	24.07.91/VN 25.09.91   11.4.94 VN	02.09.91 25.11.91 26.08.92 15.04.94 27.10.94	1991 S. 1019 1991 S. 1151 1992 S. 949 1994 S. 721 1994 S. 3749	7
17. Burundi	2	19.06.92	09.09.92	1992 S. 1062	0
18. Chile	9	04.09.92	28.03.94	1994 S. 480	0
19. China	52	09.10.91	12.12.91	1992 S. 64	5
20. Costa Rica	2	12.08.92	06.01.93	1993 S. 139	0
21. Cote d'Ivoire	1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24.04.92	1992 S. 383	0
22. Dänemark	15 7	25.11.91 08.03.94	15.10.92 24.05.94	1992 S. 1115 1994 S. 798	3
23. Dschibouti	1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24.04.92	1992 S. 383	0
24. Ecuador	6	03.09/16.10.92	23.06.93	1993 S. 1095	0
25. El Salvador	1	07.09.92	30.12.92	1993 S. 137	0
26. Fidschi	1	schriftl. Kons. beendet	28.10.92	1992 S. 1154	0
27. Finnland	10 11	26.06.91 15.09.91	02.09.91 12.12.91	1991 S. 1023 1992 S. 63	0
28. Frankreich	14	16.06.92	02.07.92	1992 S. 515	0
29. Gabun	1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11.06.92	1992 S. 496	0
30. Gambia	1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11.06.92	1992 S. 496	0

국 가	효력 유발 조약의 數	협약완료일자	공지 일자	민법전석인 (BGBI.II)	효력 未유발 조약의 數
31. Ghana	13 1	14.09.92 17.08.92	19.10.92 21.06.93	1992 S. 1121 1993 S. 1003	5
32. Grenada	5	03.09.92	21.12.92	1993 S. 127	0
33. Griechenland	17	01.05.92	04.06.92	1992 S. 435	0
34. Guinea	19 1	29.01.93 22.04.94 VN	08.02.93 31.10.94	1993 S. 712 1994 S. 3751	1
35. Guinea-Bissau	7	02.09.92	08.02.93	1993 S. 714	1
36. Guyana	7	27.09.93	02.03.94	1994 S. 396	6
37. Indien	15	04.03.93	01.06.93	1993 S. 923	3
38. Indonesien	8 1	21.10./04.11.92 11.4.94 VN	05.05.93 08.12.94	1993 S. 888 1995 S. 27	1
39. Irak	27	15.01.94	24.05.94	1994 S. 730	14
40. Iran	8	20.01.93	05.05.93	1993 S. 889	0
41. Irland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42. Island	6 1	schriftl. Kons., beendet 24.09.92	28.08.92 28.12.92	1992 S. 955 1993 S. 134	0
43. Italien	19	25.01.93/22.02.93	21.04.93	1993 S. 853	0
44. Jamaika	1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24.04.92	1992 S. 383	0
45. Japan	3	18.12.90/VN	01.08.91	1991 S. 921	0
46. Jemen	29 25	08.01.91 31.08.94 VN	11.06.92 26.10.94	1992 S. 456 1994 S. 3745	0
47. Jordanien	5	07.09.92	08.01.93	1993 S. 141	0
48. Jugoslawien	17 8	21.03.92	20.07.92	1992 S. 576 1994 S. 1030	9
49. Kambodscha	25	14.10.94 VN.	10.01.95	1995 S. 125	5
50. Kamerun	8	08.09.92	17.09.92	1992 S. 1089	0
51. Kanada	9	02.05.92	05.08.92	1992 S. 603	0
52. Kap Verde	5 2 2	15.02.93 21.04.93 07.02.94	21.04.93 21.06.93 24.05.94	1993 S. 851 1993 S. 1004 1994 S. 730	0
53. Kenia	1	schriftl. Kons. beendet	28.10.92	1992 S. 1154	0
54. Kolumbien	5	15.11.91	06.02.92	1992 S. 175	0
55. Komoren	1	schriftl. Kons., beendet	28.10.92	1992 S. 1154	0
56. Kongo	26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28.08.92	1992 S. 1010	3
57. Korea, Demokratische Volksrepublik					53
58. Kuba	62	02.11.91	21.04.92	1992 S. 396	28
59. Kuwait	15	24.06.92	25.01.93	1993 S. 189	0
60. Laos	17 5	24.08.91 24.03.94 VN	25.11.91 31.10.94	1991 S. 1148 1994 S. 3750	5
61. Lesotho	2		28.08.92	1992 S. 986	0
62. Libanon	3 1	09.09.92/07.06.93 12.04.94	12.07.93 24.05.94	1993 S. 1260 1994 S. 729	1
63. Liberia		keine Kons. wegen Bürgerkrieg			3

국 가	효력 상해 조약의 數	협약완료일자	公知 일자	민법전석인 (BGBI.II)	효력 未상해 조약의 數
64. Libyen	21 1	12.02.93 25.04.94 VN	08.11.93 31.10.94	1993 S. 2208 1994 S. 3752	0
65. Lichtenstein	1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24.04.92	1992 S. 383	0
66. Luxemburg	9	19.07.91	25.11.91	1991 S. 1150	0
67. Madagaskar	15	31.07.92	21.04.93	1993 S. 852	0
68. Malaysia	4	14.10.92/7.4.93	05.05.93	1993 S. 890	0
69. Malediven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70. Mali	9	08.09.92	08.02.93	1993 S. 213	0
71. Malta	5	28.02.92	01.04.92	1992 S. 347	0
72. Marokko	8	05.03.92	01.04.92	1992 S. 348	0
73. Mauretanien	2	06.09.92	26.05.93	1993 S. 907	0
74. Mauritius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75. Mexiko	11+14	08.11.91	12.11.92	1992 S. 1179	1
76. Mongolei	36	06.04.92	09.04.92	1992 S. 376	16
77. Mosambik	48 3	24.03.92 27.04.93	04.08.92 19.07.93	1992 S. 616 1993 S. 1270	9
78. Myanmar	5	16.09.92/18.03.93	05.05.93	1993 S. 891	0
79. Namibia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80. Nauru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81. Nepal	2	schriftl. Kons.. beendet	28.10.92	1992 S. 1154	0
82. Neuseeland	2	29.09.92	05.05.93	1993 S. 892	0
83. Nicaragua	15 3	14.11.91 13.01.93	06.02.92 02.04.92	1992 S. 187 1993 S. 792	12
84. Niederlande	15	13.08.91/VN	15.04.94	1994 S. 616	0
85. Niger	1 1	schriftl. Kons.. beendet	28.10.92 05.05.93	1992 S. 1154 1993 S. 894	0
86. Nigeria	10	10.08.92	15.09.92	1992 S. 1063	0
87. Norwegen	7	17.09.91	12.12.91	1992 S. 68	2
88. Obervolta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89. Österreich	27	10.06.92	17.06.92	1992 S. 497	0
90. Pakistan	7	06.06.92/20.04.93	05.05.93	1993 S. 893	0
91. Panama	3		25.08.92	1992 S. 948	0
92. Papua-Neug.	1	schrift. Kons.. beendet	28.10.92	1992 S. 1154	0
93. Peru	9	21.10.92/17.12.92	02.09.93	1993 S. 1883	3
94. Philippinen	5	08.09.92	11.11.92	1992 S. 1178	0
95. Polen	114 6 2	09.04.92  (Berichtigungsbe- kanntmachung)	21.06.93 16.12.93 15.04.94	1993 S. 1180 1994 S. 249 1994 S. 725	62
96. Portugal	6	03.09.91	05.12.91	1991 S. 1431	0
97. Ruanda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98. Rumänien	13 32 4 1	18.04.91/VN 22.05.91 16.09.92	01.08.91 28.10.91 18.12.92 15.04.94	1991 S. 929 1991 S. 1114 1993 S. 71 1994 S. 723	2

국 가	효력 海減 조약의 數	협약완료일자	공지 일자	민법전색인 (BGBl.II)	효력 未海減 조약의 數
99. Sambia	9 1	01.02.92 25.04.94 VN	09.03.92 31.10.94	1992 S. 242 1994 S. 3751	7
100. San Marino	1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24.04.92	1992 S. 383	0
101. Sao Tomé + Príncipe	4	06.05.93	12.07.93	1993 S. 1220	5
102. Schweden	19 3	20.09.91 11.04.94	09.12.91 19.05.94	1992 S. 10 1994 S. 728	0
103. Schweiz	10	Dez.1991	19.12.91	1992 S. 92	0
104. Senegal	1	24.09.92	11.06.92	1992 S. 496	0
105. Seschellen	2	20.07.92	01.09.92	1992 S. 1021	0
106. Sierra Leone	4	09.10.92	27.10.92	1992 S. 1148	0
107. Simbabwe	12 1	28.02.92 25.04.94 VN	19.06.92 31.10.94	1992 S. 499 1994 S. 3753	1
108. Singapur	1	11.05.91	01.08.91	1991 S. 922	0
109. Somalia		noch keine Kons..			4
110. Sowjetunion	61 177 79 4 1	03.06.91/VN 06.12.91 29.04.92 6.7.93	01.08.91 18.12.91 20.07.92 16.08.03 15.04.94	1991 S. 923 1992 S. 24 1992 S. 585 1993 S. 1821 1994 S. 722	26
111. Spanien	8	09.04.92	18.04.92	1992 S. 379	0
112. Sri Lanka	10	11.09.92	19.01.93	1993 S. 143	1
113. Sudan	11	31.10.93	19.05.94	1994 S. 727	1
114. Suriname	1	24.09.92 schriftl. Kons. beendet	24.04.92	1992 S. 383	0
115. Syrien	26 4	24.07.91/VN 03.03.94 VN	02.09.91 07.11.94	1991 S. 1002 1994 S. 3754	15
116. Tansania	13 1	04.02.92 22.04.94 VN	26.03.92 31.10.94	1992 S. 290 1994 S. 3752	2
117. Thailand	4	27.08.91	31.10.91	1991 S. 1128	0
118. Togo	1	schriftl. Kons. beendet	28.10.92	1992 S. 1154	0
119. Trinidad./Toba.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120. Tschad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121. Tschechosl.	83 6 1	04.04.91 04.04.91	23.10.91 02.04.93 28.04.94	1991 S. 1077 1993 S. 767 1994 S. 726	39
122. Tunesien	14	25.09.92	22.01.93	1993 S. 184	0
123. Türkei	10	01.04.92	29.08.92	1992 S. 514	1
124. Uganda	7	schriftl. Kons. beendet	25.05.93	1993 S. 906	3
125. Ungarn	81 5 1 3	16.05.91 25.06.92 07.07.94 VN	15.08.91 12.08.92 15.04.94 26.19.94	1991 S. 957 1992 S. 619 1994 S. 724 1994 S. 3744	3
126. Uruguay	3	08.09.92/12.02.93	26.05.93	1993 S. 908	0
127. Vanuatu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128. Venezuela	4	21.11.91	06.02.92	1992 S. 176	0
129. Vereinigte Staaten	13 3	22.04.91 24.03.94 VN	01.08.91 27.10.94	1991 S. 928 1994 S. 3748	5



국 가	효력 消滅 조약의 數	협약완료일자	公知 일자	민법전색인 (BGBl. II)	효력 未消滅 조약의 數
130. Vereinigtes Königreich	17	17.04.91/VN	01.08.91	1991 S. 931	0
131. Vietnam	32 19 2	19.08.91/VN 16.04.93 08.11.93/VN	09.12.91 01.06.93 29.08.94	1992 S. 8 1993 S. 910 1994 S. 2475	37
132. Westsamoa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133. Zaire	6	16.07.92	28.03.94	1994 S. 481	0
134. Zentr. afr. Rep.	3	07.09.92	22.01.93	1993 S. 175	0
135. Zypern	2	23.03.92	26.05.92	1992 S. 419	0
SUMME	2135				447

<참고사항>

폴란드: 1994. 4. 15자 최종 공지사항에는 이미 1993. 6. 21자 공지사항  
이었던 2가지 합의사항이 보완된 것임. 따라서 이 2가지 합의사  
항은 효력이 소멸된 조약의 수로서 가산되지 않았음.

<부록 2>

1990년 10월 3일 이후의 新設 在外公館

날짜	개설 / 승격	閉鎖 / 格下
4. 10. 1990	Generalkonsulat Breslau	
4. 10. 1990	Generalkonsulat Danzig	
4. 10. 1990	Generalkonsulat Stettin	
4. 10. 1990	Generalkonsulat Preßburg	
4. 10. 1990	Generalkonsulat Minsk	
1. 11. 1990	Botschaft Ulan Bator	
12. 11. 1990	Generalkonsulat Fünfkirchen	
21. 1. 1991	Schutzmachtvertretung Pjöngjang	
19. 3. 1991	Schutzmachtvertretung Phnom Penh	
10. 4. 1991	Generalkonsulat Ho-Chi-Minh-Stadt	
1. 6. 1991	Generalkonsulat Krakau	
1. 7. 1991	Verlegung GK Liverpool nach Manchester	

국 가	효력 消滅 조약의 數	협약완료일자	公知 일자	민법전색인 (BGBl. II)	효력 未消滅 조약의 數
130. Vereinigtes Königreich	17	17.04.91/VN	01.08.91	1991 S. 931	0
131. Vietnam	32 19 2	19.03.91/VN 16.04.93 08.11.93/VN	09.12.91 01.06.93 29.08.94	1992 S. 8 1993 S. 910 1994 S. 2475	37
132. Westsamoa	1	24.09.92	24.04.92	1992 S. 383	0
133. Zaire	6	16.07.92	28.03.94	1994 S. 481	0
134. Zentr. afr. Rep.	3	07.09.92	22.01.93	1993 S. 175	0
135. Zypern	2	23.03.92	26.05.92	1992 S. 419	0
SUMME	2135				447

<참고사항>

폴란드: 1994. 4. 15자 최종 공지사항에는 이미 1993. 6. 21자 공지사항  
이었던 2가지 합의사항이 보완된 것임. 따라서 이 2가지 합의사  
항은 효력이 소멸된 조약의 수로서 가산되지 않았음.

<부록 2>

1990년 10월 3일 이후의 新設 在外公館

날짜	개설 / 승격	閉鎖 / 格下
4. 10. 1990	Generalkonsulat Breslau	
4. 10. 1990	Generalkonsulat Danzig	
4. 10. 1990	Generalkonsulat Stettin	
4. 10. 1990	Generalkonsulat Preßburg	
4. 10. 1990	Generalkonsulat Minsk	
1. 11. 1990	Botschaft Ulan Bator	
12. 11. 1990	Generalkonsulat Fünfkirchen	
21. 1. 1991	Schutzmachtvertretung Pjöngjang	
19. 3. 1991	Schutzmachtvertretung Phnom Penh	
10. 4. 1991	Generalkonsulat Ho-Chi-Minh-Stadt	
1. 6. 1991	Generalkonsulat Krakau	
1. 7. 1991	Verlegung GK Liverpool nach Manchester	

날짜	개설 / 승격	폐업 / 격하
1. 9. 1991	Anhebung Konsulat Porto in ein GK	
2. 9. 1991	Botschaft Riga	
2. 9. 1991	Botschaft Tallinn	
2. 9. 1991	Botschaft Wilna	
9. 9. 1991	Ständige Vertretung Rom I.O.	
6. 11. 1991	Generalkonsulat Laibach	
15. 1. 1992	Anhebung GK Laibach in Botschaft	
15. 1. 1992	Anhebung GK Zagreb in Botschaft	
7. 2. 1992	Anhebung GK Kiew in Botschaft	
14. 2. 1992	Anhebung Phnom Penh in „Vertretung“	
13. 3. 1992	Anhebung GK Minsk in eine Botschaft	
8. 4. 1992	Generalkonsulat Skopje	
13. 4. 1992	Botschaft Tiflis	
6. 5. 1992	Botschaft Taschkent	
8. 7. 1992	Außenstelle Oppeln	
17. 9. 1992	Botschaft Baku	
17. 9. 1992	Botschaft Bischkek	
20. 10. 1992	Botschaft Almaty	
31. 10. 1992	Botschaft Chisinau	
1. 12. 1992	Botschaft Eriwan	
1. 1. 1993	Anhebung GK Preßburg in eine Botschaft	Herabstufung GK Aden in Außenstelle
1. 4. 1993	Anhebung Konsularagentur Hermannstadt in Generalkonsulat	Herabstufung Botschaft N'Djamena auf Geschäftsträgerebene 1. 5. 1993
10. 6. 1993	Botschaft Duschanbe	Herabstufung Botschaft Bandar Seri Bega- wan auf Geschäftsträgerebene 1. 9. 1993
		Herabstufung Botschaft Port Moresby auf Geschäftsträgerebene 1. 9. 1993
3. 10. 1993	Anhebung Vertretung Phnom Penh in Botschaft	Konsulat Cordoba/Argentinien 1. 9. 1993
23. 11. 1993	Botschaft Aschgabat	Konsulat Concepcion/Chile 1. 9. 1993
16. 12. 1993	Anhebung GK Skopje in eine Botschaft	Generalkonsulat Lüttich 30. 9. 1993
1. 4. 1994	Ständige Vertretung bei der KSZE (OSZE)-Wien	Außenstelle Mersin/Türkei 1. 4. 1994, Generalkonsulat Fünfkirchen 30. 4. 1994
1. 7. 1994	Botschaft Sarajewo	Generalkonsulat Edmonton 30. 9. 1994
8. 8. 1994	Vertretungsbüro Jericho	Generalkonsulat Salzburg 30. 11. 1994
10. 10. 1994	Außenstelle Temesvar	Konsulat Durban 30. 11. 1994
1. 12. 1994	Generalkonsulat Nowosibirsk	Generalkonsulat Lille 30. 11. 1994
1. 12. 1994	Generalkonsulat Saratow	Botschaft Maseru 15. 12. 1994

### <부록 3>

## 1990년 10월 3일 獨逸統一에 즈음한 聯邦國防長官 게어하르트 스톨텐베익 박사의 일일명령

독일민족은 1990년 10월3일을 기해 다시금 한 국가로 統一되었다. 비록 40년 이상 강제적으로 분단되었지만 獨逸人들의 一體感이 단절될 수는 없었다. 舊東獨 주민 대다수는 독일연방공화국에의 加入에 동의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基本法의 정치제도를 따를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 모두는 自由·民主·法治主義 憲法이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統一獨逸은 서방세계의 공고한 일원이 되었다. 우리는 유럽공동체의 일원임과 동시에 NATO와 WEU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로써 우리 軍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설정되고 의무가 과생된다. 이와같은 의무는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를 自律的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받아들인 것이다. 이 의무는 곧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일부이다.

오늘날, 독일을 위해 헌신한다는 사실은 自由와 民主主義와 法治主義 國家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유럽 및 북아메리카 동맹국과 협력함을 뜻한다. 이는 또한 이제 막 체결한 諸條約을 근거로 소련과 중·동부 유럽과 협력할 것임을 뜻한다.

우리의 국토분단은 克服되었다. 이제부터 思考와 感情을 단절시키는 것들을 克服하는 것이 시급하다. 兵士들은 비장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안된다.

긴장이 제거됨으로써 軍備縮小에 합의할 수 있었고 우리 聯邦軍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統一獨逸의 병력은 수년내로 37만명으로 감축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독지역은 물론 東獨地域에서도 兵力減縮이 따를 것이다.

舊東獨人民軍의 장병과 군속을 聯邦軍으로 인수하기 위한 중대한 선결

요건과 총체적 조건은 統一條約에 명시되어 있다. 많은 舊東獨軍 소속인  
원들이 統一條約에 따라 연방군에 편입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나머지는 향후 수개월내에 國家條約에 명시된 대로 轉役해야 될 것  
이다. 본인은 이들이 自拋自棄하지 말고 新聯邦州의 經濟再建에 적극 同  
參하는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와같은 업  
칭난 전환과정을 資格認定을 통해 지원하려 한다. 본인은 聯邦軍에서 군  
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고 책임있게 새  
로운 임무를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 본인은 또한 聯邦軍 장병들이  
새로 영입된 장병들을 私心없이 긍정하게 대하고 戰友愛를 발휘하면서 이  
들을 이끌어 주어 신속한 융화가 달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본인은 10월 3일을 기해 연방국방장관으로서 統一獨逸의 장병에 대한  
命令權과 指揮權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基本法에 명시된 國防  
規定이 獨逸全域에 통용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國家全域에 대해 헌법이 군에 부여한 임무를 충실하  
수행할 수 있도록 단일한 聯邦軍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融和와 兵力減縮過程에서도 그렇다.

이를 위해 우리는 軍과 民間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질서정연  
한 인계인수와 融和가 가능할 것임은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 聯邦軍의 미래  
가 보다 활기있게 발전될 것이다.

## <부록 4>

### 1993년 5월 5일자 超黨的 聯邦委員會에 제출된 聯邦軍의 東獨地域內 駐屯計劃에 관한 제4차 최종 보고서

獨逸聯邦 국방장관은 1993년 1월19일 超黨的 聯邦委員會에 聯邦軍의 東獨地域 駐屯計劃에 관한 보고서를 전달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1년도 주둔결정을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1993년 3월 3일 연방국방장관은 駐屯計劃의 조정을 위한 각종 제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제안들은 이미 1992년 12월 15일과 1993년 2월 12일 각 州政府와 議會次元의 고위결정기구에게 意見提示用으로 전달되었었다. 주둔을 추가적으로 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基本指針이 개진되었다. 新聯邦州內 군사시설들의 現況把握, 軍 構造에 대한 세부검토와 적용 등에 관한 수정과 보충이 요구되었다. 연방의 재정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聯邦軍 역시 國家財政의 堅實化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하여 聯邦軍의 임무에 방향을 맞추면서 사업과 투자용 지출은 엄격하게 企業經營의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될 것과 오로지 聯邦軍의 임무수행과 연관된 분야에 지출이 되도록 하였다. 東獨地域內 聯邦軍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각종 조치는 聯邦軍의 單一化를 위한 방법론적 기본노선에 입각하여 主權領域의 확장에 따르는 병력의 分散配置에 均衡이 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국가통일이 달성되고 主權領域이 5대 新聯邦州로 확장됨에 따라 聯邦軍은 새롭게 分散配置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연방 국방장관의 과제와 목표는 年末까지 聯邦軍의 평화시 常備兵力을 37만명으로 감축할 것과 聯邦軍 행정기구를 새로 배치시킬 것과 統一獨逸의 聯邦軍을 일원화시키는 일 등이었다.

1993년 3월 30일자 최종 주둔결정에 따르면 37만명의 병력중 일단 약 312,000명이 舊서독지역, 58,000명이 구동독지역에 주둔하다가 2005년부터

는 약 304,000명이 舊서독지역(해외파견 포함), 66,000명이 구동독지역에 分散駐屯하도록 되어 있다. 즉 앞으로 병력의 18%만이 新聯邦州에 주둔하게 된다. 향후 병력의 규모와 구조가 변화되면 이 比率도 변할 것이다.

地方兵務支援行政은 감축된 병력의 규모와 변화된 병력의 駐屯配置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地方兵務支援行政이 재편됨에 따라 현재의 판단으로는 舊聯邦州에 약 51,000개소, 新聯邦州에 약 11,000개소의 편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확정은 郡(Kreis)兵務行政支援處와 주둔지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별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地方兵務行政에 근무하게 될 民間人의 약 5분의 1은 앞으로 新聯邦州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병력의 규모가 변화되면 兵務行政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

국가통일이 달성된 날, 中間級 연방기관인 제VII 兵務支援行政處 (Strausberg)와 舊東獨地域의 최고 군사령부로서 육군 군단급인 동부지역사령부(Potsdam) 등이 창설되기 시작했다. 地域司令部の 임무는 앞으로 陸軍作戰司令部로 이관되어 聯邦全域에 걸쳐 수행될 것이다. 이로써 東獨地域 군단, 지역사령부는 하나의 軍團司令部로 재편되었다.

이미 다수의 指揮機構가 다음과 같이 新聯邦州內에 설치되었다.

- 2개의 地域 衛戍司令部和 師團司令部(Neubrandenburg와 Leipzig):  
新聯邦州內 군사관련 사안의 對民窓口
- 15개의 방위지역사령부: 위수지내 중급 관할행정구역의 軍事的 窓口
  - . Erfurt, Suhl, Gera (Thüringen州內)
  - . Leipzig, Chemnitz, Dresden (Sachsen州內)
  - . Halle, Magdeburg (Sachsen-Anhalt州內)
  - . Cottbus, Potsdam, Frankfurt/Oder(Brandenburg州內)
  - . Schwerin, Neubrandenburg, Rostock(현재 Bad Doberan으로 옮김)  
(Mecklenburg-Vorpommern州內)

. Berlin(동시에 지역관할 위수사령부임)

평화시 독일전역에는 동일한 주둔지나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위와같은 주방어군의 여단사령부들로 편성된 防衛司令部가 운용된다. 新聯邦州의 경우 Erfurt, Frankenberg(지금까지 Chemnitz), Potsdam, Schwerin으로 예정되어 있다.

- 6개의 郷土防衛旅團: Schwerin, Eggesin, Potsdam, Weißenfels, Erfurt, Frankenberg(아직까지 Dresden임)
- 空軍은 제5비행사단 사령부를 Strausberg에 설치, 최종 주둔지는 Berlin으로 계획되어 있음
- 海軍의 경우 상급사령부로서 동독지역 Rostock에 해군청을 배치함.

聯邦軍의 중앙군사기관들에 추가하여 1개의 자원입대접수처, 1개의 聯邦軍 통신·정보체계 外廳, 4개의 分所가 딸린 軍事情報部隊 1개 부대가 東獨地域內에 설치되었다.

앞으로 총 10개의 聯邦軍 綜合病院이 설치될 계획인 바 그 중 2개가 Berlin과 Leipzig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계획된 4개의 聯邦軍 중앙의무연구소 중 한개가 Berlin에 건립 중이다.

발틱海로부터 Erzgebirge산악지대와 동쪽의 Oder강에 이르기까지 新聯邦州內 방방곡곡에 병력주둔지가 散在해 있다. 1991년 전반기 병력주둔지를 확정할 때 가능한 한 각 州政府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적 장점과 특성이 참작되었다. 舊東獨人民軍의 軍 施設들이 즉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병력주둔시 이를 활용하였다. 구소련군 서부 주둔병력의 군 시설들과 Berlin에 주둔하던 집령국들의 군 시설들은 단계적으로 처분되었고 극소수의 경우에만 聯邦軍에 의해 활용되었다. 동구권과 마주치는 가장 동쪽의 EU 국경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내에 끌고루 군 부대들이 배치되었다.

舊聯邦州의 경우 병력의 위수지가 전국적으로 분산배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지역 병무행정 근무처와 관련시설, 사법보조관, 중군사제(牧



師)의 신앙상담, 聯邦軍의 체육육성, 군수산업분야 등 역시 新聯邦州에 골고루 分散配置되었다.

전술한 제VII 병부행정처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특기할 만 하다.

- 방위지구 급양처(Berlin)
- 19개의 주둔지역관할 행정지원처 (Bad Salzungen, Erfurt, Sondershausen, Chemnitz, Dresden, Leipzig, Halle, Beelitz, Brandenburg/Havel, Cottbus, Doberlug-Kirchhain, Potsdam, Strausberg, Eggesin, Neubrandenburg, Trollenhagen, Rostock, Schwerin, Stralsund)
- 聯邦言語學校의 1개 分校(Naumburg)
- 26개의 郡(Kreis)兵務事務所(Neubrandenburg, Rostock, Schwerin, Stralsund, Cottbus, Eberswalde, Frankfurt/Oder, Neuruppin, Potsdam, Aschersleben, Halle, Magdeburg, Stendal, Wittenberg, Erfurt, Gera, Jena, Mühlhausen, Suhl, Bautzen, Chemnitz, Dresden, Leipzig, Zwickau, Berlin에 2개)
- 7개의 직업지원단(제VII 전문분야): Neubrandenburg, Schwerin, Cottbus, Potsdam, Halle, Erfurt, Chemnitz, 소재 郡兵力 보충국에 설치되어 新聯邦州內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전문직업 相談 및 직업관련 支援
- 3개의 聯邦軍 전문학교(Berlin, Naumburg, Neubrandenburg)
- 4개의 카톨릭 종군사제 신앙상담처. 상담영역은 각 주간 국경을 초월함. 舊東獨地域 군단사령부와 지역사령부내 카톨릭 대주교 관부처(Potsdam)와 그 산하 군부처(Neubrandenburg, Leipzig, Bad Frankenhause)가 있음. 현재 東獨地域內 新教 종군목사의 신앙상담은 東獨地域 8대 州 教會側이 당분간 종군신앙상담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
- 聯邦軍의 4대 추가 體育支援團. 1993년부터 2개가 新聯邦州에 추가 설치됨.

東獨地域 전역에 걸쳐 새로운 聯邦軍 근무처와 단위부대의 일부가 구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舊聯邦州에 있는 각종 근무처와 교육훈련시설 및 단위부대 전체가 新聯邦州로 移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대된 주권영역에 알맞는 聯邦軍의 單一化가 달성되도록 하고 新聯邦州를 특별히 배려하는 가운데 연방기구의 分散이 고르게 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병력주둔지가 현재 서독지역으로부터 移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聯邦安保政策아카데미(본부, 안보정책분야의 각부처 고위급 최고 연수기관)를 Bonn에서 Berlin으로 이전
- 陸軍將校學校 전체를 Hannover와 München으로부터 Dresden으로 이전
- 서독지역에 있던 8개 군사학교, 또는 교육기관들을 통합하여 Stralsund에 신설되는 海軍技術學校로 이전
- 제II聯邦軍 행정지원학교를 Siegen에서 Berlin으로 이전
- 聯邦軍 情報·通信아카데미를 Waldbröl에서 Strausberg로 이전
- 聯邦軍 사회과학연구소를 München에서 Strausberg로 이전
- 軍 정신전력학교의 일부를 外廳으로서 Koblenz에서 Strausberg로 이전
- 軍歷史研究處를 Freiburg에서 Potsdam으로 이전
- 공군박물관을 Appen에서 Berlin-Gatow로 이전
- 1개 전투기전대를 Sobernheim/Pferdsfeld에서 Laage, Güstrow지역으로 이전
- 1개 혼성공군수송기 전대를 Wunstorf과 Ahlhorn에서 Holzdorf-Ost 및 Brandis/Kreis Elbe-Elster로 이전
- 1개 지대공미사일전대를 서독지역의 9개 주둔지로부터 Ladenburg/Kreis Barnim과 Sanitz/Rostock로 이전

- Wilhelmshaven의 해군청을 Rostock으로 이전
- 고속합 전단: 서독지역 전개기지 3곳으로부터 Warnemunde로 이전
- 野戰軍法會議의 각 1개 심판부불 Potsdam(이미 이전), Rostock, Leipzig로 이전

종전과 다른 불가피한 비용과 부담은 국가전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分擔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聯邦軍 이전은 있을 수 없다. 원래 계획되었던 다음과 같은 移轉計劃은 「國家財政健實化措置」의 일환으로 취소되었다.

- Hamburg에서 Niederlehme로 이전하려던 聯邦軍 병참학교
- Falkenberg로 이전하려던 1개 전투기전대
- Euskirchen주둔 聯邦軍 군악대 Big Band의 Postdam 이전계획

독일전역에 걸친 병력의 一元化는 단위부대의 일부, 근무처, 주둔지의 배치 외에, 군사훈련장의 설치를 통해 일단락 된다. 독일연방의회는 1993년 1월 14일 記名投票를 통해 군사훈련장에 관한 방안을 多數決로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한 부담의 분배방안이 실현되었다. 國家財政을 堅實化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으로 Wünsdorf(Krs. Spreewald-Dahme)에 설치하기로 했던 군사훈련장 설치계획은 포기되었다. 그 결과 新聯邦州內에 있는 60개 이상의 훈련장 중 앞으로 10개만이 聯邦軍 군사훈련장으로 變更될 예정이다. 나아가 Lehmin(Krs. Potsdam-Mittelwark)와 Jüterbog(Kreis Teltow-Plaming)에 있는 군사훈련장 중 1개 훈련장은 앞으로 건설될 Berlin-Brandenburg 초대형 공항건설 때문에 폐쇄될 가능성이 많다.

聯邦軍은 근무처와 단위부대의 일부를 창설하고 이전하면서 그리고 군사훈련장을 설치하면서, 독일 각주에 一元化된 聯邦軍이 골고루 分散配置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分散配置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근무처나 단위부대의 이전시점은 새로운 軍 基地로서 필요한 군사시설이 완성되고 가족용 주택이 충분히 마련될 때에야 결정된다.

中期的 計劃으로 주로 55개 군 기지에 聯邦軍 근무인력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약 9,300동의 가족용 주택을 1995년까지 건설하기 위해서는 연방교부금 약 13억 5천만 DM이 투입되어야 한다. 3개의 주둔지에 약 210동의 주택건설을 위해 1993년도 투입액으로 약 7천만 DM이 계획되어 있고 1993년에 착공되었다.

統一條約 제21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舊東獨人民軍이 사용하던 약 2,250건의 不動産이 연방국방부 재산으로 이양되었다. 그 중 약 590건은 長期的으로 聯邦軍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不動産들은 統一條約 의정서 제12호의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1992년 8월6일자로 그 중요한 내용이 각 州政府에 명확히 통지되었다. 1993년 3월 30일 병력주둔 추가조정을 위한 각부처 방안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 통보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이 준비 중이다. 사용이 불필요한 약 1,250건의 不動産은 그 동안 연방 一般財産으로 양도되었거나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것이다.

어느 지역에 聯邦軍이 주둔하게 되면 지역경제를 위해 중대한 의의가 있게 된다. 舊聯邦州에서 쌓은 경험에 따르면 聯邦軍 100명이 있는 1개 부대가 주둔할 경우 연간 약 300만 DM이 그 지역으로 유입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액수는 東獨地域 주둔지인 경우, 前述한 건설비용 때문에 초기에는 더 높다.

나아가 聯邦軍은 각종 상이한 직업에 거쳐 質 좋은 일자리와 직업교육훈련용 일자리를 제공한다. 新聯邦州內 兵營建築을 위한 막대한 건설수요 역시 의미가 크다.

구동독군의 군 시설들은, 특히 막사, 부속건물, 난방시설 등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현재상태에서 舊서독의 기존 표준상태에 걸맞는 平準化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재원의 막대한 부분이 해당지역 中小企業體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수공업과 산업분야 등이 구축될 수 있다.

1991년도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대형건설사업	7,410만 DM
소형건설사업	2,610만 DM

시설개량사업비                    3억 2,760만 DM

東獨地域 재건                    1억 1,990만 DM

-----

총 계                                5억 4,700만 DM

이 액수는 당초계획보다 1억 2,770만DM을 상회하는 것임.

1992년 지출액은 아래와 같다.

대형 건설사업                    1억 5,340만 DM

소형 건설사업                    2,600만 DM

시설개량사업비                    8억 8,690만 DM

舊東獨地域 재건                    2,000만 DM

-----

총 계                                10억 8,630만 DM

이것은 당초계획(6억 2,500만 DM)보다 4억 6,120만 DM이 더 건설사업을 위해 추가적으로 轉用되었다. 최소 10억 DM에 달하는 건설비용을 투입한다는 목표는 분명히 달성되었다.

1993년도 계획목표는 총 11억 2,500만 DM이다.

대형건설사업                    6억 5,000만 DM(주택건설 포함)

소형건설사업                    2,500만 DM

시설개량사업비                    4억 5,000만 DM

긴급 재정절약조치(전반적인 축소지출, 聯邦財政健實化프로그램)로 인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다음과 같다.

대형건설사업	3억 8,000만 DM(주택건설 포함)
소형건설사업	2,500만 DM
시설개량사업비	5억 DM

연간 10억 DM 이상의 예산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東獨地域 건설사업을 위한 총재원(160억 DM)은 오로지 長期的으로만 충당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계획의 분산 및 포기 등)가 설정되어야 한다.

## <부록 5>

### NVA 軍人(舊東獨人民軍)의 聯邦軍으로의 편입

#### I. 인력통합의 방안

1. 統一條約(부록I, 제XIX장 B항목, 제II절 Nr.2)에 명기되어 있는 軍法上의 규정이 舊東獨人民軍이 聯邦軍으로 통합되는 법적근거이다.
2. 병역의무 수행자들의 경우 獨逸統一과 동시에 軍法과 兵役義務 施行法이 적용된다. 舊東獨人民軍 시절에 수행한 군무는 聯邦軍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군부로 간주된다. 특히 兵役義務 수행분야의 人力統合은 계급이라는 관점에 따라 단순하게 구체화되었으므로 특별규정이 불필요했다. 과거 舊東獨人民軍 시절에 병역의무를 시작했던 모든 병력은 轉役되었다.
3. 統一條約은 舊東獨人民軍의 시한제 군부군인과 직업군인의 통합이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수행되도록 하고있다.
  - 제1단계: 전역대기 또는 계속 군부
  - 제2단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군무하는 병력으로 인수
  - 제3단계: 계속 군부하도록 인수

統一條約의 軍法 관련규정의 효력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II. 統一條約 발효당시 舊東獨人民軍의 인력상황

4. 1990년 10월3일 獨逸統 一의 달성과 동시 연방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은 약 90,000명의 舊東獨人民軍을 인수하였다.
  - 39,000명의 의무복무 군인
  - 1,000명의 전역대기 장병
  - 50,000명의 계속 근무자
  
5. 전역대기 장병들의 근무관계는 종료되었다. 이로써 이들은 더이상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는다. 이들은 生計費로서 待機狀態補助金을 받았다. 대기상태의 기간은 총 6개월 (50세이상의 장병은 9개월)로 제한되었다.
  
6. 계속근무자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의 계급을 유지하였고 이들에게는 軍法의 개별규정만이 적용되었다. 이들에게는 임시聯邦軍 계급장이 부착된 聯邦軍 군복을 착용하였다. 이들의 급료는 당분간 1990년 10월 2일 현재 유효하던 舊東獨人民軍 봉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1991년 7월부터 제2차 俸給過渡期施行令이 적용되었는 바, 이 시행령을 통해 新聯邦州內 연방봉급지급법의 도입이 실현되었다. 50,000명의 계속근무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000명의 참모 장교
  - 15,000명의 기타 장교
  - 14,000명의 고급하사관(중사급 이상)
  - 9,000명의 일반하사관(중사급 이하)
  - 3,000명의 사병
  
7. 계속근무자들에게는 별도의 轉役規定이 적용되었다. 계속근무자들의 약 절반정도가 自意로 轉役하였다.



### III. 2년간 時限附勤務軍人으로서의 인수

8. 舊東獨人民軍의 장기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의 경우 2년간 時限附勤務軍人으로서 인수되는 방법을 통해 처음으로 軍法の 관계규정에 입각한 군부관계가 설정될 수 있었다.

2년간 時限附勤務軍人으로서의 지원은 1990년 10월 3일부터 전역대기 군인들은 물론 계속군부자들에게 가능했다. 舊東獨人民軍에서 장기군부하던 인력의 절반이 2년간 時限附勤務軍人이 되겠다고 지원했으며 그 중 장교가 11,700명, 하사관이 12,300명, 사병이 1,000명 이었다.

9. 1991년도 인방예산 항목 14에 따르면 新聯邦州 출신 장병의 임용과 인수를 위한 정규정원은 총 30,000명이었다. 그 중 25,000명은 長期的 일자라고 5,000명은 한시적이었다. 충원의 기준은 新聯邦州에 새로 구축되는 단위부대와 군부처의 구조에 우선적으로 따랐다.

10. 지원자를 개인심사할 때 軍人法에 명기된 적성, 자질, 능력의 판단기준이 철저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階級引受 施行令에 따라 최종적으로 취득한 聯邦軍 계급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階級引受 施行令에 따라 계획된 적용기준을 참작하는 가운데 과거 舊東獨 인민군으로서 기초교육, 직업훈련교육, 군부기간, 진급분류, 직책 등과 聯邦軍의 장병으로서의 해당 진급과정이 비교되었다. 나아가 장병들은 모두 새로운 경력집단으로 분류되었다. 轉役의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는 과거 東獨의 國家保衛部(슈타지 MfS 내지 AfNS)에서 군부했거나 정치장교였거나 군사정보대 군부자 등이었다. 이 당시 사실관계 파악 및 헌법에 대한 신의성실성 검토는 대체적으로 지원서류와 자기소개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11. 1990년 12월1일에 제2차로 임용이 실시되었으며 약간명의 추가임용을 제외한 인수활동은 1991년 여름에 완료되었다.
12. 총 18,000명의 舊東獨人民軍이 2년간의 時限附勤務軍人으로 인수되었는 바, 그 중 장교가 6,000명, 하사관이 11,200명, 사병이 800명 이었다. 장교의 경우 단지 절반만이 引受되었음에 비해 하사관과 사병은 약90%가 인수되었다. 하지만 젊은 장교의 경우 하사관 신분으로 재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는 바, 이 경우 과거 인민군 근무시 활동이 聯邦軍의 하사관 경력과 비슷할 때이다. 중사급 이상 하사관 500명 이상이 이 방법으로 재출발했다.

#### IV. 職業軍人으로서의 인수/ 時限附勤務軍人의 근무기한 延長

13. 職業軍人으로서의 인수 및 時限附勤務軍人의 2년 이상 근무기한 延長은 곧 군인의 신분에 관한 한 舊東獨人民軍의 聯邦軍으로의 人的統合이 완료되었음을 뜻한다.
14. 중사급 이하 하사관과 사병의 경우, 이미 1991년 중반에 근무기한 연장 가능성의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특별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특별규정이란 - 舊聯邦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무의 의무가 적용될 때 임용절차를 면제하는 규정을 말한다. 신청서에 대한 판정은 통일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15. 2년간 時限附勤務軍人으로 인수된 중사급 이하 하사관 3,300명과 병사 800명 중 현재 2,600명의 중사급 이하 하사관과 200명의 사병이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이들을 위한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舊東獨에서는 下士官이라는 제도가 없었고 장기근무사병이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

다. 이 문제는 兵役未畢者를 編入, 병역의무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많이 개선되었다.

16. 장교와 상사급 이상 하사관을 직업군인으로서 인수하거나 時限附勤務軍人으로서 그 근무기한을 연장할 경우, 기존의 (임용)면제조치를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었다.

舊東獨人民軍 소속요원의 時限附勤務軍人으로서 근무기한 연장 및 직업군인으로서의 인수에 관한 표준원칙(BMVg-PII-Az02-06-00/5-1991.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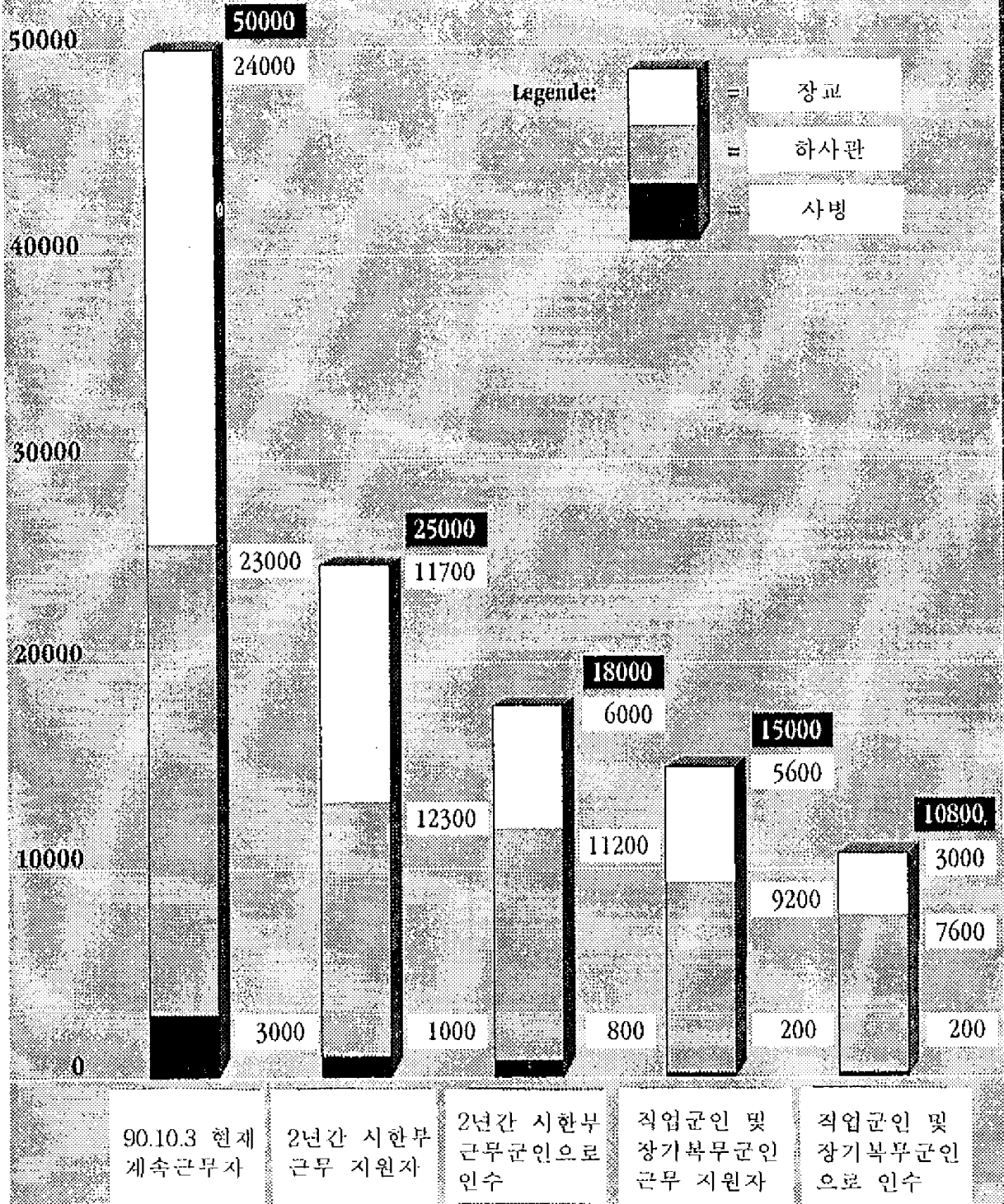
17. 2년간 時限附勤務軍人으로서 인수된 舊東獨人民軍 장병들은 1991년 10월1일부터 해당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었다. 5,600명의 장교와 거의 7,000명에 달하는 상사급이상 하사관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하였다.

18. 1992년 2/4분기와 3/4분기에 인력관리기관을 통해 수행된 選拔會議의 중요한 기초는 지원자에 대한 특별관정 및 경력평가였다. 이는 1992년 2월 각 부대장에 의해 설정되었다. 나아가 직업군인으로서 선발대상인 장교의 경우, “인적 적성에 관한 超黨的 適性檢査委員會”의 심사가 따랐다.

19. 선발회의가 종결되면서 3,000명 이상의 장교와 5,000명의 상사급 이상 하사관이 직업군인 또는 時限附 長期勤務者가 되었다. 이로써 前述한 중사급 이하 하사관 약 2,600명과 200명의 병사를 합쳐 무려 11,000명이나 되는 舊東獨人民軍 장병들이 聯邦軍으로 편입되었다.

20. 병력현황에 관한 관점에서 볼 때 병력의 統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근무관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완료되었다. 경력관리 규정상 軍人法과 軍人經歷施行令의 관계규정이 적용된다. 경력변경자에 대한 선발절차와 같은 일부분야의 경우, 인수된 장병들의 권익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예외규정이 적용되었다.
21. 인수한 舊東獨人民軍의 절반이상은 경력과 관련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進級되었다. 이 장병들은 進級選拔節次를 밟으면서 일정 과도기 동안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聯邦軍 근무기간이 아직 짧고 아직 판정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급선발대상인 예산상의 定規定員은 新·舊聯邦州 출신 進級豫定者의 수가 선발절차를 거치면서 완전히 平準化되기까지 공정하게 분배되었다.
22. 총 6,100명의 장교와 6,900명의 상사급 이상 하사관에 대한 과거 Stasi 連累關係를 조회하기 위해 “Stasi 文書管理廳”에 자료열람을 요청했다. 제공된 자료를 근거하여 時限附勤務軍人 또는 職業軍人으로 우선 2년간 근무하였던 약 500명의 장교와 900명의 하사관은 強制轉役되었다. 이들이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 舊東獨人民軍의 통합



## <부록 6>

### “統一過程의 聯邦軍”에 관한 각종 일반문헌

#### (발췌)

DIETER FARWICK(Hrsg.):

Ein Staat-eine Armee.

Report Verlag, Frankfurt, 1992

HANS PETER VON KIRCHBACH/MANFRED MEZERS/VICTOR  
VOGT:

Abenteuer Einheit. Zum Aufbau der Bundeswehr in  
den neuen Ländern.

Report Verlag, Frankfurt 1992

VOLKER KOOP:

Erbe NVA-Eindrücke aus ihrer Geschichte und den  
Tagen der Wende.2. erweiterte Auflage 1993, Hrsg.

Akademie der Bundeswehr fü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  
Waldbröl

JÖRG SCHÖNBOHM: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Siedler Verlag, Berlin, 1992

## <부록 7>

### 新聯邦州內 聯邦軍, 統一 獨逸軍

1990년 10월3일 이래 聯邦軍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다음과 같은 과제를 부여 받았다.

- 新聯邦州內 聯邦軍의 구축
- 舊東獨人民軍의 인수, 전역, 통합
- 舊東獨人民軍이 보유하던 多量의 무기, 탄약, 기타 물자와 舊東獨人民軍의 기타 무장조직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내각함. 舊東獨人民軍이 남겨놓은 물자로는 약 2,300대의 전차, 9,000대의 장갑차와 특수차량, 5,000문의 대포, 로켓트, 對空방어시스템, 700대의 수송기·전투기·헬리콥터, 192척의 군함, 85,000대의 차량 및 트레일러, 120만톤의 휴대용 화기, 295,000톤의 탄약, 4,500톤의 액체로켓트연료 등 이었음.
- 舊東獨人民軍과 소련군 서부주둔군이 사용하던 不動産의 인수. 이를 자체적으로 이용하든지 재정비하든지 연방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할 지 여부 검토.
- 과거 內獨境界線의 國境守備隊의 인수. 국경차단시설(약 820km에 달하는 철조망, 100개의 관측탑, 약 200km에 달하는 차량통행저지용 참호)의 철거. 國境守備隊의 지뢰제거 및 同 地域은 연방재산으로 이양.
- 구소련군(후일 러시아 서부주둔군)의 철수 지원
- 예컨대 통합초기 통신시설의 이용 및 土地測量 등을 통한 民間行政 지원

이와 동시에 聯邦軍은 1994년 말까지 평화시 상비군으로서 37만명으로 감축되어야 하며 신.舊聯邦州에 미치는 구조와 병력주둔의 과급효과가 고르게 되도록 했다.

구체적인 중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聯邦軍은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解體된 舊東獨人民軍으로서 근무하던 90,000명의 장병과 48,000명의 민간근무자를 인수하였다. 그 중 聯邦軍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인력으로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선발절차를 거치면서 장교 3,000명을 포함한 11,000명에 달하는 장병을 장기복무 군인(시한제) 또는 職業軍人으로서 계속 근무하도록 인수하였다.
2. 인수되지 못한 24,000명에 대해서는 聯邦軍의 職業訓練의 지원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3. 약 48,000명의 군속 고용관계는 당분간 지속되다가 점차적으로 구조상 적합한 약 22,000명만이 계속 근무하였다.
4. 新聯邦州內 聯邦軍은 훌륭하게 구축되고 있다. 陸軍의 경우 제IV군단(Potsdam주둔 東獨地域 군단.지역사령부), 사단사령부와 지역방위사령부(Leipzig와 Neubrandenburg), 新聯邦州內 6개지역(Berlin제외)에 分散 駐屯하는 旅團 등 그 구축이 거의 완료되었다.
5. 空軍의 경우 제2對空 미사일전대의 일부가 이미 Sanitz로부터 Ladeburg으로 이동하였다. 제73 전투기전대의 MIG29의 일부가 1994년 10월 Preschen으로부터 Laage로 이동하였다. 제3 공군비행사단사령부 역시 1994년 10월 Gatow에 신설되었다.



6. 海軍은 해군기술학교를 Parow에 신설했으며 Wilhelmshaven에 있던 海軍廳은 Rostock으로 이전, 고속함 진단의 Rostock 이전에 착수했다. 이로써 新聯邦州內 하부구조가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7. Berlin과 Leipzig 소재 聯邦軍 綜合病院은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8. Strausberg에서는 이미 정신전력학교 일부와 聯邦軍 情報·通信아카데미, 聯邦軍 사회과학연구소, 정신전력학교 제V분야가 자리잡고 활동하고 있으며 Potsdam에서는 Freiburg로부터 移轉된 軍歷史研究所가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9. Strausberg 소재 제VII 방위지구행정처 산하 兵務行政機關의 구축은 골고루 분산, 거의 완료되었다. 21개의 郡單位 병무사무소, 19개 주둔지 행정국, 방위지구 지급국, 방위지구 급양처, 방위지구 피복처, 聯邦軍 전문학교 3개, 연방인이학교 분교 몇 기타

10. 연방 국방장관 스스로 제2군부처를 Berlin의 유서깊은 Beudler-Block에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1944년 7월 20일 Hitler를 암살하려고 남녀들이 저항했던 軍事的 抗拒史와 의식적으로 연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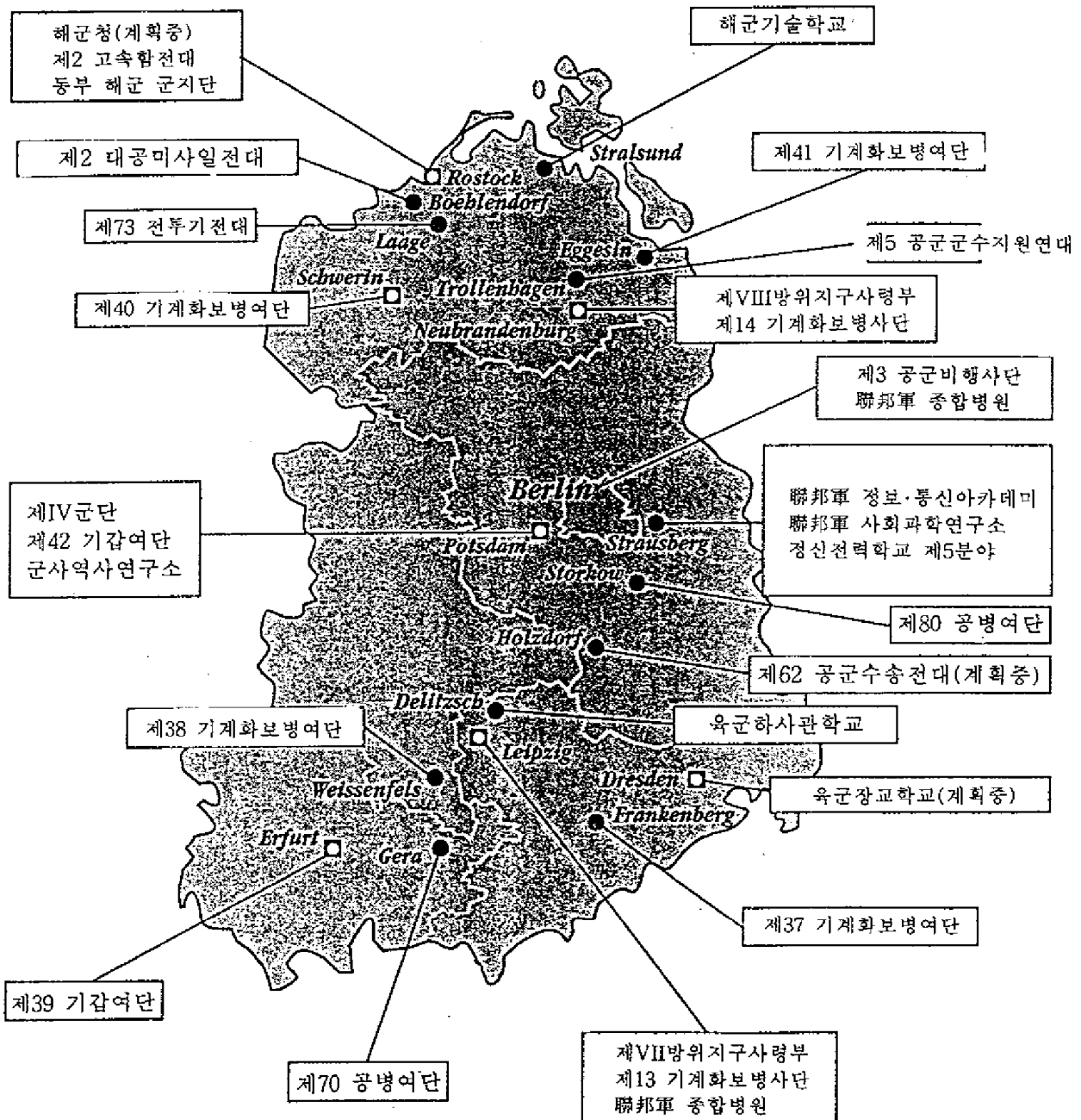
11. 新聯邦州內 하부구조 투자비용은 연간 약 10억 DM에 달한다. 그 중 1993년부터 1996년까지 新聯邦州 주택건설만을 위해 부려 2억 7,500만 DM이 책정되어 있다. 이 재원과 연방건설부의 예산재원을 통해 29개 주둔지에 聯邦軍 소속요원을 위한 주택 약 3,000동이 건설 된다.

聯邦軍은 공익지원조직, 공공보건기구, 종합대학, 기타 인수자격이 있는 기구들에게 舊東獨人民軍이 사용하던 차량, 야전취사시설, 의복과 취사도

구, 발전기, 주거용 선박1척, 위생장비, 大型救命 고무보트, 공작기자재, 각종 소형기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新聯邦州內 聯邦軍 배치도

1995년 6월 현재



## <부록 8>

### 新聯邦州의 구축: 聯邦政府의 給付提供概觀

(1995년 3월1일자 경제·재정정책 현황보고 발췌)

#### 10. 新聯邦州內 聯邦軍 構築過程

- 과거 양독간 경계상의 國境遮斷施設의 철거는 계약대로 1993년 12월31일 완료되었다. 그러나 지뢰의 추가탐지로 과거 양독간 경계의 일부 지역이 아직도 지뢰복파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더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약 135km가 더 탐지되어야 한다. 제거작업은 1995년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 聯邦軍은 舊東獨人民軍이 사용하던 2,288개 不動產 중 우선 405개를 長期的으로 그리고 121개를 臨時로 인수하였다(약 23%). 1994년말까지 1,421개의 不動產이 완전히 그리고 264개의 不動產이 일부로서 연방 一般財產으로 귀속되었거나 信託廳 내지 제3자에게 이양되었다.
- 약 21,500명의 軍屬의 경우, 聯邦軍構造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었다.
- 新聯邦州內 公共行政의 구축은 다음과 같이 聯邦軍에 의해 지원된다.
  - 25명은 Gauck기관으로 전보, 128명은 파견
  - 238명의 인력이 각주 행정관부처로 인력지원을 위해 파견되었으며 그 중 165명은 전보되었다.

- 聯邦未解決財産管理廳으로 6명의 民間人이 파견되었으며 24명이 전보되었다.
- 수십년간 방치되었던 新聯邦州內 토지등기소와 토지관리분야를 위해 지난 2년간 '舊東獨地域 측량지원계획'이 수행되었다 測量業務는 대규모 투자대상지역 및 새로운 건축대상지역에서 불명확한 소유권 관계로 인한 投資障礙가 제거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93년 중 235명의 장병이 투입되었다(주로 지적부대와 포병부대의 측량전문인력). 1994년에 투입된 장병은 188명 이었다(연방비용: 약 500만 DM).

基礎測量의 총 추가수요 중 3분의 1은 聯邦軍에 의해 無償으로 수행되었다. 측량지원에 대한 기관, 주민, 미디어의 인정도는 무척 높았다. 국민 경제적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新聯邦州와 Berlin의 희망에 따라 東獨地域 측량지원활동은 1995년도에도 계속된다.

- 聯邦軍은 각지역 建設手工業 발주를 통해 新聯邦州內 建設業이 순조롭게 출발되도록 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지출 총규모는 약 36억 DM에 달한다.
- 1995년부터 건설부문 지출규모는 연간 10억 DM가 책정되어 있다.
- 新聯邦州內에서 식품구입을 위해 매년 약 3,000만 DM가 지출되고 있다.
- 新聯邦州內 기업체들은 정기적으로 被服發走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1억 8,700만 DM에 상당하는 324건의 發走가 直接, 5,600만 DM에 상당하는 135건의 發走가 하도급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舊東獨의 公共通信網은 전연 쓸모 없었다. 聯邦軍이 舊東獨人民軍의 통신망을 무조건 인수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공부수행을 위해 聯邦軍은 Telekom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했다. 이러한 지원조치는 1993년에 완료되었다.
- 공군은 Erfurt, Holzdorf, Laage에 각각 탐색 및 구조대(SAR)를 운영하고 있다. 해군은 Parow에 탐색 및 구조대를 두고 있다. 나아가 공군은 Jena, Bad Saarow, Schwerin에 각각 헬리콥터 구조대를 운용하고 있다.
- 新聯邦州 북부지역의 郵便配達은 Laage군용비행장에 야간우편물 운송 처리를 위해 군사 항공안전관리요원이 투입됨으로써 훨씬 빨라졌다.
- 공군은 특수공장을 설립하여 직업교육훈련용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 곳에서 고도의 전문인력이 배출된다. 1993년 Holzdorf에 직업교육훈련용 공장이 설치되었으며 이와같은 공장이 1996년 중 Trolleuhagen과 Laage에 설치될 계획이다(下部構造를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시점은 비상임).
- 해군은 1992년부터 Stralsund/Parow에 단기병을 위해 3대 公認 직업교육훈련을 이수시키고 있다. 1992년에는 라디오·텔레비전技士 직업교육훈련이, 1993년에는 정보기술·통신전자技士 직업교육훈련이, 1994년에는 산업전자技士 직업교육훈련이 시작되었다. 機械技士와 같은 전문분야에는 毎年 24명이 교육에 참가하며 교육기간은 2년이다.
- 舊東獨人民軍이 사용하던 分類對象物資의 보관과 감시를 위해 그리고 폐기대상 군사장비의 처리와 처분을 위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총 약 10억 DM이 지출되었다. 지금까지 물자저장서비스회사(MDSG)에

의해 운용된 저장시설은 그 동안 한 個人會社에게 매각 되었다. 폐기 대상 군사장비의 처리와 처분을 위해 1995년 중 약 2억2,000만DM이 지출될 예정이다.

- 공공재난자원기구, 공공보건시설, 대학, 기타 수혜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聯邦軍은 舊東獨人民軍이 사용하던 다음과 같은 물자를 無償으로 제공하였다. 차량, 야전용 취사시설, 피복과 취사도구, 발전기, 주거용 선박1척, 위생자재, 구조자재, 공장기자재, 각종 소형기자재

## <부록 9>

### 東獨의 法院

#### 東獨의 高等法院

地區法院	郡法院 數
Rostock .....	11
Schwerin .....	11
Neubrandenburg .....	14
Potsdam .....	16
Frankfurt/Oder .....	11
Cottbus .....	15
Magdeburg .....	21
Halle .....	23
Erfurt .....	16
Gera .....	13
Suhl .....	8
Dresden .....	20
Leipzig .....	19
Karl-Marx-Stadt .....	25
Berlin .....	11
(Stadtgerichte) .....	(Stadbezirksgerichte)
총 地區法院의 數 15 Bezirksgerichte .....	총 郡法院 數 234 Kreisgerichte

의해 운용된 저장시설은 그 동안 한 個人會社에게 매각 되었다. 폐기 대상 군사장비의 처리와 처분을 위해 1995년 중 약 2억2,000만DM이 지출될 예정이다.

- 공공재난자원기구, 공공보건시설, 대학, 기타 수혜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聯邦軍은 舊東獨人民軍이 사용하던 다음과 같은 물자를 無償으로 제공하였다. 차량, 야전용 취사시설, 피복과 취사도구, 발전기, 주거용 선박1척, 위생자재, 구조자재, 공장기자재, 각종 소형기자재

## <부록 9>

### 東獨의 法院

#### 東獨의 高等法院

地區法院	郡法院 數
Rostock .....	11
Schwerin .....	11
Neubrandenburg .....	14
Potsdam .....	16
Frankfurt/Oder .....	11
Cottbus .....	15
Magdeburg .....	21
Halle .....	23
Erfurt .....	16
Gera .....	13
Suhl .....	8
Dresden .....	20
Leipzig .....	19
Karl-Marx-Stadt .....	25
Berlin .....	11
(Stadtgerichte) .....	(Stadbezirksgerichte)
총 地區法院의 數 15 Bezirksgerichte .....	총 郡法院 數 234 Kreisgerichte

<부록 10>

東獨의 法官, 檢事, 軍法務官

	Richter		Staatsanwälte
	1989 <sup>1)</sup>	1990 <sup>2)</sup>	1990 <sup>2)</sup>
Oberstes Gericht .....	43	43 (12)	
Generalstaatsanwalt/DDR .....			119
Mecklenburg-Vorpommern .....	186	188	
- Bezirksgericht .....	43 (20)	38	
- Kreisgericht .....	143 (72)	150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			159
Brandenburg .....	251	267	
- Bezirksgericht .....	56 (27)	50	
- Kreisgericht .....	195 (94)	217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			185
Sachsen-Anhalt .....	249	252	
- Bezirksgericht .....	48 (21)	40	
- Kreisgericht .....	201 (106)	212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			205
Sachsen .....	374	397	
- Bezirksgericht .....	81 (34)	73	
- Kreisgericht .....	293 (157)	324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			275
Thüringen .....	190	205	
- Bezirksgericht .....	45 (23)	42	
- Kreisgericht .....	145 (63)	163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			161
Berlin-Ost .....	162	193	
- Stadtgericht .....	28 (19)	40	
- Stadtbezirksgericht .....	134 (92)	153	
- Generalstaatsanwaltschaft/Berlin/ Stadtbezirksstaatsanwaltschaften .....			132
Militärgerichte .....	35	35	
Militärstaatsanwaltschaften .....			80
insgesamt .....	1 490	1 580	1 316
- Bezirksgericht .....	301 (144)	283	
- Kreisgericht .....	1 111 (584)	1 219	

( ) = davon Frauen

<sup>1)</sup> = Stand 31. Dezember 1989

<sup>2)</sup> = Stand 1. Juli 1990



## <부록 11>

### 東獨의 郡法院 및 地區法院 法院書記

	1	2	3
	地區法院	郡法院	1+2
東Berlin	7	119	126
Mecklenburg-Vorpommern	6	134	140
Brandenburg	7	174	181
Sachsen-Anhalt	5	194	199
Sachsen	7	278	285
Thüringen	6	136	142
합 계	38	1,035	1,073

\* 기준: 1990. 7. 1

郡法院과 地區法院 서기들은 법률과 기타 법규상으로 지정된 法院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각 郡法院과 地區法院에는 물적, 재정적, 기술적, 조직적 업무에 대해 책임지는 1명의 書記長이 있었으며 휘하의 서기들과 직원들을 지도하였다(GVG/DDR 제27조 35항).

郡法院과 地區法院 서기들의 업무분야는 부분적으로 사법보조관, 증명서 취급공무원, 집달리의 업무분야의 동일하기도 했다.

書記들의 책임분야는 다음과 같다.

- 소송의 접수,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법 관련사건의 접수 및 상소를 접수처로 전달(ZPO/DDR 제11조 1항)
- 法院의 지불명령에 관한 결정(ZPO/DDR 제15조 1항, 독촉절차와 비슷함)
- 공시최고절차와 사망선고절차의 이행(ZPO/DDR 제138조 2항, 제144조 2항)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법 관련사건의 종결업무(비용 계산, 비용 확정, 확정판결에 관한 기재, 서류철 보관)

-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형사처벌에 관한 최종통보 및 실행(StPO /DDR 제340조, 제1ff조 1항)
-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확정집행(ZPO/DDR 제88조 1항)

## <부록 12>

### 1990년도(통일시점까지) 東獨의 법규정들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und die Zulassung von Rechtsanwälten mit eigener Praxis vom 22. Februar 1990 (GBl. I Nr. 17 S. 147)

Verordnung über die Justitiar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vom 15. März 1990 (GBl. I Nr. 18 S. 171)

Anordnung über die Gebühren in Registersachen des Staatlichen Vertragsgerichts - Gebührenanordnung - vom 19. März 1990 (GBl. I Nr. 20 S. 184)

Anordnung über Büros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r Rechtsanwälte vom 17. April 1990 (GBl. I Nr. 25 S. 241)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über die Justitiar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 Zulassung von Ju-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법 관련사건의 종결업무(비용 계산, 비용 확정, 확정판결에 관한 기재, 서류철 보관)

-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형사처벌에 관한 최종통보 및 실행(StPO /DDR 제340조, 제1ff조 1항)
-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확정집행(ZPO/DDR 제88조 1항)

## <부록 12>

### 1990년도(통일시점까지) 東獨의 법규정들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und die Zulassung von Rechtsanwälten mit eigener Praxis vom 22. Februar 1990 (GBl. I Nr. 17 S. 147)

Verordnung über die Justitiar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vom 15. März 1990 (GBl. I Nr. 18 S. 171)

Anordnung über die Gebühren in Registersachen des Staatlichen Vertragsgerichts - Gebührenanordnung - vom 19. März 1990 (GBl. I Nr. 20 S. 184)

Anordnung über Büros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r Rechtsanwälte vom 17. April 1990 (GBl. I Nr. 25 S. 241)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über die Justitiar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 Zulassung von Ju-

stizieren mit eigener Praxis – vom 18. April 1990 (GBl. I Nr. 25 S. 239)

Zwei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über die Justitiar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 Justitiar-Gebührenordnung – vom 18. April 1990 (GBl. I Nr. 25 S. 240)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Verlängerung der Wahlperiode der Schöffen der Kreisgerichte und Mitglieder der Schiedskommissionen vom 26. April 1990 (GBl. I Nr. 25 S. 239)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 Bildung von Kreisgerichten in Großstädten mit Stadtbezirken – vom 6. Juni 1990 (GBl. I Nr. 32 S. 283)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 Umgestaltung des Staatlichen Vertragsgerichts – vom 6. Juni 1990 (GBl. I Nr. 32 S. 284)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 Gesamtvollstreckungsverordnung – vom 6. Juni 1990 (GBl. I Nr. 32 S. 285)

Verordnung über die Vollstreckung in Grundstücke – Grundstücksvollstreckungsverordnung – vom 6. Juni 1990 (GBl. I Nr. 32 S. 288)

Anordnung über die Tätig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r Patentanwäl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7. Juni 1990 (GBl. I Nr. 41 S. 625)

Anordnung über die Tätig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r Rechtsanwäl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7. Juni 1990 (GBl. I Nr. 42 S. 664)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Verlängerung der Wahlperiode von Richtern und Schöffen vom 8. Juni 1990 (GBl. I Nr. 32 S. 283)

Anordnung über die Änderung der Anordnung über die Gebühren für die Tätigkeit der Rechtsanwälte – Rechtsanwaltsgebührenordnung (RAGO) – vom 14. Juni 1990 (GBl. I Nr. 42 S. 666)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von Notaren in eigener Praxis vom 20. Juni 1990 (GBl. I Nr. 37 S. 475, Nr. 54 S. 1152)

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Juni 1990 (GBl. I Nr. 34 S. 357, Nr. 44 S. 713)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vom 22. März 1984 zur Bekämpfung der Ordnungswidrigkeiten – OWVO – (GBl. I Nr. 14 S. 173) i. d. F. der Verordnung vom 14. Dezember 1988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Ersten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Einführungsgesetz zum StGB – Verfolgung von Verfehlungen – und der Verordnung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VO – (Änderungsverordnung) (GBl. I Nr. 29 S. 347) vom 27. Juni 1990 (GBl. I Nr. 39 S. 542)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ordnung, des Einführungsgesetzes zum Strafgesetzbuch und zur Straf-

prozeßordnung, des Gesetzes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des Strafregistergesetzes, des Strafvollzugsgesetzes und des Paßgesetzes (6. Strafrechtsänderungsgesetz) vom 29. Juni 1990 (GBl. I Nr. 39 S. 526)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Zivilprozeßordnung vom 29. Juni 1990 (GBl. I Nr. 40 S. 547)

Gesetz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das Verfahren der Gerichte zur Nachprüfung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 GNV – vom 29. Juni 1990 (GBl. I Nr. 41 S. 595)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mit Freiheitsentzug – Strafvollzugsgesetz – vom 7. April 1977 vom 3. Juli 1990 (GBl. I Nr. 55 S. 1241)

Verfassungs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vom 5. Juli 1990 (GBl. I Nr. 42 S. 634)

Verfassungs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Gesetzes über die Staatsanwal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5. Juli 1990 (GBl. I Nr. 42 S. 635)

Richtergesetz vom 5. Juli 1990 (GBl. I Nr. 42 S. 637)

Verordnung zur Anwendung von Rechtsvorschriften vom 11. Juli 1990 (GBl. I Nr. 44 S. 713)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 Neufestlegung der Zuständigkeit für Entscheidungen in Militärstrafsachen – vom 18. Juli 1990 (GBl. I Nr. 46 S. 811)

Gesetz zur Änderung des Familiengesetzbuch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stes Familienrechtsänderungsgesetz) vom 20. Juli 1990 (GBl. I Nr. 52 S. 1038)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m Richtergesetz – Ordnung über die Bildung und Arbeitsweise der Richterwahlausschüsse – vom 22. Juli 1990 (GBl. I Nr. 49 S. 904)

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über das Zugabewesen und über Preisnachläss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2. Juli 1990 (GBl. I Nr. 51 S. 991)

Zweite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 vom 25. Juli 1990 (GBl. I Nr. 45 S. 782)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vom 31. Juli 1990 (GBl. I Nr. 54 S. 1152)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Richtergesetz – Disziplinarordnung – vom 1. August 1990 (GBl. I Nr. 52 S. 1061)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Zivilprozeßordnung vom 9. August 1990 (GBl. I Nr. 55 S. 1249)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Richtergesetz vom 14. August 1990 (GBl. I Nr. 56 S. 1267)

Anordnung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Anordnung über die Tätigkeit der Rechtsanwälte

- Rechtsanwaltsgebührenordnung (RAGO) - vom 15. August 1990 (GBl. I Nr. 56 S. 1293)

Anordnung zur Änderung der Anordnung über Büros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r Rechtsanwälte vom 15. August 1990 (GBl. I Nr. 56 S. 1295)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nach dem Rechtsberatungs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r Erlaubnisinhab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2. August 1990 (GBl. I Nr. 56 S. 1261)

Verordnung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von Notaren in eigener Praxis vom 22. August 1990 (GBl. I Nr. 57 S. 1328)

Verordnung über die Dienstordnung der Notare (DONot) vom 22. August 1990 (GBl. I Nr. 57 S. 1332)

Zwei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Richter-gesetz - Ordnung zur Wahl und Berufung ehren-amtlicher Richter - vom 1. September 1990 (GBl. I Nr. 62 S. 1553)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von Studenten, die vor dem 1. September 1990 an den juristischen Sek-tionen der Universitä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matrikuliert worden sind, vom 5. September 1990 (GBl. I Nr. 59 S. 1436)

Rehabilitierungsgesetz vom 6. September 1990 (GBl. I Nr. 60 S. 1459)

Rechtsanwalts-gesetz vom 13. September 1990 (GBl. I Nr. 61 S. 1504)

Gesetz über die Schiedsstellen in den Gemeinden vom 13. September 1990 (GBl. I Nr. 61 S. 1527)

## <부록 13>

### 新聯邦州 裁判管轄權의 構造

I. 定規法院 (地方法院支院, 地方法院,  
高等法院의 설치)

1.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OLG Rostock; LG Neubrandenburg, Rostock,  
Schwerin, Stralsund; 31 Amtsgerichte.

2. Sachsen-Anhalt seit 1. September 1992  
OLG Naumburg; LG Dessau, Halle, Magdeburg,  
Stendal; 36 Amtsgerichte.

3. Sachsen seit 1. Januar 1993  
OLG Dresden; LG Bautzen, Chemnitz, Dresden,  
Görlitz, Leipzig, Zwickau; 40 Amtsgerichte.

4. Thüringen seit 1. September 1993  
OLG Jena; LG Erfurt, Gera, Mühlhausen, Meiningen.

5. Brandenburg seit 1. Dezember 1993  
OLG Brandenburg; LG Cottbus, Frankfurt/Oder,  
Neuruppin, Potsdam; 25 Amtsgerichte.

II. 行政法院

1. Sachsen-Anhalt seit 1. Februar 1992  
OVG Magdeburg; VG Dessau, Halle, Magdeburg.

2.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OVG Greifswald; VG Greifswald, Schwerin.

3. Sachsen seit 1. Juli 1992  
OVG Bautzen; VG Chemnitz, Dresden, Leipzig.

4. Thüringen seit 12. Dezember 1992  
OVG Weimar; VG Gera, Meiningen, Weimar.

5. Brandenburg seit 1. Januar 1993  
OVG Frankfurt/Oder; VG Cottbus, Frankfurt/  
Oder, Potsdam.

III. 財政法院

1.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FG Greifswald)

2. Sachsen seit 1. Juli 1992  
(FG Leipzig)

3. Sachsen-Anhalt seit 1. September 1992  
(FG Dessau)

4. Brandenburg seit 1. Januar 1993  
(FG Cottbus)

5. Thüringen seit 26. Juni 1993  
(FG Gotha)

IV. 勞動法院

1. Brandenburg seit 1. Juli 1991  
(LAG Potsdam; 7 Arbeitsgerichte)

2. Sachsen-Anhalt seit 1. September 1991  
(LAG Halle; 6 Arbeitsgerichte)

3.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LAG Rostock; 4 Arbeitsgerichte)

4. Sachsen seit 1. Juli 1992  
(LAG Chemnitz; 5 Arbeitsgerichte)

5. Thüringen seit 9. Januar 1993  
(LAG Erfurt; 7 Arbeitsgerichte)

V. 社會法院

1. Brandenburg seit 7. März 1992  
(LSG Potsdam; 4 Sozialgerichte)

2. Sachsen-Anhalt seit 1. April 1992  
(LSG Halle; 4 Sozialgerichte)

3.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LSG Naumburg; 4 Sozialgerichte)

4. Sachsen seit 1. Juli 1992  
(LSG Chemnitz; 3 Sozialgerichte)

5. Thüringen seit 20. August 1993  
(LSG Erfurt; 4 Sozialgerichte)

- Rechtsanwaltsgebührenordnung (RAGO) - vom 15. August 1990 (GBl. I Nr. 56 S. 1293)

Anordnung zur Änderung der Anordnung über Büros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r Rechtsanwälte vom 15. August 1990 (GBl. I Nr. 56 S. 1295)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nach dem Rechtsberatungs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r Erlaubnisinhab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2. August 1990 (GBl. I Nr. 56 S. 1261)

Verordnung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von Notaren in eigener Praxis vom 22. August 1990 (GBl. I Nr. 57 S. 1328)

Verordnung über die Dienstordnung der Notare (DONot) vom 22. August 1990 (GBl. I Nr. 57 S. 1332)

Zwei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Richter-gesetz - Ordnung zur Wahl und Berufung ehren-amtlicher Richter - vom 1. September 1990 (GBl. I Nr. 62 S. 1553)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von Studenten, die vor dem 1. September 1990 an den juristischen Sek-tionen der Universitä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matrikuliert worden sind, vom 5. September 1990 (GBl. I Nr. 59 S. 1436)

Rehabilitierungsgesetz vom 6. September 1990 (GBl. I Nr. 60 S. 1459)

Rechtsanwalts-gesetz vom 13. September 1990 (GBl. I Nr. 61 S. 1504)

Gesetz über die Schiedsstellen in den Gemeinden vom 13. September 1990 (GBl. I Nr. 61 S. 1527)

## <부록 13>

### 新聯邦州 裁判管轄權의 構造

I. 定規法院 (地方法院支院, 地方法院,  
高等法院의 설치)

1.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OLG Rostock; LG Neubrandenburg, Rostock,  
Schwerin, Stralsund; 31 Amtsgerichte.

2. Sachsen-Anhalt seit 1. September 1992  
OLG Naumburg; LG Dessau, Halle, Magdeburg,  
Stendal; 36 Amtsgerichte.

3. Sachsen seit 1. Januar 1993  
OLG Dresden; LG Bautzen, Chemnitz, Dresden,  
Görlitz, Leipzig, Zwickau; 40 Amtsgerichte.

4. Thüringen seit 1. September 1993  
OLG Jena; LG Erfurt, Gera, Mühlhausen, Meiningen.

5. Brandenburg seit 1. Dezember 1993  
OLG Brandenburg; LG Cottbus, Frankfurt/Oder,  
Neuruppin, Potsdam; 25 Amtsgerichte.

II. 行政法院

1. Sachsen-Anhalt seit 1. Februar 1992  
OVG Magdeburg; VG Dessau, Halle, Magdeburg.

2.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OVG Greifswald; VG Greifswald, Schwerin.

3. Sachsen seit 1. Juli 1992  
OVG Bautzen; VG Chemnitz, Dresden, Leipzig.

4. Thüringen seit 12. Dezember 1992  
OVG Weimar; VG Gera, Meiningen, Weimar.

5. Brandenburg seit 1. Januar 1993  
OVG Frankfurt/Oder; VG Cottbus, Frankfurt/  
Oder, Potsdam.

III. 財政法院

1.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FG Greifswald)

2. Sachsen seit 1. Juli 1992  
(FG Leipzig)

3. Sachsen-Anhalt seit 1. September 1992  
(FG Dessau)

4. Brandenburg seit 1. Januar 1993  
(FG Cottbus)

5. Thüringen seit 26. Juni 1993  
(FG Gotha)

IV. 勞動法院

1. Brandenburg seit 1. Juli 1991  
(LAG Potsdam; 7 Arbeitsgerichte)

2. Sachsen-Anhalt seit 1. September 1991  
(LAG Halle; 6 Arbeitsgerichte)

3.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LAG Rostock; 4 Arbeitsgerichte)

4. Sachsen seit 1. Juli 1992  
(LAG Chemnitz; 5 Arbeitsgerichte)

5. Thüringen seit 9. Januar 1993  
(LAG Erfurt; 7 Arbeitsgerichte)

V. 社會法院

1. Brandenburg seit 7. März 1992  
(LSG Potsdam; 4 Sozialgerichte)

2. Sachsen-Anhalt seit 1. April 1992  
(LSG Halle; 4 Sozialgerichte)

3.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LSG Naumburg; 4 Sozialgerichte)

4. Sachsen seit 1. Juli 1992  
(LSG Chemnitz; 3 Sozialgerichte)

5. Thüringen seit 20. August 1993  
(LSG Erfurt; 4 Sozialgerichte)

<부록 14>

法院의 접수사건수 비교

(인구 10만명에 대한 사건수)

Gebiet und Zeitraum	Zivilsachen	Familien- sachen	Arbeits- rechts- sachen	Straf- sachen <sup>1)</sup>	Verwal- tungs- rechts- sachen	Sozial- rechts- sachen	Finanz- rechts- sachen
Bundesrepublik (1989) . . . .	2 557	584	543	1 654	192	286	87
DDR <sup>2)</sup> . . . . .	312	555	88	343	-	-	-
Neue Länder <sup>3)</sup>							
Okt.-Dez. 1990 . . . . .	206	154	1 104	89	-	-	-
Neue Länder 1991 . . . . .	525	280	1 938	384	58	31	3
Neue Länder 1992 . . . . .	1 129	397	1 179	896	181	79	4
Neue Länder 1993 . . . . .	1 858	497	1 126	1 044	314	146	14
Neue Länder 1994 . . . . .	2 210	524	1 031	1 287	307	206	23

<sup>1)</sup> Strafsachen und Bußgeldsachen

<sup>2)</sup> Durchschnittlicher Wert für die Jahre 1980 bis 1989

<sup>3)</sup> Hochgerechnet auf ein Jahresergebnis

## <부록 15>

### 新聯邦州(및 베를린 일부) 法院의 사건처리 현황

다음(제15a로부터 15i까지)에 일거된 도표는 1980년 1월1일부터 1990년 9월까지 舊東獨 郡法院과 地區法院의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법 관련사건의 사건 처리수와 그 이후 5대 新聯邦州內 정규 재판소와 特殊法院의 사건 처리수를 나타낸 것이다. 1990년 10월3일 이전에 관한 통계치는 舊東獨 法務部의 통계치이며 그 이후의 통계치는 新聯邦州에서 집계된 단순 입부 현황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통계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통계치는 郡法院과 地區法院의 第一審을 합한 것이다. 제2심에 관한 통계치는 地區法院의 통계치이며 高等法院의 통계치는 없다. 1990년 10월 3일 이전 郡法院과 地區法院의 통계치는 각각 新聯邦州의 통계치에 가산되었다.

통계수치의 분석을 통해 舊東獨의 法院組織과 訴訟法을 쉽게 일별해 볼 수 있다.

舊東獨의 法院은 郡(Kreis)法院, 地區(Bezirk)法院, 高等法院의 3단계로 구성되었었다. 郡法院은 민사사건(非訟事件 제외), 가사사건, 노동법 관련사건, 다른 法院에 관한 것이 아닌 형사사건의 법률위반, 법적쟁송, 기타 법률사안에 관하여 취급하고 결정하는 일반적 第一審 裁判機關이다. 1990년 7월1일 契約裁判所가 해체된 후 商去來 關聯事件이 취급되고 결정되었다.

따라서 民事訴訟事件의 통계치는 舊聯邦州와 비교하기 힘들다.

郡法院의 경우 민사부, 가사부, 노동부, 형사부가 있었다. 각 심판부에는 직업판사 1명과 2명의 배심판사가 있었다. 契約裁判所가 해체된 다음, 郡級 도시의 郡裁判所에 商事部가 설치되었다. 郡法院의 法院 관할지역은



各 郡境界 이내의 지역이었으며 일부 市郡(Stadtkreis)과 地方郡(Landkreis)의 경우 共同 郡法院을 두고 있을 때도 없지 않았다.

地區法院은 특정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결정하는 第一審 裁判所였다. 기타 사건의 경우 郡의 검찰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거나, 地區法院長이 郡法院을 통하기 전에 地區法院을 먼저 통할 것을 결정했으면 地區法院을 거치게 된다. 第一審 裁判所로서의 地區法院은 郡 檢察이 地區法院에 사건심리를 신청했거나 地區法院長이 사건심리를 인수했을 경우이면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제2심 裁判所로서의 地區法院은 抗訴審의 처리와 결정 및 郡法院의 판결에 不服하거나 郡法院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해 관할했다.

地區法院에는 민사부, 가사부, 노동부, 형사부가 있었다. 第一審의 경우 1명의 직업판사와 2명의 배심판사로, 제2심의 경우 3명의 직업판사, 그러나 노동관련 사건의 경우 제2심 역시 1명의 직업판사와 2명의 배심판사로 구성되었었다.

地區法院의 法院管轄地域은 各 地區境界 內의 지역이었다. 各 地區마다 地區法院 하나가 있었다.

第一審 裁判에 不服할 경우 항소가 허용되었으며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법 관련사건의 경우 抗訴提起는 사건관계자,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청소년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부모 또는 親權행사의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변호인이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의 법적 구제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檢察 역시 법적 구제수단이 무제한이라는 조건하에 第一審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단 離婚의 경우만은 예외였다.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관련 사건에 있어서의 抗訴提起에 관한 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민사소송절차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두 삭제되었다. 第一審 法院의 결정에 대한 異議提起는 법률상 불복이 분명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되었다. 異議提起는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내린 다음 1주일 이내, 기타 사건의 경우 2주일 이내에 판결을 한 法院에 제출한다는 점으로 볼 때 “즉각적인” 異議提起라 볼 수 있다. 法院은 異議提起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경우 판결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異議는 抗訴法院(地區法院)에 제기해야 했다. 異議處理에 관한 다음 도표는 郡法院이 이의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地區法院이 판결을 내린 異議處理를 나타내고 있다. 형사사건의 異議提起는 특히 구속영장, 차압 및 수색에 관한 판사의 확인, 구금명령, 형사소송법적 책임과 관련된 조치(집행유예 대상 자유형의 시행, 벌금형의 자유형으로의 변경, 집행유예로의 형집행 정지에 대한 불복)등에 불복할 경우이다.

민사사건, 가사사건, 노동관련 사건의 이의제기는 사실부근인 것으로 기각되어 소송제기 또는 소송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法院判決에 不服할 경우이다. 지불기한을 어겼을 경우 또는 사전지불의 의무에 관한 결정, 가처분 조치에 관한 명령, 비용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해 本審判決에 반대하는 항소가 아닌 한 不服할 수 있다.

判決破棄는 法院의 적법 판결에 대항하는 절차상의 특수한 법적 구제수단이었다. 이 규정은 統一條約이 체결된 다음, 일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때 허용되고 시행된다는 조건하에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 오로지 有罪判決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할 때에만 적용된다.

1. 판결이 法律을 중대하게 違反하면서 취해졌을 경우
2. 형사판결분의 결정 또는 행위의 일반적 법률효과에 관한 判決文이 전적으로 虛偽이거나 法治國家的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1992년 10월 29일자 第一次 SED 不法清算法이 발효된 다음 1992년 10월 30일 현재 계류중인 판결파기 사건은 復權訴訟節次로서 속행되었다.

軍人に 대항하는 형사사건 및 군사안보를 위반한 형사처벌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軍事法院, 軍事高等法院, 高等法院 軍事部가 관장했다. 이러한 法院들은 1990년 7월 15일 解體되었다(1990년 7월 5일자 法院組織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상기 法院의 통계치는 없다.

<부록 15a> 민사事件

第一審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6 982	10 452	23 367	33 328	40 689
Brandenburg .....	9 670	14 467	31 186	53 214	65 748
Sachsen-Anhalt .....	10 173	16 230	33 213	48 243	60 786
Sachsen .....	15 534	22 002	45 773	78 919	89 681
Thüringen .....	6 621	13 700	28 916	53 299	60 686
Gesamt .....	48 980	76 851	162 455	267 003	317 590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5 713	7 398	18 494	27 237	35 611
Brandenburg .....	8 689	10 409	22 315	41 442	54 745
Sachsen-Anhalt .....	9 162	11 168	22 149	38 331	55 503
Sachsen .....	13 535	15 684	38 608	63 076	88 610
Thüringen .....	5 497	8 879	21 296	45 104	59 164
Gesamt .....	42 596	53 538	122 862	215 190	293 633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 781	5 660	11 862	17 953	22 792
Brandenburg .....	4 446	8 541	17 401	29 966	38 863
Sachsen-Anhalt .....	3 512	8 499	17 324	27 176	32 725
Sachsen .....	5 817	12 145	19 307	35 578	37 114
Thüringen .....	3 125	8 084	15 704	24 531	26 247
Gesamt .....	19 681	42 929	81 598	135 204	157 741

第二審	抗告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378	402	1 172	1 532	1 870
Brandenburg .....	800	649	1 548	2 069	3 132
Sachsen-Anhalt .....	649	418	1 311	1 819	2 413
Sachsen .....	904	685	2 021	3 685	4 923
Thüringen .....	443	376	986	1 871	2 303
Gesamt .....	3 174	2 530	7 038	10 976	14 641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359	317	1 194	1 421	1 726
Brandenburg .....	807	445	1 411	2 111	2 636
Sachsen-Anhalt .....	662	396	1 128	1 764	2 163
Sachsen .....	856	608	1 948	3 088	4 826
Thüringen .....	445	313	853	1 671	2 086
Gesamt .....	3 129	2 079	6 534	10 055	13 437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48	133	244	350	494
Brandenburg .....	81	285	481	430	1 019
Sachsen-Anhalt .....	56	71	260	318	572
Sachsen .....	121	198	289	868	955
Thüringen .....	27	101	245	489	707
Gesamt .....	333	788	1 519	2 455	3 747

第二審	抗訴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381	416	919	1 183	1 887
Brandenburg .....	716	964	1 689	2 146	2 609
Sachsen-Anhalt .....	552	573	1 245	2 236	3 139
Sachsen .....	929	804	1 897	2 621	4 081
Thüringen .....	403	450	1 054	2 210	3 074
Gesamt .....	2 981	3 207	6 804	10 396	14 790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390	325	857	931	1 420
Brandenburg .....	682	632	1 500	2 266	2 183
Sachsen-Anhalt .....	584	466	1 325	1 747	2 640
Sachsen .....	938	759	1 618	2 080	3 380
Thüringen .....	434	390	702	1 884	2 622
Gesamt .....	3 028	2 572	6 002	8 908	12 245
	제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08	199	362	613	1 085
Brandenburg .....	200	532	695	854	1 283
Sachsen-Anhalt .....	99	196	364	856	1 348
Sachsen .....	259	304	582	1 048	1 749
Thüringen .....	153	220	561	951	1 394
Gesamt .....	819	1 451	2 564	4 322	6 859

<부록 15b> 家事事件

第一審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9 355	6 153	7 806	8 748	9 813
Brandenburg .....	11 803	8 509	11 865	15 600	15 495
Sachsen-Anhalt .....	12 510	8 887	12 479	15 095	16 062
Sachsen .....	18 273	10 648	15 168	19 657	21 009
Thüringen .....	9 299	6 786	9 797	12 312	12 894
Gesamt .....	61 240	40 983	57 115	71 412	75 273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8 323	4 778	5 802	6 120	7 292
Brandenburg .....	10 976	6 987	8 779	11 005	11 759
Sachsen-Anhalt .....	12 444	6 603	9 873	10 246	12 153
Sachsen .....	17 499	9 585	9 870	15 273	16 406
Thüringen .....	8 708	5 797	7 171	9 475	10 088
Gesamt .....	57 950	33 750	41 495	52 119	57 698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 815	3 983	5 922	8 550	11 082
Brandenburg .....	4 143	5 652	8 640	13 071	16 738
Sachsen-Anhalt .....	3 023	5 192	6 788	11 589	15 469
Sachsen .....	5 345	6 407	11 575	15 747	19 852
Thüringen .....	2 779	4 006	6 632	9 573	12 908
Gesamt .....	18 105	25 240	39 557	58 530	76 049

第二審		抗告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12	102	151	180	167	
Brandenburg .....	397	180	371	422	343	
Sachsen-Anhalt .....	309	211	315	326	268	
Sachsen .....	363	140	230	343	328	
Thüringen .....	212	125	193	289	205	
Gesamt .....	1 493	758	1 260	1 560	1 311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17	120	130	186	159	
Brandenburg .....	426	172	325	436	352	
Sachsen-Anhalt .....	351	210	295	332	271	
Sachsen .....	387	135	217	328	366	
Thüringen .....	235	107	194	233	197	
Gesamt .....	1 616	744	1 161	1 515	1 345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4	6	19	13	19	
Brandenburg .....	38	46	92	64	53	
Sachsen-Anhalt .....	19	19	39	33	30	
Sachsen .....	18	23	36	52	24	
Thüringen .....	18	34	33	61	69	
Gesamt .....	117	128	219	223	195	

第二審		抗訴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68	78	142	91	151	
Brandenburg .....	478	108	160	247	283	
Sachsen-Anhalt .....	334	119	145	205	236	
Sachsen .....	702	228	364	276	354	
Thüringen .....	298	91	146	186	208	
Gesamt .....	2 080	624	957	1 005	1 232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90	109	132	77	153	
Brandenburg .....	458	188	157	212	253	
Sachsen-Anhalt .....	327	160	156	173	204	
Sachsen .....	726	305	426	262	319	
Thüringen .....	295	121	145	163	173	
Gesamt .....	2 096	883	1 016	887	1 102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61	30	27	43	41	
Brandenburg .....	128	48	51	85	115	
Sachsen-Anhalt .....	73	34	23	55	87	
Sachsen .....	182	105	43	95	130	
Thüringen .....	85	56	57	67	102	
Gesamt .....	529	273	201	345	475	



<부록 15c> 刑事事件

第一審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3 764	7 878	18 002	20 085	23 195
Brandenburg .....	5 130	13 916	25 090	32 137	38 586
Sachsen-Anhalt .....	5 108	11 248	22 672	28 821	37 943
Sachsen .....	6 474	13 564	37 748	40 042	48 662
Thüringen .....	3 410	9 590	25 485	28 988	36 642
Gesamt .....	23 886	56 196	128 997	150 073	185 028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3 308	6 194	14 371	15 310	21 092
Brandenburg .....	4 480	10 953	17 798	26 546	34 871
Sachsen-Anhalt .....	4 688	8 275	20 297	23 316	34 737
Sachsen .....	5 618	10 724	28 852	34 111	46 140
Thüringen .....	2 989	6 948	20 497	24 108	34 848
Gesamt .....	21 083	43 094	101 815	123 391	171 688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768	2 383	6 088	10 416	12 658
Brandenburg .....	1 012	3 988	11 199	16 682	20 249
Sachsen-Anhalt .....	837	3 806	6 995	14 212	18 243
Sachsen .....	1 386	4 016	12 755	17 164	19 340
Thüringen .....	665	3 353	8 280	11 431	13 022
Gesamt .....	4 668	17 546	45 317	69 905	83 512

第二審	抗訴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48	48	176	337	557
Brandenburg .....	419	91	305	563	790
Sachsen-Anhalt .....	407	130	262	504	644
Sachsen .....	494	133	563	1 206	1 604
Thüringen .....	219	49	242	537	707
Gesamt .....	1 787	451	1 548	3 147	4 302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57	40	145	298	536
Brandenburg .....	425	84	274	486	715
Sachsen-Anhalt .....	401	153	203	402	612
Sachsen .....	556	102	447	1 012	1 442
Thüringen .....	226	48	156	466	694
Gesamt .....	1 865	427	1 225	2 664	3 999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0	18	54	93	114
Brandenburg .....	33	40	71	171	243
Sachsen-Anhalt .....	45	21	101	219	251
Sachsen .....	22	53	169	323	484
Thüringen .....	16	20	106	223	240
Gesamt .....	126	152	501	1 029	1 332

第二審		抗訴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27	219	619	898	1 180	
Brandenburg .....	359	667	838	979	1 341	
Sachsen-Anhalt .....	329	515	689	1 183	1 717	
Sachsen .....	474	632	1 214	2 355	3 117	
Thüringen .....	286	325	565	888	1 251	
Gesamt .....	1 675	2 358	3 925	6 303	8 606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22	231	585	893	1 166	
Brandenburg .....	350	614	716	995	1 285	
Sachsen-Anhalt .....	319	492	678	1 141	1 676	
Sachsen .....	465	596	1 129	2 192	3 160	
Thüringen .....	271	339	551	844	1 193	
Gesamt .....	1 627	2 272	3 659	6 065	8 480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6	4	29	39	53	
Brandenburg .....	22	75	130	114	122	
Sachsen-Anhalt .....	26	51	62	103	144	
Sachsen .....	23	59	144	251	208	
Thüringen .....	26	16	30	68	82	
Gesamt .....	113	205	395	575	609	

<부록 15d> 復權關聯事件

第一審					
	신청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sup>2)</sup>	1994
Mecklenburg-Vorpommern .....	897	6 378	2 598	2 043	1 868
Brandenburg .....	1 117	8 897	3 965	2 486	1 873
Sachsen-Anhalt .....	2 676	10 519	5 163	2 996	2 885
Sachsen .....		20 438	7 284	5 076	3 217
Thüringen .....	3 399	7 659	3 205	3 026	2 025
Berlin <sup>**</sup> ) .....	1 644	3 193	3 706	1 281	1 313
Gesamt .....	9 733	57 084	25 921	16 908	13 181
	처리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sup>2)</sup>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 710	2 788	2 779	3 450
Brandenburg .....		2 389	5 397	6 075	3 199
Sachsen-Anhalt .....		1 701	5 459	5 806	5 731
Sachsen .....		6 025	11 487	9 800	6 419
Thüringen .....	51	2 669	5 658	7 585	3 334
Berlin <sup>**</sup> ) .....	49	1 546	3 137	3 103	2 140
Gesamt .....	100	16 040	33 926	35 148	24 273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897	5 565	6 149	5 413	3 844
Brandenburg .....	1 117	7 625	6 869	3 420	2 092
Sachsen-Anhalt .....	2 676	11 494	10 492	6 819	3 820
Sachsen .....		14 413	11 540	5 532	2 330
Thüringen .....	3 348	8 338	7 159	2 689	1 377
Berlin <sup>**</sup> ) .....	1 595	3 232	3 801	1 979	1 152
Gesamt .....	9 633	50 667	46 010	25 852	14 615

\*) neue Bundesländer und Berlin  
 \*\*) Berlin 1994: vorläufige Zahlen  
 1) Oktober-Dezember 1990  
 2) aktualisierte Fassung (Dez. 1994)

<부록 15e> 判決破棄關聯事件

	신청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sup>2)</sup>
Mecklenburg-Vorpommern .....	126	1 255	674
Brandenburg .....	173	1 531	1 144
Sachsen-Anhalt .....	36	1 059	1 879
Sachsen .....	158	1 897	1 882
Thüringen .....	120	1 444	1 223
Berlin .....	162	414	167
Gesamt .....	775	7 600	6 969
	처리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sup>2)</sup>
Mecklenburg-Vorpommern .....	22	609	650
Brandenburg .....		999	904
Sachsen-Anhalt .....		688	1 170
Sachsen .....	30	796	1 723
Thüringen .....	10	533	970
Berlin .....	31	339	373
Gesamt .....	93	3 964	5 790
	계류중		
	1990	1991	1992 <sup>3)</sup>
Mecklenburg-Vorpommern .....	104	750	774
Brandenburg .....	173	705	950
Sachsen-Anhalt .....	36	407	802
Sachsen .....	128	1 229	1 330
Thüringen .....	110	1 021	1 274
Berlin .....	131	206	0
Gesamt .....	682	4 318	5 130

\*1) neue Bundesländer und Berlin

<sup>1)</sup> Oktober-Dezember 1990

<sup>2)</sup> Januar-Oktober 1992

<sup>3)</sup> Oktober 1992

<부록 15f> 勞動法關聯事件

第一審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6 789	47 719	25 100	21 186	18 900
Brandenburg .....	15 900	44 927	30 618	30 179	29 105
Sachsen-Anhalt .....	16 104	34 773	27 253	27 030	28 079
Sachsen .....	31 080	77 324	53 782	52 747	46 706
Thüringen .....	20 423	78 821	32 846	30 670	25 422
Gesamt .....	100 296	283 564	169 599	161 812	148 212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8 292	25 828	33 526	25 442	24 246
Brandenburg .....	8 887	32 408	39 135	28 595	33 332
Sachsen-Anhalt .....	10 157	17 805	34 373	32 552	30 241
Sachsen .....	17 399	58 088	65 066	51 916	51 971
Thüringen .....	11 464	57 252	44 285	33 396	28 347
Gesamt .....	56 199	191 381	216 385	171 901	168 137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8 760	30 254	22 051	15 278	10 970
Brandenburg .....	7 525	19 226	10 770	12 358	8 131
Sachsen-Anhalt .....	6 373	24 623	17 606	12 083	9 764
Sachsen .....	14 271	34 471	20 912	21 866	16 831
Thüringen .....	9 234	31 915	20 476	18 223	15 298
Gesamt .....	46 163	140 489	91 815	79 808	60 994

第二審		抗訴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19	329	641	1 846	868	
Brandenburg .....	291	223	1 065	1 032	943	
Sachsen-Anhalt .....	286	196	283	1 689	1 589	
Sachsen .....	468	336	1 424	2 554	1 591	
Thüringen .....	184	315	1 033	2 142	1 524	
Gesamt .....	1 448	1 399	4 445	8 463	6 515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97	187	282	699	1 131	
Brandenburg .....	266	210	640	923	1 163	
Sachsen-Anhalt .....	231	179	163	1 035	1 421	
Sachsen .....	440	269	872	1 798	2 079	
Thüringen .....	151	258	504	1 462	1 477	
Gesamt .....	1 285	1 103	2 466	5 917	7 271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48	190	559	906	727	
Brandenburg .....	70	86	530	639	419	
Sachsen-Anhalt .....	88	96	211	870	1 034	
Sachsen .....	98	165	735	1 490	1 003	
Thüringen .....	53	223	756	1 436	1 483	
Gesamt .....	357	760	2 791	5 341	4 666	

第二審	抗告				
	신청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60	74	66	106	84
Brandenburg .....	126	46	93	145	244
Sachsen-Anhalt .....	51	41	97	235	179
Sachsen .....	88	95	197	229	226
Thüringen .....	66	56	91	137	149
Gesamt .....	391	312	544	852	882
	처리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49	72	44	84	101
Brandenburg .....	58	83	92	151	245
Sachsen-Anhalt .....	50	37	91	222	154
Sachsen .....	79	89	184	230	199
Thüringen .....	43	66	37	102	156
Gesamt .....	279	347	448	789	855
	재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2	14	28	50	33
Brandenburg .....	72	35	31	25	24
Sachsen-Anhalt .....	5	9	12	24	49
Sachsen .....	15	21	33	32	58
Thüringen .....	24	14	64	99	92
Gesamt .....	128	93	168	230	256



<부록 15g> 行政法關聯事件

第一審					
	신청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08	1 373	3 751	6 160	6 668
Brandenburg .....	260	1 395	7 079	10 935	10 367
Sachsen-Anhalt .....	112	2 009	5 559	8 456	7 189
Sachsen .....	295	2 292	6 328	11 151	12 107
Thüringen .....	111	1 379	3 333	8 447	7 738
Gesamt .....	886	8 448	26 050	45 149	44 069
	처리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25	528	2 030	3 908	5 893
Brandenburg .....	60	444	2 993	5 985	10 639
Sachsen-Anhalt .....	23	734	2 470	7 301	7 774
Sachsen .....	64	1 175	3 949	7 071	10 143
Thüringen .....	40	497	2 027	6 178	7 488
Gesamt .....	212	3 378	13 459	30 443	41 937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83	928	2 594	4 904	5 775
Brandenburg .....	200	1 151	5 477	10 417	10 145
Sachsen-Anhalt .....	89	1 364	4 109	5 264	4 679
Sachsen .....	231	1 348	3 753	7 843	9 861
Thüringen .....	71	953	2 260	4 538	4 873
Gesamt .....	674	5 744	18 193	32 966	35 333

<sup>1)</sup> Oktober-Dezember 1990

第二審					
	신청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	39	211 (57)	359 (88)	493 (164)
Brandenburg .....	5	33	442 (216)	739 (566)	599 (132)
Sachsen-Anhalt .....	6	94	182 (28)	822 (581)	889 (683)
Sachsen .....	12	169	634 (109)	742 (253)	648 (207)
Thüringen .....	8	53	158 (14)	216 (68)	783 (545)
Gesamt .....	32	388	1 627 (424)	2 878 (1 556)	3 412 (1 731)
	처리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36	95 (16)	290 (90)	462 (91)
Brandenburg .....	4	16	303 (133)	247 (134)	1 060 (571)
Sachsen-Anhalt .....	1	68	110 (7)	635 (383)	881 (679)
Sachsen .....		117	532 (86)	470 (227)	785 (174)
Thüringen .....	4	26	136 (15)	144 (24)	386 (213)
Gesamt .....	9	263	1 176 (257)	1 786 (858)	3 574 (1 728)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	4	119 (54)	188 (52)	219 (125)
Brandenburg .....	1	18	151 (80)	623 (517)	162 (78)
Sachsen-Anhalt .....	5	31	99 (27)	286 (225)	294 (229)
Sachsen .....	12	64	166 (48)	470 (118)	309 (129)
Thüringen .....	4	31	52 (7)	132 (53)	529 (385)
Gesamt .....	23	148	587 (216)	1 699 (965)	1 513 (946)

<sup>1)</sup> Oktober-Dezember 1990

( ) darunter Berufungen

<부록 15h> 社會法關聯事件

第一審					
	신청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70	670	1 651	2 473	3 671
Brandenburg .....	79	884	2 257	4 526	6 168
Sachsen-Anhalt .....	66	718	1 790	3 993	4 870
Sachsen .....	235	1 467	3 732	6 541	9 654
Thüringen .....	94	788	1 908	3 384	5 182
Gesamt .....	544	4 527	11 338	20 917	29 545
	처리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5	230	667	1 501	2 496
Brandenburg .....	9	237	1 216	2 927	4 666
Sachsen-Anhalt .....		302	1 198	2 396	4 062
Sachsen .....	34	579	1 980	4 386	7 032
Thüringen .....	7	263	936	2 718	3 617
Gesamt .....	55	1 611	5 997	13 928	21 873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65	505	1 509	2 473	3 635
Brandenburg .....	70	717	1 737	3 349	4 852
Sachsen-Anhalt .....	66	482	1 079	2 654	3 463
Sachsen .....	201	1 089	2 840	4 979	7 696
Thüringen .....	87	612	1 584	2 580	4 145
Gesamt .....	489	3 405	8 749	16 035	23 791

<sup>1)</sup> Oktober-Dezember 1990

第二審					
	신청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5	19 (19)	92 (81)	187 (178)
Brandenburg .....	2	8	50 (38)	208 (180)	489 (445)
Sachsen-Anhalt .....		18	82 (79)	191 (177)	415 (371)
Sachsen .....	2	26	96 (89)	281 (256)	548 (489)
Thüringen .....		10	27 (21)	183 (165)	333 (320)
Gesamt .....	4	67	274 (246)	955 (859)	1 972 (1 803)
	처리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	13 (13)	44 (36)	115 (107)
Brandenburg .....	2	4	28 (15)	82 (67)	197 (164)
Sachsen-Anhalt .....		8	28 (27)	172 (157)	310 (269)
Sachsen .....		8	40 (36)	111 (84)	308 (283)
Thüringen .....		1	24 (20)	73 (54)	184 (177)
Gesamt .....	2	22	133 (111)	482 (398)	1 114 (1 000)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4	9 (9)	60 (56)	132 (131)
Brandenburg .....		4	26 (25)	137 (124)	426 (402)
Sachsen-Anhalt .....		10	67 (65)	87 (86)	192 (188)
Sachsen .....	2	20	79 (69)	249 (241)	491 (448)
Thüringen .....		9	12 (9)	122 (120)	271 (263)
Gesamt .....	2	47	193 (177)	655 (627)	1 512 (1 432)

<sup>1)</sup> Oktober-Dezember 1990  
 ( ) darunter Berufungen

<부록 15i> 財政法院關聯事件

Verfahren I. Instanz					
	신청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8	92	82	280	211
Brandenburg .....	7	98	228	703	1 327
Sachsen-Anhalt .....	6	67	85	312	503
Sachsen .....	5	86	155	450	830
Thüringen .....	4	90	83	295	443
Gesamt	30	433	633	2 040	3 314
	처리건수				
	1990 <sup>1)</sup>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1	36	52	240	164
Brandenburg .....		26	134	419	907
Sachsen-Anhalt .....		28	36	137	334
Sachsen .....		28	98	229	554
Thüringen .....		49	41	146	314
Gesamt	1	167	371	1 171	2 273
	계류중				
	1990	1991	1992	1993	1994
Mecklenburg-Vorpommern .....	7	63	84	126	163
Brandenburg .....	7	79	173	420	851
Sachsen-Anhalt .....	6	45	94	269	438
Sachsen .....	5	63	120	341	596
Thüringen .....	4	45	87	236	364
Gesamt	29	295	558	1 392	2 412

<sup>1)</sup> Oktober-Dezember 1990

<부록 16>

新聯邦州의 法曹人 現況 및 配置: 判事, 檢事, 司法  
高位職 (1995년 1월 1일 현재)

	판사	검사	사법기관 근부 기타 고위직 (계약 사부직 포함)
I. Gesamtzahl der im Landesdienst Tätigen . . . . .	3 314	1 094	181
II. Davon			
1. aus dem Dienst der DDR übernommene . . . . .	603	365	16
2. neu eingestellte			
a) Juristen mit der Befähigung zum Richteramt . . . . .	1 704	495	29
b) Diplo-Juristen . . . . .	105	16	4
c) sonstigen . . . . .	-	9	12
3. (aus den Altländern)			
a) abgeordnete/zugewiesene . . . . .	302	86	8
b) versetzte . . . . .	525	109	111
4. Senioren . . . . .	74	5	1
5. noch zu überprüfende . . . . .	1	9	-
III. Von der Gesamtzahl (I) sind tätig			
1. i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 . . . .	2 261	15	13
2. bei den Staatsanwaltschaften . . . . .	83	1 016	2
3. in den Fachgerichtsbarkeiten			
a) Verwaltungsgerichtsbarkeit . . . . .	312	1	2
b) Finanzgerichtsbarkeit . . . . .	30	-	-
c) Arbeitsgerichtsbarkeit . . . . .	263	-	1
d) Sozialgerichtsbarkeit . . . . .	151	1	1
4. in der Landesjustizverwaltung . . . . .	107	24	162
5. in den Altländern (Abordnungen) . . . . .	107	37	-
IV. Die Zahl der Planstellen beträgt . . . . .	3 417	1 162	282

<부록 17>

判事 및 檢事の 資格審査 (1995년 1월1일 현재)

	인수신청건수		인수된	
	판사	검사	판사	검사
Berlin . . . . .	276 (95)		33	10
Brandenburg .	172 (86)	129 (37)	103	105
Mecklenburg- Vorpommern .	129 (59)	109 (40)	85	38
Sachsen . . . . .	336	193		
Sachsen- Anhalt . . . . .	198 (68)	115 (43)	122	66
Thüringen . . .	144 (62)	88 (63)	101	59
insgesamt . . . .	1 889		722	

	미해결 처리건수	이의 제기중인 건수	그중 처리된 건수
Berlin <sup>5)</sup> . . . . .		54	53
Brandenburg <sup>6)</sup>	-	39	36
Mecklenburg- Vorpommern <sup>5)</sup>	3	76	36
Sachsen <sup>5)</sup> . . . . .		104	89
Sachsen- Anhalt <sup>5)</sup> . . . . .		84	84
Thüringen <sup>5)</sup> . .		22	17
insgesamt . . . .	19	379	302

- 1) 결정시점까지 棄却되지 않은 申請件數만을 고려함. 팔호안의 수치는 결정시점 이전에 최대한으로 파악된 棄却件數임.
- 2) 이 수치는 판사와 검사와 관계되는 수치임.
- 3) 행정절차상 아직 미해결 상태인 건수와 법적 소송절차가 아직 미해결 상태인 건수
- 4) 팔호안의 수치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법정판결이 내린 건수
- 5) 1995년 1월 기준
- 6) 1995년 4월 기준

<부록 18>

聯邦憲法裁判所, 聯邦最高裁判所, 聯邦大檢察廳의  
統一關聯 專門研究員 및 裁判部 增設 現況

- 연방법무부 : 예산항목 07
- 연방노동사회부 : 예산항목 11

	Haushaltsjahr		
	1990 (3. Nachtrag)	1991	1992
BGH Epl. 07	10 R 2 Hilfsstellen 7 R 1 - wissen- schaftl. Mit- arbeiter -	-	-
GBA Epl. 07	2 R 6 6 R 3 2 R 2 Hilfsstellen 5 R 1 - wissen- schaftl. Mit- arbeiter -	10 A 15 {Ar- beits- gruppe Reg. Krim.}	2 R 6 6 R 3 (Kw 31.12.96)
BVerwG Epl. 07	-	1 R 8 4 R 6 4 R 1 Hilfs- stellen - wis- sen- schaftl. Mitar- beiter -	-
BFH Epl. 07	1 R 8 5 R 6 1 R 2 Hilfsstellen 1 R 1 - wissen- schaftl. Mit- arbeiter -	-	-
BAG Epl. 11	1 R 8 2 R 6	1 R 8 2 R 6	-
BSG Epl. 11	1 R 8 2 R 6	1 R 8 2 R 6	-

통독관련 추가 자원

- 연방헌법재판소(전문연구원) : 예산항목 19

1990년 3차 추경예산을 통해 연방헌법재판소에 16명의 전문연구원을  
위한 추가재원이 마련됨(각 판사에게 1명의 연구원 배당)



## <부록 19>

### 法曹人 教育

#### 1. 大學教育

1990년 9월 1일 이전에 新聯邦州에서 法學을 전공하기 시작한 대학생들(예와: Potsdam-Eiche 법대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은 계속 적용중인 東獨法の 관계규정에 따라 계속 공부할 수 있으며 第一次 國家考試에 응시, 졸업할 수 있다.

※ 1990년 10월 3일 현재 東獨地域內 법과대학생 수

훔볼트 대학	2,320 명
라이프찌히 대학	412 명
할레 대학	390 명
예나 대학	509 명
총 계	4,193 명

#### 2. 法曹人 特殊豫備勤務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법학과정을 졸업한 대학이나 졸업예정인 대학생은 2년 6개월간의 法曹人 特殊豫備勤務를 하면서 독일판사임용법 제5조에 입각,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特殊豫備勤務는 독일판사임용법 제5b조와는 달리 법률실무 교육훈련에 병행하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및 행정기관에서 각각 의무적으로 基礎過程을 履修하도록 되어있다. 기초과정을 통해 聯邦法에 관한 교육훈련의 공백이 메꾸어지도록 한다. 特殊豫備勤務의 法律實務는 新聯邦州와 베를린주에 채용되어 수행한다. 그러나 新聯邦州가 아직 충분한 교육훈련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舊聯邦州(各 姉妹州)에서 법률실무를 引受한다. 현재 일부 新聯邦州의 경우, 자체적으로 법률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법조인 特殊豫備勤務 현황

	1990	1991	1992	1993	1994
Berlin	32	58	25	74	38
Brandenburg	25	29	약 10		
Mecklenburg-Vorpommern	24	43	43	1	
Sachsen	미 상				
Sachsen-Anhalt	51	69	46	-	176
Thüringen	40	42	24	-	30

3. 新聯邦州內 법조인 예비근부체제 구축

Brandenburg州는 1992년 9월 1일부터 법조인 特殊豫備勤務를 州內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993년 11월 1일부터 법조인 一般豫備勤務가 실현되도록 직접교육훈련용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Mecklenburg-Vorpommern州는 1992년 4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법조인 特殊豫備勤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3년 5월 3일부터 사법관시보 역시 법조인 一般豫備勤務를 통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Sachsen州는 1991년 9월 1일부터 법조인 特殊豫備勤務를 통해 법률실무훈련생을 교육하고 있다. 1994년 4월 8일부터 사법관시보 역시 법조인 一般豫備勤務를 통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Sachsen-Anhalt州는 1992년 10월 1일부터 법조인 特殊豫備勤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3년 5월 1일부터 사법관시보 역시 법조인 一般豫備勤務를 통해 교육훈련받고 있다.

Thüringen州는 1993년 11월 1일부터 법조인 豫備勤務 教育訓練을 실시

하고 있다.

#### 4. 補助官 教育訓練

舊東獨의 경우 법과대학을 졸업하면 법학사 학위를 받으며 이어서 직업별로 相異하기는 하나 통상 1년간의 實務教育訓練(보좌관 교육훈련)을 받았다. 이 補助官 教育訓練過程을 마치면 法曹人으로서 매우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 검사, 공증인,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補助官 教育訓練過程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實務教育訓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다음에야 판사, 검사, 공증인, 변호사로서 임용되었다.

統一條約(부속문서 I 제III장 A부분 제III절 Nr, 8y)에 명기된 기준에 따라 판사보좌관, 검사보좌관, 변호사보좌관, 공증인보좌관은 관계규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즉 1991년 12월 31일까지 보좌관으로서의 신분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補助官 教育訓練過程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졸업생 역시 판사, 검사, 공증인, 변호사와 같은 각각 특수 법률전문분야별 직능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1990년 10월 3일부터 補助官 教育訓練過程의 의미는 퇴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졸업생은 법조인 特殊豫備勤務過程에 들어갔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직업전망이 훨씬 개선되었다.

#### 5. 實務教育을 통한 職業判事 및 檢事로서의 資格取得

東獨이 서독으로 가입한 시점 현재 최소 3년간의 직업경력이 있는 법학사(Potsdam-Eiche법과대학 졸업생은 예외)는 한 法院에서 1년간 實務教育을 성공리에 이수했을 경우 職業判事로서의 자격을, 檢察廳에서 1년간 實務教育을 성공리에 이수했을 경우 檢事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통계치에 나타난 바와 같이 新聯邦州와 Berlin州도 이러한 가능성을 그다지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

주별	판사가 되기 위한 실무교육 참가자	판사시보임용	공무원시보임용
Berlin 주	0 명	0 명	0 명
Brandenburg 주	23 명	13 명	0 명
Meckl.-Vorp. 주	4 명	3 명	1 명
Sachsen 주	1 명	1 명	0 명
Sachsen-Anhalt 주	0 명	0 명	0 명
Thüringen 주	0 명	0 명	0 명

## <부록 20>

### 각지역별 사법보조관

각 지역별 사법보조관	1994. 1. 1 현재	1995. 1. 1 현재
Berlin 주	90 명	87 명
Brandenburg 주	315 명	390 명
Mecklenburg -Vorpommern 주	(-)	222 명
Sachsen 주	667 명	663 명
Sachsen-Anhalt 주	290 명	280 명
Thüringen 주	325 명	324 명
총 계	(1,687 명)	1,966 명

주별	판사가 되기 위한 실무교육 참가자	판사시보임용	공무원시보임용
Berlin 주	0 명	0 명	0 명
Brandenburg 주	23 명	13 명	0 명
Meckl.-Vorp. 주	4 명	3 명	1 명
Sachsen 주	1 명	1 명	0 명
Sachsen-Anhalt 주	0 명	0 명	0 명
Thüringen 주	0 명	0 명	0 명

## <부록 20>

### 각지역별 사법보조관

각 지역별 사법보조관	1994. 1. 1 현재	1995. 1. 1 현재
Berlin 주	90 명	87 명
Brandenburg 주	315 명	390 명
Mecklenburg -Vorpommern 주	(-)	222 명
Sachsen 주	667 명	663 명
Sachsen-Anhalt 주	290 명	280 명
Thüringen 주	325 명	324 명
총 계	(1,687 명)	1,966 명

## <부록 21>

### 1990년 10월 3일 이후 法院書記들의 任用

1990년 10월 3일 이후 사법기관에 잔류하며 근무하던 法院書記들 대부분은 地域司法補助官으로 투입되었다. 統一條約 (부속문서 I 제III장 A 부문 제3절 Nr. 3a)에 따라 法院書記들은 기존 東獨法으로 정해진 專門分野의 司法補助任務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각 州法에 상술되어 있는 구체적인 관계규정에 따라 일단 연수교육을 통해 다른 司法補助任務를 처리함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司法補助任務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法院書記 중 극소수는 집달리 또는 사법행정기관에서 中級職 과제를 처리하도록 투입되었다.

東베를린의 경우 1992년 10월 3일 현재 110명의 法院書記가 있었다. 그 중 34명은 地域司法補助官으로서, 5명은 집달리, 그리고 14명은 중급사무처리요원으로서 5명은 사법보조관 지원생으로서 투입되었다. 43명이 퇴임하였으며 9명은 勞動法院과 社會法院으로 전직하였다(정확한 임용분야 미상)

통일당시 Sachsen州에 있던 약 300명의 法院書記 중 25명은 집달리가 되었으며 사법기관에 계속 근무중이던 나머지 法院書記들은 地域司法補助官으로 투입되었다.

Sachsen-Anhalt州의 경우 1992년 10월 3일 현재 약 200명의 法院書記가 있었다. 그 중 139명은 地域司法補助官, 22명은 집달리, 39명은 기타업무(사무장, 사법보조관 지원생, 중급직 근무)을 처리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부록 22>

新聯邦州의 司法補助官 및 類似司法補助官  
現況 및 配置

I	각 주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총계	3,064 명
II	그 중	
	1. 구동복으로부터 인수한 사람	1,196 명
	2. 신규채용	1,464 명
	3. 구연방주로부터	
	a) 파진된 사람	112 명
	b) 전보된 사람	269 명
	4. 정년퇴직 勤務延長者	21 명
	5. 기 타	1 명
III	전체 인력 중	
	1.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2,584 명
	2.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209 명
	3. 주법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197 명
IV	(예산상) 정규직제의 수	3,520 명

\* 1995년 1월 1일 기준

<부록 23>

司法補助官의 教育志願生의 數

주별	사법보조관 지원생 수	그중 구연방주에서 교육받은 사람
Berlin 주	265 명	1 명
Brandenburg 주	미 상	
Mecklenburg-Vorpommern 주	116 명	111 명
Sachsen 주	213 명	0 명
Sachsen-Anhalt 주	179 명	0 명
Thüringen 주	124 명	124 명

\* 1995년 1월 1일 기준



## <부록 24>

### 司法職 中級公務員의 教育

#### 1. 중급공무원 지원생의 수(1995년 1월 1일 기준)

Berlin	109 명
Brandenburg	미상
Mecklenburg-Vorpommern	74 명
Sachsen	214 명
Sachsen-Anhalt	102 명
Thüringen	83 명

2. Berlin州의 경우 중급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高等法院 教育과에 의해 수행되었다. Brandenburg州 중급공무원 지원생에 대한 교육훈련은 Nordrhein-Westfalen州에서 수행되었다. Mecklenburg-Vorpommern州의 경우 지금까지 중급공무원 지원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Schleswig-Holstein州(Lübeck 地方法院지원), Nordrhein-Westfalen州(Brakel 사법연수원), Bremen州(Bremen 행정연수원)에서 각각 委託施行했다. Sachsen州는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Radebeul 사법연수원이며, Sachsen-Anhalt州는 아직까지 Niedersachsen州에 委託教育시키고 있는데 인력수요를 곧 자체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Thüringen州는 Weimar에 있는 Thüringen州 행정연수원에서 중급공무원 지원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州內 司法機關을 통해 실무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 <부록 25>

### 舊東獨 判事의 補修教育費用 分擔에 관한 行政合意 (1990년/91년)

독일연방공화국과 Baden-Württemberg州, Bayern州, Berlin州, Bremen 자유한자도시, Hamburg자유한자도시, Hessen州, Niedersachsen州, Nordrhein-Westfalen州, Rheinland-Pfalz州, Saarland州, Schleswig-Holstein州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조

경제·통화·사회동맹과 관련하여 그리고 目前에 도달한 兩獨統一에 즈음하여 東獨判事의 연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연방과 각주에 의해 공동으로 지원한다.

#### 제 2 조

支援對象은 서명한 각 주내의 판사와, 東獨이 앞으로 임용할 판사 및 이를 代行할 各州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행사이다.

#### 제 3 조

- (1) 일반교육과정과 임시교육과정이 실시된다.
- (2) 일반교육과정은 각 주간의 협의하에 지역(Bezirk)단위로 실시된다.
- (3) 임시교육과정은 Wustrau소재 平生教育研究所에서 실시된다.

임시교육과정의 과목을 실시하는 州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법 : Baden-Württemberg州, Bayern주, Hessen州,  
Nordrhein-Westfalen州
2. 재정법 : Nordrhein-Westfalen州

3. 노동법 : 모든 州

4. 사회법 : Bayern州, Berlin州, Hamburg州, Hessen州,  
Niedersachsen州, Nordrhein-Westfalen州,  
Rheinland-Pfalz州, Schleswig-Holstein州

#### 제 4 조

(1) 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州가 부담하며 경우에 따라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만큼 부담한다. 연방정부는 영수증을 통해 제시된 강사사래비의 절반, 연방여비보조금지원법의 규정에 입각한 강사의 여비, 교육자료비를 부담한다. 강사사래비는 시간당 최고 100DM이다.

(2) 다음과 같은 최고금액이 지원될 수 있다.

##### 1. 노동법과 사회법 임시교육과정

· 1990년도 : 29만DM(연방부담액 : 14만 5,000DM)

· 1991년도 : 36만DM(연방부담액 : 18만 DM)

##### 2. 기타과목 교육과정

· 1990년도 : 176만 DM(연방부담액 : 88만 DM)

· 1991년도 : 257만 7,800DM(연방부담액 : 128만 8,900DM)

(3) 1991년도 聯邦負擔額의 지불은 예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따르는 것을 전제한다.

(4) 연방정부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관련 각 주간의 기타 관계규정을 유보적으로 적용하면서 쾨닉슈타인 합의에 의한 分擔率에 따라 各 州가 비용을 分擔한다.

(5) 1991년도 교육계획의 시행은 各 州議會가 예산에 대해 승인할 것을 전제한다.

## 제 5 조

(1) 一個 州에 교부될 연방재원의 최고금액은 각주 전체가 부담해야 할 총액에 대한 一個 州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 제4조 2단 1호 및 제 4조 2단 2호에 대한 최고금액을 위한 비율은 각각 별도로 산출된다.

(2) 각 주에 대한 지원이 연방재원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교육행사와 관련된 州는 전체비용에 대한 關聯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 제 6 조

(1) 각주는 연방에게 1990년도 대해서는 1990년 10월 1일까지, 1991년도에 대해서는 1991년 2월 15일까지 예상비용에 관한 개괄을 제출한다. 연방정부는 1990년 10월 31일과 1991년 3월15일까지 이를 근거하여 예상되는 비용을 제4조 2단에 입각한 최고비용의 범위내에서 先拂金으로서 각 주에게 지불한다.

(2) 각 주는 1990년도에 사용된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1991년 2월 15일까지, 1991년도에 대해서는 1991년 9월30일까지 연방정부에 제출한다. 연방정부에 의한 최종지불은 1991년 10월 31일까지 수행된다.

## 제 7 조

이 합의사항은 1990년 9월 1일 효력을 받는다.

## 舊東獨 判事の 補修教育費用分擔에 관한 行政合議(1990년/91년) 추가사항

독일연방공화국과 Baden-Württemberg州, Bayern州, Berlin州, Bremen자유한자도시, Hamburg자유한자도시, Hessen州, Niedersachsen州, Nordrhein-Westfalen州, Rheinland-Pfalz州, Saarland州, Schleswig-Holstein州는 1990년 8월31일자 행정합의에 대한 추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조

(1) 합의체결 當事州는 이미 합의한 교육과정에 병행하여 판사와 검사들 위한 교육과정을 비롯한 Mecklenburg-Vorpommern州, Brandenburg州, Sachsen-Anhalt州, Sachsen州, Thüringen州, Berlin州 출신 向後 判事와 檢事를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2) 교육과정은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州間에 합의된 방안에 근거하여 교육행사 實施州와 수혜를 받는 州가 합의하여 실시한다.

(3) 1990년 8월 31일자 행정합의사항은 刑事法에 관한 다음의 모충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제 2 조

(1) 행정합의 제4조 2단 2호에 입각한 지원대상 최고금액은 1991년도 刑事法 教育과정을 위한 437만 7,800DM(연방부담액 : 218만 8,900DM)을 포함시켜 확정한다.

(2) 聯邦政府負擔이 128만 8,900DM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불은 의회가 예산재원으로서 승인할 것을 전제한다.

### 제 3 조

各 州는 1991년 5월 1일까지 연방정부에 刑事法 교육과정에 관한 예상 비용을 통보한다. 연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2조에 입각한 최고비용의 범위내에서 先拂金으로서 지불한다.

### 제 4 조

이 追加合意事項은 1991년 1월 1일 효력을 받는다.

<부록 26>

新聯邦州 辯護士의 數

	1994. 1. 1 현재	1995. 1. 1 현재
Brandenburg .....	703 (160)	817 (192)
Mecklenburg-Vorpommern .....	640 (163)	740 (184)
Sachsen .....	1 925 (453)	2 093 (528)
Sachsen-Anhalt .....	807 (236)	956 (292)
Thüringen .....	750	870 (219)
insgesamt .....	4 825	5 476 (1 415)

( )안의 수치는 여자변호사

<부록 27>

新聯邦州 公證人의 數

	1994. 1. 1 현재	1995. 1. 1 현재
Brandenburg .....	92 (54)	93 (55)
Mecklenburg-Vorpommern .....	67 (45)	72 (46)
Sachsen .....	180 (76)	185 (77)
Sachsen-Anhalt .....	105 (50)	102 (48)
Thüringen .....	112 (45)	111 (44)
insgesamt .....	556 (270)	563 (270)

( )안의 수치는 여자공증인

## <부록 28>

### 州法律로서 계속 유효한 舊東獨法律의 확정 및 수정시 聯邦法務部の 지원

州法律로서 계속 유효한 舊東獨法律의 확정, 수정, 문서화는 統一條約 제8조와 9조에 따라 新聯邦州가 처리해야 할 과제이다. 연방법무부는 각 州의 이 분야 업무지원조치로서 “1990년 10월 2일 현재 舊東獨 법률 색인용 목록을 時期別로, 體系別로 정리”해 발간했다. 색인용 목록에는 법률관보, 관보 특별인쇄물, 各部處 官報, 中央官報에 공표된 규정 등 1990년 10월 2일 현재 公式的으로 아직 효력을 잃지 않는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중 국제간의 합의사항과 국제간의 합의사항 발효를 위해 발령된 규정들, 기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통용되던 가격규정, 순수한 징수규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색인용 목록은 각 州가 본문을 확정하고 수정하고 문서화하는 기초가 된다. 이 작업은 法律修正法과 함께 금년중에 종결될 예정이다.

나아가 聯邦法務部는 Juris會社에 설치된 연방법 자료은행에 준하는 형식의 資料銀行이라 할 규정목록을 작성했다. 이 규정목록과 또한 이와 관련된 資料銀行에는 (東獨이 건국한) 1949년 10월 7일부터 (통일전날인) 1990년 10월 2일까지 前述한 각종 관보를 통해 공표된 東獨의 법률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資料銀行에는 16,500건 이상의 규정에 관한 書誌學的 내용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수치로 볼 때 거의 완벽한 상태이다. 또한 각 규정의 개정, 폐기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어떤 규정이 개정이나 폐기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색인용 목록에 수록된 규정들은 앞으로 資料銀行을 통해 법률수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규정의 原本은 증빙되지 않았다. 색인용 목록과 마찬가지로 국제간의 합의, 국제간 합의사항 발효를 위해 공표된 규정, 기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적용되던 가격규정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95년 1월부터 Juris 資料銀行 사용자는 모두 이 자료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 <부록 29>

### 계속 有效한 公務員法 관련 經過規定

#### A. Brandenbrug 州

- 근로시간규정
- 연방징계규정
- 요양휴가규정
- 특별휴가규정
- 연방경력규정

#### C. Mecklenburg-Vorpommern 州

- 연방징계규정
- 근속기념회사금 지급규정
- 요양휴가규정
- 특별휴가규정
- 연방경력규정(특수직종 지원자를 위한)

#### C. Sachsen 州

- 경찰경력규정
- 근속기념회사금 지급규정
- 청소년 공무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 D. Sachsen-Anhalt 州

- 산모보호규정
- 자녀육아휴가규정

#### E. Thüringen 州

- 연방징계규정
- 연방경력규정

1995년 1월부터 Juris 資料銀行 사용자는 모두 이 자료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 <부록 29>

### 계속 有效한 公務員法 관련 經過規定

#### A. Brandenbrug 州

- 근로시간규정
- 연방징계규정
- 요양휴가규정
- 특별휴가규정
- 연방경력규정

#### C. Mecklenburg-Vorpommern 州

- 연방징계규정
- 근속기념회사금 지급규정
- 요양휴가규정
- 특별휴가규정
- 연방경력규정(특수직종 지원자를 위한)

#### C. Sachsen 州

- 경찰경력규정
- 근속기념회사금 지급규정
- 청소년 공무원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 D. Sachsen-Anhalt 州

- 산모보호규정
- 자녀육아휴가규정

#### E. Thüringen 州

- 연방징계규정
- 연방경력규정

<부록 30>

新聯邦州 公務員 任用現況

	1. Januar 1992	1. Januar 1993	1. Januar 1994	1. Januar 1995
Berlin (Ostteil) .....	275	4 349	5 249	9 360
Brandenburg *) .....	2 457	7 467	7 289	10 885
Mecklenburg-Vorpommern .....	5 308	6 042	8 211	10 571
Sachsen .....	2 495	16 100	28 480	28 634
Sachsen-Anhalt *) .....	9 916	13 889	14 943	17 026
Thüringen *) .....	ca. 4 000	9 952	14 531	18 123
Zusammen .....	24 451	57 799	78 703	94 599

\*) 지방자치단체 분야의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부록 31>

### 新聯邦州 行政을 위한 人力支援에 따른 聯邦公職者 派遣

說明書(1995년 3월 6일 현재)

신연방주 행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人的 行政支援은 1994년 이후 기존 형태의 지원방식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일부분야의 경우 人的 支援은 계속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잠정적이든 장기적이든 人力支援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투입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근무관련 一般條件이 적용된다.

#### 1. 管理職 公務員

##### 1.1 파 건

新聯邦州內 한 상급관청에 임시 근무하기 위해 파견되는 경우는 오로지 既存上級官廳이 동의할 때에만 가능하다.

##### a) 봉급지불 및 기타 급부제공

- 파견 상급관청이 봉급을 계속 지불한다. (해당 주는 연방정부에 봉급전액을 지불한다. 1995 예산년도 연방행정의 예산운용 및 경제운용에 관한 연방재무부 회답 제2.2호 참조)
- 이에 추가하여 최소 3개월간에 달하는 연방행정기관으로의 파견일 경우, 또는 주행정기관으로의 파견일 경우에는 공직수행상의 개인부담에 대한 수당은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받는다.

1995년 1월 1일부터 이 수당은 봉급직급에 관계없이 450 DM이며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1994년 12

월 2일자 연방내무부 지침에 따른다.

- 年金適用對象 勤務期間에 대한 賞與金 :  
新聯邦州에서 근무한 기간이 최소 1년간에 달했으며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했을 경우이면 연금적용대상 근무기간을 2배로 가산한다.
- 人力投入 補職補助金 :  
과전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연방봉급지급법 제42조 3항 2단에 입각한 인력투입 보직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다.

#### b) 旅費, 別居手當

여비지급법 및 별거수당법에 관한 현행 연방관련규정이 적용된다.

- 거주자로 매일 출퇴근할 경우 交通費가 별거수당으로서 지불되거나 출퇴근거리 보상금 또는 동승 보상금으로서 지불될 수 있다. 주택으로부터 11시간 이상 불가피하게 別居해야 할 경우이면 추가적으로 每 勤務日에 대해 4 DM의 식사비가 지불된다.
- 기타의 경우에는 별거여행수당 또는 歸家旅費補助金을 포함한 別居 日日手當을 (1991년 4월 1일부터 199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는다. 매주마다 歸家할 경우에 대한 여비보조금 지급시 교통수단의 선택은 자유다. (별거수당규정 제5a조)

#### c) 昇進 優待

新聯邦州에서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근무할 경우, 能率本位原則이 적용되는 한 末期昇進은 정당성을 띠게 된다. 인력투입이후 나타난 실적은 적성이 비슷한 주위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점으로 평가된다. 개별사안에 대한 결정은 관할 상급기관이 취한다.

## 1.2. 轉 勤

新聯邦州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轉勤이 고려된다. 轉勤은 원대복귀가 보장되는 가운데 수행된다. 파견 상급자의 의무감에 충실한 판단에 따라 원대복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취해질 수 있다.

### a) 俸給支拂 및 其他 給付提供

- 법직 신분은 완전히 보장된다. 제2차 봉급지불 과도기 규정에 따르면 파견된 공무원은 聯邦俸給法에 따라 봉급전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승진했을 경우 控除額없이 전액을 받는다.
- 공직수행상의 개인비용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연방행정기관 내의 轉勤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나 지방자치단체로 轉勤될 경우이면 관계규정이 없으므로 공직수행상의 개인비용에 대한 보상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 연방봉급 경과규정은 轉勤의 경우에 대해서도 新聯邦州에서 계속해서 최소 1년간, 그리고 1994년 12월 31일 以前에 시작한 勤務期間을 연금적용대상 근무기간으로서 2배 가산한다.

### b) 旅費, 別居手當

이사비용의 지불이 승인된 다음 임대주택이 없거나 개인적 사정때문에 이사할 수 없을 경우이면 別居手當 支給規定에 따라 이사할 때까지 歸家旅費 補助金을 포함한 별거수당이 지불될 수 있다. 이사비용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급부는 기간에 관계없이 제공된다.

### c) 昇進 優待

제 1.1. c번의 내용이 준용된다.

#### d) 昇 進

新聯邦州은 승진에 관한 簡素化 規程을 도입하였다. (경과기간의 단축, 직능에 관한 規定을 州 人事委員會를 통하지 않고 最高位 勤務機關을 通함)

### 2. 勤 勞 者

契約事務職과 契約勞務職의 파견에 관하여서는 위에서 열거한 規定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봉급지불에 있어서의 법적견해의 보장을 비롯하여 公職수행상 발생한 個人費用에 관해 上述한 規定, 그리고 여비와 별기수당 관련 給付제공規定 등이 적용된다.

轉勤의 경우, 이와 관련된 規定들은 새로운 고용주와 처리할 사항이다.

### 3. 停年退職者

- 채용계약 및 자문계약의 일환으로서의 인력투입이 고려될 수 있다.
- 公職수행상 발생한 個人費用에 관한 規定은 聯邦政府와 체결한 자문계약의 범위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 관리직공무원연금 과도기규정에 입각한 인력투입의 범위내에서 연금 수령액과 인력투입에 의한 소득이 퇴직금으로 책정된 봉급과 비교할 때 최고상한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이면 퇴직금에 추가한 소득을 가산한다. 勤勞者로서 公職에 근무했던 기간은, 계속해서 최소 1년간 근무했을 때에는 퇴직금 수령 근무기간에 대해 최고 75%까지 가산된다. 이 規定들은 고용관계가 1994년 12월 31일 以前에 성립되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 4. 住宅購入

적절한 주거공간의 구입 및 소개시, 人力引受機關은 근부규정의 범위를 초월한 지원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5. 人力支援時 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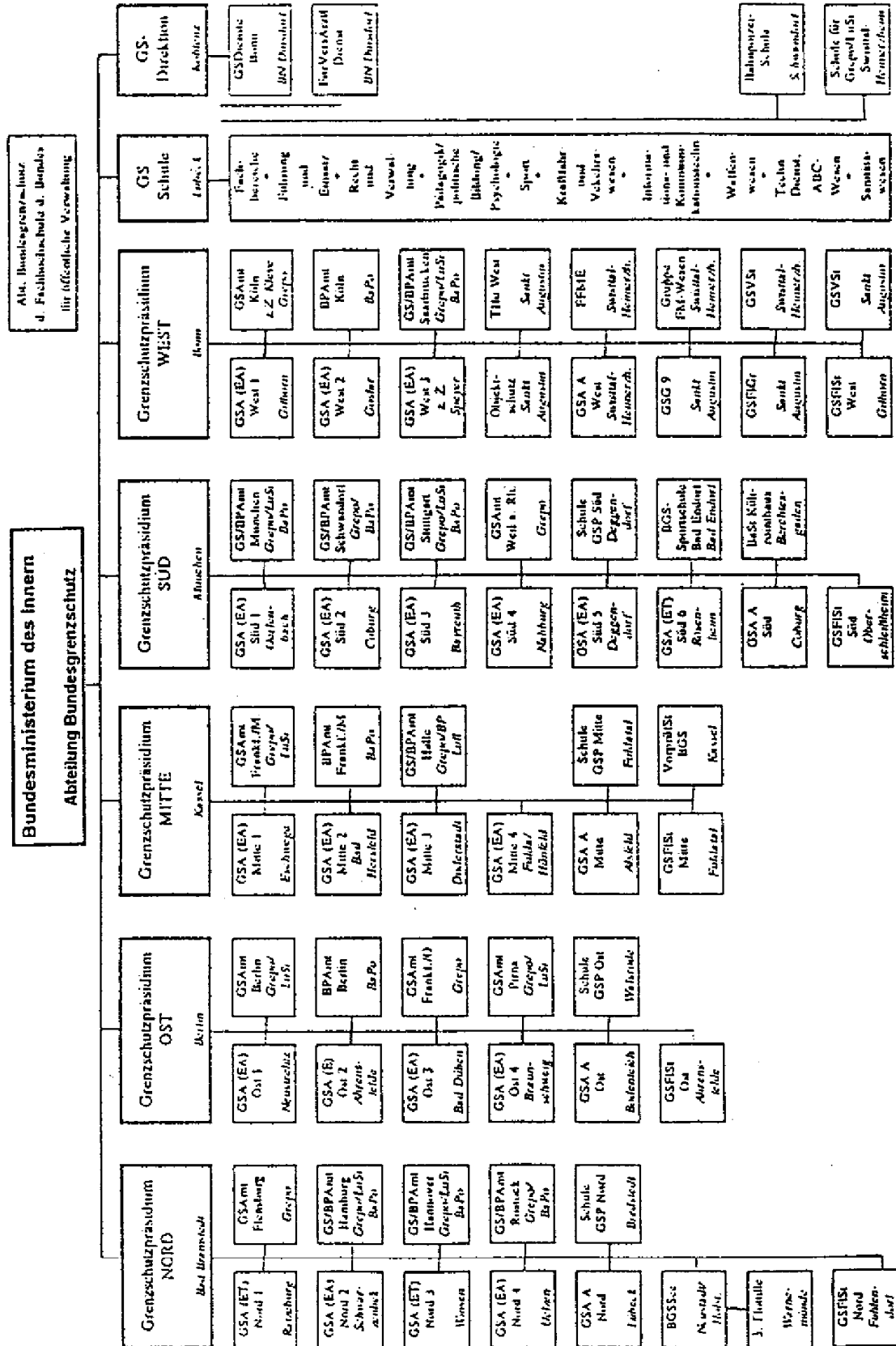
- a) 전문직능이 우수한 舊聯邦州 출신 행정인력을 東獨地域內 지방자치 행정기관 및 주행정기관으로 소개하기 위해 志願者와 求人機關을 연결하는 中央連絡所가 설치된다.

연방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표단체 연방연합회의 공동인력기관  
Bundeshaus Berlin  
Bundesallee 216-218  
10719 Berlin (Tel.: 030-2313-50)

- b) 新聯邦州內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경우에는 志願者가 관심이 있는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임이 입증되었다. 新聯邦州는 특히 既存 聯邦地域에서 직능이나 직업경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서 채용하려 하고 있다.



聯邦國境守備隊 組織



## <부록 33>

### 舊東獨에서의 死刑宣告, 執行에 관한 報告書

작성자 : 연방법무부(R B 2과)

작성일 : 1992년 2월 14일

작성지시자 : 콜수상

#### 1. 同 報告書의 作成 經緯

독일 언론은 통일 이후 舊東獨에서 있었던 處刑事件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특히 BILD紙(독일에서 450만부라는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街版川 신문)는 1990년 5월 16일자에서 舊東獨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1차 명단 (58명)을 공개했으며, 이후에도 이같은 처형 사건에 관한 보도들이 新聞紙上에 계속 등장했다. 1991년 8월 10일자에서 '발트'紙는 62구의 처형된 유골이 들어 있는 공동 墓穴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사 주간 Der Spiegel誌도 1991년 8월 26일자(第 36號)에서 舊東獨에서의 處刑이라는 주제를 크게 취급한 바 있다(동 보고서 별첨 1 참조).

동 보고서는 이같은 기사 보도들에 자극을 받아 舊東獨에서의 처형 문제를 전체적으로 調査,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 2. 同 報告書의 調査 對象

콜수상의 지시에 의거, 동 보고서는 舊東獨에서 법원의 사형 판결을 받아 이루어진 처형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발트하이머 裁判'(Waldheimer Prozesse)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24件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망 사건들은 聯邦家庭老人部가 곧 발간 예정인 보고서(동 보고서 3b 부분 참조)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 舊東獨 지역에서 소련 군사재판의 사형 판결에 의한 처형 사건들
- 在所者의 사망 사건
- 베를린 장벽 및 東西獨 國境에서의 사망 사건
- 재판 절차없이 舊東獨 공안 기관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경우

### 3. 同 報告書의 基礎

#### a) 事前 知識

舊東獨에서의 처형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예를 들어 1950. 9. 4일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델러(Dehler)와 동서독문제 장관야콥 카이저는 32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발트하이머 재판'과 관련, 1950년 11월 4일 사형 집행이 있기 전 共同宣言을 통해 공개적인 소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동 보고서 별첨 2 참조).

이후에도 舊東獨에서는 사형 선고와 집행에 관한 보고들이 있어 왔다. 1987. 12. 19일자 Süddeutsche Zeitung (뮌헨 발간, 독일 전국지중 최대 발행 부수)紙는 舊東獨에서의 사형 제도 폐지를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舊東獨은 재소자들에 대한 일반사면과 더불어 사형제도의 폐지를 선언했는데, 舊東獨에서는 이미 지난 10여년간 사형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소련점령지역인 舊東獨에서는 특히 戰後 약 220건의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 있었다. 122건은 국가사회주의(나치스) 시기의 폭력행위를 이유로 선고된 것이며, 77건은 反體制 죄목(내란, 태업, 간첩행위, 轉向거부, 테러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중에서도 약 40건은 1953년 5월에 있었던 스트라이크 및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었다. 이외에 살인혐의로 22건의 사형선고 및 집행이 있었다(同 報告書 부록 3 참조, 물론 사건별로 사형집행건수를 가산하면 221건이 됨)

#### b) 同 報告書의 基礎

聯邦家庭老人部(베를린 外廳)는 이미 1990년 5월부터 “스탈린식 폭력 체제하에서의 독일의 희생 - 死亡者들” (Deutsche Opfer der stalinistischen Gewaltherrschaft)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이 보고서는 舊東獨에서의 스탈린주의의 희생자들에 대한 墓地法 (Gräbergesetz) 적용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까지는 “산속보고서 : 舊東獨 사법부에 의한 처형”이라는 사전 평가보고서(동 보고서 부록 4 참조)와 보고서 제1부가 완성되었다. 聯邦家庭老人部는 1992년 12월 중순경 제1부의 내용을 보완, 동 보고서의 제2부를 완성할 예정이다.

法務部 작성의 동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한 聯邦家庭老人部の 보고서, 聯邦東西獨問題部署 정보(동 보고서 별첨 6-8참조), 바이에른주, 베를린,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니더작센, 작센, 작센-안할트 등 舊東獨州 주정부 법무부보고서, JURIS를 통해 기록된 법분야 출간물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원 자료들은 별첨으로 첨부된 경우에만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 c) 현재의 인식 수준

舊東獨 처형에 관한 현재의 인식수준은 복잡한 전체분제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다. 사형 판결을 받아 집행이 확실치 이루어진 개별 경우들과 기존의 통계 수치간에는 -- 특히 舊東獨 국가건설 초창기의 경우 -- 부분적으로 명백한 차이가 있다.

다음에 제시될 통계자료들은 불완전한 것이다. 일부 사형에 관한 자료들은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사민을 받아 自由刑 (Freiheitsstrafe) 으로 전환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다른 통계 자료들은 개별 경우들에만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國家社會主義(나치스)적 폭력행위로 사형판결을 받은 경우다.

다른 대략적인 수치들, 예를 들면 1981년 5월 14일 General Anzeiger紙가 보도한 바 國際赦免委員會가 제시한 수치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Sueddeutsche Zeitung紙가 보도한 것과 같은 수치는 출처가 불명확하며, 특히 최근의 처형 사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여러 자료들을 비교 조사한 결과 동 보고서에서는 157件이 사형 집행이 확실히 시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개별 경우들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료와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실제 사형집행 건수의 수는 아마도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 4. 舊東獨 死刑判決의 法的 基礎

1968년과 1987년 舊東獨에서는 사형판결과 관련 刑法 改正이 있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시기를 세 차례로 구분, 舊東獨의 사형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a) 2次 大戰以後 - 1968년 기간

舊東獨에서는 우선 1887년 5월 10일 제정된 “獨逸帝國 刑法典”(Reichsstrafgesetzbuch)이 존속했는데, 제국 형법은 몇몇 범죄구성요건의 경우 死刑을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 및 모반죄(Hoch und Landesverrat) 규정은 1946년 1월 30일자 관리위원회법(Kontrolratsgesetz)에 의해 일단 폐지되었다가, 1950년 12월 11일자 舊東獨 보완 형법에 의해 대체된다. 1950년 12월 15일자 舊東獨 “평화수호에 관한 법”(Gesetz zum Schutz des Friedens)은 몇몇 重罪의 경우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舊東獨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어도 33가지 범죄구성요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10월 7일 제정된 舊東獨헌법 6조 (2)항도 다음과 같은 중범죄들에 대해 - 1950년 10월 4일자 舊東獨 최고법원(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 重懲役刑 (Zuchthaus) 과 死刑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 조항은 많은 사형 판결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헌법 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시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2) 민주적인 기관과 조직체들에 대한 태업(怠業) 선동, 민주 정치인에 대한 살인교사행위, 신앙·인종·민족 차별주의의 선전, 군국주의의 선전, 전쟁 선동, 그리고 평등에 반대하는 모든 여타 행위들은 형법상

重罪에 해당한다. 헌법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적 권한 행사는 태업선동에 속하지 않는다.

(3) .....” (동 보고서 별첨 17 참조)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犯罪行爲가 형법 각칙에 규정된 일반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헌법 조항에 의거,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예를 들면 1952년 9월 6일 드레스덴에서 처형된 무라스(Muras)와 빌헬름(Wilhelm)은 당시 舊東獨 헌법 6조와 관리위원회법 38조에 따라 사형판결을 언도받았지만,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사회주의통일당(SED) 당간부를 구타,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다(형법 各則上의 暴行致死罪).

마지막으로 주로 國家社會主義的 범죄 (나치스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위원회법 10조와 관리위원회훈령 38조에 의거 사형 언도가 가능했다.

**b) 1968년 - 1987년 기간**

1968년 개정 舊東獨 刑法에서는 21가지 범죄에 대해 死刑判決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그에 해당되었다:

- 침략전쟁의 계획과 수행
- 특히 중대한 공격행위 실시
-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 戰犯 구성요건과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범행
- 중대한 내란, 스파이행위, 기밀누설 등의 반역행위
- 중대한 테러행위,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파괴, 특히 국민경제 및 국방력의 마비를 기도하는 반계급적 惡業 및 일반 태업행위
- 특정한 살해 행위
- 중대한 군사적 범행

청소년이나 임산부, 정신박약자의 경우에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았다(舊東獨 형법 60조 (2)항). 또한 사형은 국가위원회(Staatsrat)가 赦免 여부를 결정한 후에야 집행이 허용되었다 (舊東獨 헌법 74조 (2)항).

### c) 1987년 以後

1987년 7월 8일 舊東獨 국가위원회는 사형 제도의 폐지를 의결했고, 이는 1987년 12월 30일부터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1년 중반 이후부터 이미 사형판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5. 國際法上 死刑判決 關聯法 比較

국제적인 사형 추방은 1983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a) 1966년 12월 19일 제정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약칭 “UN 人權協約”) - 舊東獨은 1973년 비준 - 은 6조 (2)항에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死刑言渡와 집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이 인권보호 특히 生命權과 모순되지 않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989년 12월 15일자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의정서” (약칭 “第2議定書”)는 사형에 관한 법개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舊東獨은 1990년 8월 16일 이를 비준했다. 西獨에서는 비준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다. 同 議定書는 군사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同 議定書는 1991년 6월 11일 발효되었다.

b) 1983년 4월 28일자 사형폐지를 통한 인권 및 기본권보호에 관한 협약 제6의정서 (약칭 “第 6 附屬議定書”)는 1985.5.1 발효되었다. 동 부속 의정서는 西獨에서는 1989년 7월 5일 비준이 이루어졌으나, 舊東獨에서는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舊東獨은 유럽委員會 회원국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유럽인권협약 조약국에 속하지 않았다. 동 의정서는 戰爭의 경우 사형

을 허용하고 있다.

c) 서방 민주국가들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死刑制度가 폐지되었다. 西유럽의 경우에는 1977년 프랑스에서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다. 일반 범죄행위에 대한 사형은 벨기에의 경우나 그리스의 경우에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벨기에에서는 사형이 赦免을 통해 終身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스에서도 지난 1972년 이래 정기적인 사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이제 사형제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군사적인 범행, 戰犯에 대해서만 사형이 허용된다.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등이 死刑制度를 폐지했다.

한편 미국 34個州에서는 特定犯罪의 경우 사형이 여전히 안도되고 있는데, 심지어 청소년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다. 1987년 미국에서는 총 25명이 처형되었으며, 현재 약 2천명이 사형 판결을 수감중이다.

한편 강조해야 할 점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死刑制度가 전반적으로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1969년의 美洲人權協約은 사형제도와 관련, UN 인권협약 이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1990년 7월 8일자 의정서는 UN 인권협약 부속의정서 및 유럽인권협약(EMRK) 부속의정서에서와 유사한 폐지 규정을 담고 있다.

1991년 國際赦免委員會의 보고에 따르면 44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완전 폐지되었으며, 16개국에서는 一般 犯行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고 20개국에서는 사실상(지난 10년간 사형집행 全無)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6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死刑은 1949년 5월 24일 발효된 基本法 102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특히 國家社會主義(나치스) 시기의 사형 제도의 濫用이 동 제도의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형 집행 방법과 관련 舊東獨은 조약 署名國家로서 拷問이나 可憐스럽



고 非人間的이며 굴욕적인 대우 혹은 UN 人權協約 7조에 규정된 형벌 금지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舊東獨에서는 1967년까지는 로프, 斷頭臺, 1968년부터는 頸部射擊 등이 사형 집행에 사용되었는데, 이같은 방법은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 6. 舊東獨 法院에 의한 死刑 言渡

### a) 全體 死刑言渡 數

1949년부터 1987년까지 舊東獨 법원에 의한 死刑言渡 수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1987년 12월 19일자 Sueddeutsche Zeitung 紙는 舊東獨에서 총 220여건의 사형 언도가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945년-1975년 기간 중 집계된 舊東獨 내무부 통계 - 그러나 동 통계는 계산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통계로 사용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음 - 에 따르면 舊東獨에서는 총 222건의 법원에 의한 死刑言渡가 있었다. 이중 60건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42건은 赦免을 통해 自由刑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당수인 120건에 대해서는 집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수치에 1976-1981년간 확실히 알려진 4건의 死刑言渡를 가산하면 총 死刑言渡件數는 226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통계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약 10%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수치산정을 위해서는 1950년-1981년 기간중 이름이 확인된 157건의 사형집행건수 (본 보고서 3 d) 부분 참조)에 명확하게 해명된 것은 아니지만, 1945년-1949년 기간중 집행된 사형집행건수를 첨가하는 방법도 있다. 舊東獨 대검찰청에 근무한 한 인사에 따르면 1945년-1949년 기간중에는 국가사회주의 범행에 대해서만 41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수치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사형집행건이 전부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b) 犯行 分野別 死刑 判決

현재로서는 개별 사형판결 이유를 범행 분야별, 즉 1) 국가사회주의적(니치스) 범법 행위, 2) 國事犯(內亂, 사보타지, 스파이 행위, 국민경제 및 국방력의 마비를 기도하는 怠業行爲, 테러 등), 3) 일반 중범죄(특히 殺人)으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967년까지 확인된 개별 사형집행의 경우 대부분(동 보고서 별첨 드레스덴에서 처형된 사형수들에 관한 드레스덴 검찰 보고서 참조) 舊東獨憲法 6조(2)항에 따른 범행이 그 이유로 되어 있는데, 개별 사형 이유를 분야별로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렵다. 일례로 1952년 9월 6일 드레스덴에서 처형된 부라스와 빌헬름(본문 4 a 부분 참조)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개별 경우 적용된 犯罪構成要件들은 범행분야를 정확히 밝혀내는데는 별 소용이 없다. 구체적으로 범행을 적시하고 있어 어느 범행 분야에 속하는지 밝혀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1991년 발표된 통계(별첨 15 참조)에 따르면 국가사회주의 범행에 관련된 총 127건의 死刑言渡가 있었으며, 이중 대부분(49건)이 1950년에 있었고 동 범행관련 최종 死刑言渡는 1976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인용한 舊東獨 聯邦內務部(본문 6 a 부분 참조) 통계는 모든 사형판결의 절반 이상이 국가사회주의 범죄, 약 1/3정도가 國事犯 그리고 약 나머지 약 10%정도가 일반 범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수치도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확실한 수치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 c) 個別 死刑判決의 論據

사형제도 존속여부에 대한 원칙적인 숙고와는 별도로 舊東獨에서 인도된 사형판결이 法治國家的인 요건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적절한 근거를 갖춘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자료로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또한 개별 사형판결이 정치적인 영향이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판결이유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 수 있을 것이다:

聯邦法務部는 단지 4개의 형사소송 사건에 내려진 판결이유문 사본을 갖고 있다(일례로 E. 짜라드닉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라이프찌히 地方法院 및 大法院 판결과 관련 별첨 19 참조). 이중 3건은 피고의 성장 과정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으며, 사형 인도 이유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밝히고 있다. 이 사건들의 경우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관여한 판사나 검찰이 法律歪曲을 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된 실제 범행 경과에 대한 판단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작된 증거나 강요된 자백 혹은 虛偽證言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1992년 1월 21일자 Suddeutsche Zeitung(별첨 30)은 - 네번째로 제시된 판결의 경우 - 1952년 처형된 무라스와 빌헬름(본문 4 a 참조)은 증거 조작에 의해 사형판결을 받았으며, 1991년 증인의 再審問에 의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1952년의 이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법집행과 가혹한 형량에 대한 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d) 其他 : “발트하이머 재판” (Die Waldheimer Prozesse)

1950년초 소련 軍政은 바우젠(Batzzen), 부헨발트(Buchenbald), 작센하우젠(Sachsenhausen)에 소재한 마지막 수용소들을 철거했다. 수용범중 649명은 계속 소련당국의 감옥에 수감되었고, 10,538명은 석방되었으며, 10,513명은 소련 군사법정이 내린 형의 계속적인 집행을 위해 그리고 3,432명은 국가사회주의(나치스) 시기의 범행으로 인해 舊東獨 관계당국에 이관되었다.

이 3,432명은 - 조기 사망(88명), 정신이상(2명) 또는 중병으로 인해 공판이 불가능한 경우(73명)를 제외하고는 - 1950년 여름 20명의 舊東獨 特別判事들로 구성된 험니츠 지방법원 20개 형사부에 의해 주로 비공개적으로, 대체로 모든 재판절차를 무시한 약 20분정도 소요된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발트하이머 재판”). 이중 총 32명이 사형판결을 받았는데, 이중

다시 6명은 - 被告의 법적 투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赦免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함 - 終身刑으로 減刑을 받았다. 2명은 1950년 11월 4일 사형 집행이 있기 전에 사망했으며, 나머지 24명(이중 23명은 성명이 확인되었음)에 대해서는 교수형이 집행되었다(보다 상세한 기록은 별첨 20 참조).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재판에 참여한 몇몇 검찰과 판사들은 판결의 근거가 된 調書의 眞僞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西獨에서는 이 '발트하이머 재판'이 法治主義 原則에 어긋난 부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재판을 진행했던 판사중 한 사람(원76세)이 法律歪曲, 故殺 (Totschlag), 謀殺 (Mord)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10명의 생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 7. 赦免을 통한 收監刑으로의 減刑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2건의 경우에는 사형이 終身刑 내지는 有期 重懲役刑 (zeitige Zuchthausstrafe) 으로 減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6명만이 성명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감형 건수는 이보다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8. 死刑 執行

### a) 死刑執行 場所

舊東獨법원에 의해 언도된 사형 판결의 집행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앙 집행장에서 실시되었으며, 사형 집행장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1950년 3월부터(시기는 정확치 않음) 1952년 5월말 기간에는 프랑크푸르트(오네르 江邊) 교도소내에 처형장이 위치했다. 이외에도 1950.11.4에는 발트하이머에서 24건의 사형집행이 실시되었다. 토르가우(Torgau) 교도소내에 또 다른 사형집행장이 있었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

다.

- 1952년 6월에서 1960년 1월 중순 기간에는 드레스덴 교도소가 사형집행장으로 사용되었다.
- 1960년 7월부터 1987년 사형폐지시까지의 라이프찌히 교도소내 비밀장소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으며, 1981년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b) 死刑執行 方法

1950년 11월 4일 발트하임에서의 24명에 대한絞首刑을 제외하면 1967년까지 舊東獨은 사형 집행을 위해 斷頭臺 (Fallschwertmaschine)를 사용했다. 사형 집행 과정, 참관인, 기타 세부사항은 1954년 8월 28일자 동독경찰청(DVP)장 職務守則 44/45호와 1963년 10월 11일자 DVP 부청장의 指示文에 의해 확정되었다. 聯邦法務部는 同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1968년 7월 1일부터 사형 집행은 1968년 6월 내무부장관, 검찰총장, 국가보위부장의 “사형 집행에 관한 共同指針”(별첨 21)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형 집행은 頸部射殺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사형집행”에는 다음의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다:

- 대검찰청의 위임을 받은 검사
- 사형수의 사망확인을 위한 검시관
- 국가보위부가 관여한 재판인 경우 국가보위부 담당자
- 사형집행소 소장
- 집행관

#### c) 死刑執行 節次

앞에서 언급한 이른바 “사형집행에 관한 공동지침”이 마련된 이후에는

사형집행은 舊東獨 법원의 판결, 舊東獨 국가위원회에서의 사면 거부 및 사형 집행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면 “妊娠”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死刑執行은 사형판결을 내린 법원의 執行要請 (Verwirklichungsersuch)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집행 요청”에는 판결의 법적 효력이 입증되어 있다(별첨 22a). “집행 요청”이 있게 되면 사형 집행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인 대검찰청이 내무장관에 이를 위임하고 [별첨 22 b)와 27 d)], 내무장관은 라이프찌히 교도소장에게 문서로 집행을 지시한다(별첨 22c). 그러면 교도소장이 집행 명령을 전체적으로 시행한다. 死刑囚는 일반적으로 國家保衛部の 명령에 의해 집행일 이른 아침에 집행장으로 이송되고, 거기서 집행 명령에 넘겨진다. 執行命令權者는 앞에서 언급한 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사형수를 처형실로 인도해간다. 처형실에서 사형 집행인이 뒤로부터 다가가 가장 근거리에서 무성 장치를 한 P 38 권총으로 後頭部를 쏜다.

그 후에 검시관이 사형수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집행관련 서류가 작성된다(별첨 22d와 27e). 사망진단서(별첨 22e와 27a)에 사망 원인으로 “頭開骨盤 骨折” 혹은 “심장 마비”가 기재된다. 관청의 사망통지서 (별첨 22h)는 사형집행장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관청에서 발급되고, 사진은 화장터로 보내져 “解剖用 시체”로 활용된다. 재를 담은 유골함은 1961년까지는 드레스덴 공동묘지내 한 집단묘소에 안장되었다. 반면 라이프찌히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재는 안장되지 않고 共同墓地 잔디 위에 뿌려지거나 건설공사장 모래에 혼합되기도 했다.

#### d) 死刑執行 時期

현재까지 확인에 의하면 몇몇의 경우 사형 판결이 있는지 며칠내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54년 3월 3일 사형 판결을 레벤슈토크(P. Rebenstock)는 同年 3월 5일에, 1979년 12월 7일 사형 판결을 트레벨야르(G. Trebeljahr)는 同年 12월 10일에 처형되었다. 또 다른 3건의 경우에는 사형 언도 일주일내에, 다른 8건은 사형 언도 한달내에 사

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파이 행위로 사형 언도를 받은 舊東獨 마지막 사형수들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바우만(W. Baumann)은 1980년 7월 18일 死刑 言渡를 받고 9일 후, 테스케(Dr. W. Teske)는 1981년 7월 26일 死刑 言渡를 받고 15일 후 각각 처형되었다.

#### e) 處刑數 趨勢

제2차 대전 직후 몇년간은 우선 29건의 死刑執行(1950년)이 있었다. 1955년(21건) 사형 집행건수는 다시 늘어났다가 1956년에는 8건, 1957년-1959년에는 0건으로 줄어들었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는 1건 내지 6건 정도를 유지한다. 이후 1975년까지는 2명이 처형되었고, 1976년, 1979년, 1980년, 1981년에 각각 한명이 처형되었다. 1981년 이후 死刑制度가 廢止된 1987년까지는 처형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별첨 23 - 처형에 관한 통계 참조).

#### f) 處刑者의 性別, 年齡別 構造

확인된 157건의 사형집행중 女子 死刑囚는 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른(E. Dorn)이 1953월 10월 3일, 크뤼거(S. Krüger)가 남편과 더불어 1955년 9월 14일, 그리고 바르크짜티스(E.A. Barczaris)가 1955년 11월 23일 처형되었다.

157건의 사형 집행건 중 사형집행시 年齡이 확인된 경우는 119건에 이르는데, 最年少 死刑囚의 연령은 19세(힐다흐, 1971.4.15생)였고 最年長 死刑囚는 73세(포이스텔, 1973.3.18생)였다. 가장 빈번한 연령층은 25세에서 30세(24명), 30세에서 35세(19명) 그리고 35세에서 40세(19명)이었다(보다 자세한 것은 별첨 24 참조)

### 10. 刑事訴訟에 있어 政治的인 影響

舊東獨 체제 하에서 당시 사법부는 결코 독립적인 國家權力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舊東獨 사법부는 스스로를 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영도하의 있는 노동자 계급의 집행기관으로 여겼다. 따라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대표는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판사들은 자신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정당화 해야만 했다(별첨 25, 舊東獨 빈세 법무장관의 진술 참조).

따라서 특히 스파이행위와 같이 정치적인 비중이 큰 형사소송의 경우 통상 대표 검사의 고소 및 구형은 우선 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에 보고되어졌으며(별첨 27a), 중앙위의 許可를 받아야 했다. 사회주의통일당(SED)내 “國事擔當機關들”(Staatliche Organe)이 국가위원회(Staatsrat) 위원장에게 기안을 올렸으며, 國家委員會 委員長은 제안을 허가하거나 변경을 지시했다. 사형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國家委員會 委員長の 허가를 득해야 했다. 聯邦法務部에는 울브리히트 위원장이 친필로 長期 懲役刑을 사형으로 변경 지시한 내용을 담은 두가지 종류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별첨 26 참조). 이같은 刑變更으로 코겔(H. D. Kogel)과 비바흐(J. Wiebach)는 1955년 6월 21일과 1955년 9월 14일 각각 처형되었다.

## 11. 其他 特記事項

### a) 處刑事實의 非公開

1968년 6월의 “사형 집행에 관한 共同指針”(별첨 21 참조)에 따르면 사형 집행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은 엄격히 비밀준수의 의무를 졌으며, 관련 서류도 엄격히 비밀로 분류되어 보관되었다. 死亡診斷書에는 진짜 사망 원인이 언급되지 않고, “頭部骨盤 骨折”이나 “심장마비”가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었다. 사형수의 처형장 이송에 관해서도 어떤 기록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화장이나 관청 기록도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형집행은 辯護人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만 통보되었다. 유골함에 관한 내용이나 유골함의 배부에 관한 통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舊東獨 법률전문지에는 개별 사형판결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관청에 의한 사형 판결이나 집행에 관한 수치 제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사형집행의 경우 사형수(바우만) 스스로가 자기 딸에게 이를 알리지 말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 死刑判決이나 집행을 비밀시켰는가 하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死亡診斷書의 사망 원인 허위 기재나 처형장의 未公開는 사형수 가족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b) 公開裁判 原則의 操作

형사 소송시 일반인의 방청을 막기 위해 경찰요원들이 동원되어 傍聽席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들이 있다(별첨 20a, 26 참조).

### c) 赦免願 處理上의 誤謬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트레벨야르, 바우만, 테스케의 경우 赦免願이 적어도 규정된 절차대로 國家委員會 委員長에게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28). 한편 현재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國家保衛部 總責 밀케(Mielke)가 호네커 의장에게 口頭로 赦免願을 신청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별첨 10 참조).

## 12. 檢察 調査對象으로서의 處刑

베를린,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州 등 지방정부내 법무부의 보고서들을 보면 검찰 조사는 우선 알려진 사형 집행이 법적 효력이 있는 사형 판결에 근거해서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국한된다.

베를린 고등 검찰 국가범죄 조사반(별첨 10 참조)에는 트레벨야르, 바우만, 테스케件과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개별 사형판결이 舊東獨 최고법원 재판 결과와 일치하는가 여부, 最高法院에 중요한 사실자료들이 완전한 형태로 제출되었는가 여부이다. 이와 더불어 國家保衛部 總責 밀케가 사면 절차에 개입했는가 여부도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풀다(Fulda)와 드레스덴 검찰청에서도 몇몇 조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별첨 12, 13 참조). 또한 '발트하이머 裁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어, 최근 전직 판사 한명이 이와 관련해 체포되기도 했다(별첨 20f 참조).

<별첨 >

\* 하가 별첨물은 별도로 인쇄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제1권 :

1. 1991.8.26자 <슈피겔>誌 보도
2. 발트하임 재판 관련 델러 법무장관 및 카이저 內獨關係部 長官 共同  
    宣言
3. 1987.12.19자 Sueddeutsche Zeitung 紙 보도
4. 연방가정노인부 “신속보고서”
5. 연방가정노인부 보고서 제1권
6. 1991.8.22자 연방 동서독분제 담당기관 서한
7. 1991.8.27자 연방 동서독분제 담당기관 서한
8. 1991.9.9자 연방 동서독분제 담당기관 서한
9. 1991.9.6자 바이에른주 법무장관 서한
10. 1991.9.13자 베를린 시 법무장관 서한
11. 1991.11.27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연방 및 유럽문제담당 장관  
    서한
12. 1991.12.6 및 12자 니더작센주 법무장관 서한
13. 1991.8.22자 및 1991.11.1자 작센주 법무장관 서한
14. 1991.10.9자 작센-안할트주 법무장관 서한
15. 1991년 NJ에 기고된 비이란트(Wieland) 박사 논문, 49면 이하
16. 1981.5.14자 General Anzeiger 紙 보도
17. 1949.10.7자 舊東獨 헌법 6조
18. 관리위원회법 10호, 관리위원회 훈령 38호

제2권 :

19. 짜라드닉(E. Zahradnik) 형사사건 관련 1971.9.16자 및 1971.10.20자 사형판결문
20. '발트하이머 재판' 관련 출판물:
  - Fricke, Deutschland-Archiv 1980년, 1172면 이하
  - Fricke, NJ 1991년, 209면 이하
  - Beckert, NJ 1991년, 301면 이하
  - Otto, NJ 1991년, 355면 이하
  - Archivmaterial in NJ 1991년, 392면 이하
  - 1992.1.16,17,21자 Sueddeutsche Zeitung 紙 보도
21. 1968년 6월의 사형집행에 관한 공동지침
22. 사형집행문서 실례
23. 확인된 처형
24. 사형수의 연령 구조
25. NJ 1970년판 빈세박사 기고문, 33면
26. 1955.6.13 및 6.14자 사회주의통일당(SED) 울브리히트 당수에게 보낸 刑申請 許可書
27. 개별 경우에 대한 문서자료(폐어만)
  - a) 1961.9.7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중앙위에 제출한 舊東獨 대검찰청 보고서
  - b) 사형판결(1면)
  - c) 집행명령서
  - d) 사면청원 거부
  - e) 집행기록문
  - f) 사망진단서
28. 1990.5.28자 동독군최고검사의 조서

29. 1990년 MDR(30면)에 게재된 비이크(Wieck)의 논문

30. 1992.1.21자 Sueddeutsche Zeitung 紙 보도

## <부록 35>

### 베를린障壁에서의 舊東獨 國境守備隊에 의한 故意的 殺人行爲에 대한 判決과 관련

刑法 2조, 7조

基本法 103조 (2)항

1966년 12월 19일자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독일 軍刑法 5조 (WStG §5)

舊東獨 國境法 (Grenzgesetz-DDR)

베를린장벽에서의 舊東獨 國境守備隊에 의한 고의적 살인 행위에 대한  
판결과 관련한 연방대법원(BGH), 1992년 11월 3일자 항소심 판결

- 제5형사부 370/92 -

베를린 주법원(LG Berlin)

연방대법원(BGH)

국민의 이름으로(Im Namen des Volkes)

제5형사부 370/92

1. W

2. H의

고의적 살인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1992년 11월 3일자

판결

연방대법원(BGH) 제5형사부는 1992.10.23 공판에 근거, 1992.11.3

연방대법원 대표 판사

배석판사 자격으로서 연방대법원 판사들

연방검찰청 대표로서 연방검사

피고인 W의 변호인

피고인 H의 변호인

재판 기록안으로서의 법무부 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다음을 適法한 것으로 인정했다:

1992년 2월 5일자 베를린 州法院 판결에 대한 피고인 W와 H의 상고는 기각하는 바이다. 피고인 각자는 각자의 上告費用을 부담해야 한다.

## 論 據

### A.

少年裁判所(Jugendkammer)는 피고 W (1964.4.11일생)와 H (1961.7.16일생)에 殺人罪 (Totschlag, 故殺)를 적용, W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少年刑 (Jugendstrafe)을, H에 대해서는 1년 9개월의 自由刑 (Freiheitsstrafe)을 선고했다. 少年裁判所는 동 형벌의 집행은 유예시켰다.

피고들은 舊東獨 國境守備隊의 일원으로 - W는 하사관, H는 2인 초소의 초소장 - 베를린 장벽에서 근무했다. 그곳에서 두 피고는 1984.12.1 3시 15분 판코프(Pankow) 구역에서 베딩(Wedding) 구역 방향으로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고자 시도한 舊東獨출신 20세 S에게 총격을 가했다. S는 담장 벽에 사다리를 걸치고 오르던 중 피고인들이 발사한 자동화기에 被擊을 당했다. 피고인 W가 쏜 총탄 한방이 S가 왼손을 장벽 꼭대기 부분에 대는 순간 등부분을 관통했는데, 이 총격상은 S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 H가 쏜 총탄 하나는 S의 부릎을 명중시켰다. 그러나 이 총탄은 S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어느 총상이 먼저 발생했는지 시간적인 順序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S는 5시 30분 직전 경찰병원으로 이송되었

고, 6시 20분경 사망했다. 의사의 治療行爲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S는 생명을 건졌을 것이다. 비밀 준수 수칙과 관할권 수칙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지체되었는데, 被告들은 同 守則들을 숙지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들은 희생자의 구조나 수송에 투입되지 않았다.

S에게 총격시 두 피고의 소총은 “自動連續發射” 상태에 있었다. 피고 H는 S가 사다리를 오르는 중 5초 내에 25발을 발사했고, 피고 W의 화기에서는 27발이 발사되었다. 피고 W는 發射前에 停止를 명령했고, 경고 사격을 가했는데, S에 대한 직접 사격은 150 미터 거리에 위치한 초소탑으로부터 가해졌다. 도망자가 출현했을 때 피고 W의 지시에 의해 초소를 떠났던 H는 장벽에 기댄채 약 110미터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다. 두 피고인들은 S를 스파이나 怠業家 또는 특별한 犯罪者로 여기지는 않았으며,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총탄이 명중시 致命傷을 입힐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같은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절대적 命令에 따라 越境을 저지하기를 원했다. 逃走 저지를 위해 逃走者에 대한 故意的인 射殺도 포함한 명령의 실행을 위해 두 피고인은 - 前段階로 규정된 수동 조준 사격을 생략한 채 - 단시간 집중 사격의 형태인 자동 연속 사격을 실시했다. 두 피고인은 자동사격이 명중율은 높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총격이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국경근무에 임하기 전에 “무단 越境者들”에 대해 무기를 사용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으며, 동 질문에 아무런 내적 유보없이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피고인들은 교육시 1982년 3월 25일자 舊東獨 國境法 26조, 27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동법 27조 (2)항1는 “정황상 범죄로 여겨지는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이나 續行을 저지하기 위한 총기사용은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少年裁判所는 베를린 장벽과 직접 접촉을 갖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舊東獨 형법 213조 (3)항 (“무단 불법 越境行爲”)에 따라 重犯罪 行爲 (Verbrechen)로 간주되며, 2년 이상의 自由刑 (Freiheitsstrafe) 에 처해진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담당 판사는 舊東獨

형법 213조가 기본 구성 요건에서는 重犯罪를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舊東獨 형법 213조 규정이 죄의 輕重과는 무관하게 설명되었을 가능성, 즉 장벽에서의 도주는 일반적으로 重犯罪 行爲에 해당된다고 설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命令狀況 (Befehlslage) 과 관련해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에게도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命令은 어떤 경우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 도망자가 “敵國 領土”(여기서는 西베를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저지케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軍部 集합시 피고인들에게 하달된 명령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무단 越境은...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무단 越境者는 停止시키거나 消滅시켜야 한다...’ 국경군부에 출동하기 전에는 항상 軍部 集합이 있었는데, 이 軍部 集합을 통해 국경 초소에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배치 문제, 일반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임부가 주지된다. 교육시 취급된 命令은 다음과 같은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先行措置가 성공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전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 ① 도주자의 呼出 ② 도주자를 따라 잡기 위한 초소의 시도 ③ 경고 사격 ④ 하체부분 조준 단발 사격, 필요시 수차 사격 ⑤ “方法 不問 도주를 저지하기까지 계속 사격”. 일반적으로 “도주를 성공케하는 것보다는 도망자를 사살하는 것이 낫다”는 철칙이 통용되었다.

少年裁判所는 피고인들이 未畢的 故意에 의한 共同殺人 (gemeinschaftlicher Totschlag mit bedingtem Vorsatz) 을 저질렀다고 보았다. 少年裁判所는 독일연방공화국 형법 212조, 213조를 舊東獨 형법에 비해 형량이 낮은 법으로서 적용했다(刑法典 導入法, 315조(1)항 및 형법 2조(3)항). 少年裁判所는 舊東獨 國境法 (Grenzgesetz) 27조 및 舊東獨 刑法 213조 (3)항에서 규정된 국경 수비대의 행동 양식이 舊東獨이 지고 있던 국제법상의 의무와 독일연방공화국의 공익 질서 원칙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동 재판소는 그렇다고(舊東獨法이 국제법상 의무와 공익 질서 원칙에 어긋나는 부효인 규정이라 할찌라도) 被告에게 불리하도



록 舊東獨法에 규정된 正當化 事由 (Rechtfertigungsgrund)가 참작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少年裁判所는 이와 관련해서 基本法 103조(2)항과 法的 安定性 (Rechtssicherheit) 이라는 관점을 論據로 삼았다. 즉 여기서는 연방대법원 형사심 판결 2권 234면에서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法的 安定性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正當化 事由와 관련 少年裁判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즉 舊東獨法에 따른 正當化 事由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총격 행위는 행위의 특수 정황상 그같은 正當化 事由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舊東獨 國境法 26조, 27조 규정은 총기사용에 관한 직무규정(UZwG)과 마찬가지로 比例性의 原則 (Prinzip der Verhältnismäßigkeit)의 지배를 받는다. 國境法 27조(1)항1은 총기 사용을 “폭력 사용의 극단적인 조치” (die äußerste Maßnahme der Gewaltanwendung) 로 규정하고 있다. 比例性이라는 관점에 유의하면서 정당화 사유를 검토해 보면 同 사건의 경우 피고에 의해 행해진 자동 연속 사격은 國境法 27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단발 사격만이 허용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가능한 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國境法 27조(5)항 규정도 동일한 견해를 담고 있다. 피고인들은 다리 부분을 조준 사격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시간 집중 사격 형태의 자동 연속 발사인 경우 총기는 첫발 발사후 “彈道를 벗어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州法院의 견해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勤務命令 (dienstlicher Befehl)으로 인해 면책받을 수 없다(軍刑法 5조, 舊東獨 형법전 258조).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勤務 命令은 다리 부분에 단발 조준사격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동 연속 사격을 통해 도주자를 명중시키고 이로써 越境을 저지할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급히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명령을 넘어서는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越境者를 여하한 경우에라도 저지해야 하며 마지막 수단으로는 消滅시키키까지 해야 한다는 명령에 의해 정당성을 갖는다고 여겼다 해도 이로 인해 피고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 緊急의 경우 도망자를 사살하라

는 명령의 수행은 명백히 형법, 즉 舊東獨 刑法 112조, 113조의 殺人禁止 (Tötungsverbot)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自國民의 무단 탈출을 저지하는데 갖고 있는 舊東獨의 경제적, 政治的 利害關係와 生命이라는 法益 (Rechtgut)간에는 명백히 不均衡이 존재했다. 법에 대한 無知 (Rechtsblindheit)는 舊東獨 刑法 258조에 의해서도 免責 事由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경우 禁止錯誤 (Verbotsirrtum)는 명백히 회피 가능한 것이었다.

少年裁判所는 刑量 賦課時 피고인 W와 관련 형법전 213조의 전제 조건 (故殺의 약간 중한 경우)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했다.

## B.

피고 W는 上告 理由에서 州法院이 國家 行爲 (act of state doctrine)에 대해 적용되는 處罰 禁止 原則 (Bestrafungsverbot) 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피고는 技能人으로서 다른 국가, 즉 舊東獨이라는 主權國家의 임무 부여와 이해 관계에 따라 행동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I.

海洋法이 지배하는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이른바 國家 行爲 (act of state doctrine)는 基本法 25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국제법의 일반 조항으로 간주될 수 없다. 國家 行爲는 오히려 다른 국가의 행위의 효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할 것인가 하는 국내법적인 해석의 문제이다 (Ipsen, Völkerrecht, 제3판, 1990, 335면, 619면; Verdross/Simma, Universelles Völkerrecht, 제4판, 1990, 775면; Dahm/Delbrück/Wolfrum, Völkerrecht, 제2판, 1989, 487면; Kimminichi, Völkerrecht, 제4판 1990, 316면). 독일법을 포함한 大陸法은 이같은 國家 行爲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Dahm/ Delbrück/Wolfrum, 같은책, 490면 이하). 즉 독일법에는 외국 국가 행위의 효력이 국내법 적용시 사법적 판단에서 벗어난다는 구속적인 규정이 없다 (형법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M. Herdegen,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47, 1987, 221면 이하 참조). 統一條約 (Einigungsvertrag) 에서는 舊東獨의 國家活動에 귀속될 수 있는 행위가 독일연방공화국 법원에 의한 사법적 검토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합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統一條約은 舊東獨 법원과 행정관청에 의한 판결들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을 가지나, 法治國家의 基本原則에 위배될 경우에는 폐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II.

피고인들은 上告 理由에서 독일연방공화국(西獨) 법원은 다른 국가 및 그 대표자들의 免責特權(Immunität) 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 심사 행위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의 上告는 免責特權에 관한 연방대법원 제 4 민사부 판결과 1984년 舊東獨 國家委員會委員長에게 國家 首班으로서의 免責特權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형사심 판결(33권 97면)을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독일인민공화국(舊東獨)이라는 국가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미 다른 국가의 대표자들로 볼 수 없다.

## C.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검토 결과 피고인들의 上告는 理由가 없다.

## I.

피고인들과 희생자는 행위시 舊東獨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었다. 희생자는 舊東獨에서 피고인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州法院은 刑法典 導入法 (Einführungsgesetz des Strafgesetzes) 315조(1)항을 적용했으며, 형법 2조(3)항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법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법 중 어느 것이 형종, 형량이 가벼운 것인가를 검토했다. 이같은 심사행위는 聯邦大法院의 일반 판례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동 행위가 1990년 10월 3일 이전 독일연방공화국 법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더라면 상황이 다소 달랐을 것이다(刑法典 導入法 315조(4)항 참조).

1. 재판부는 1984년 연방대법원 형사심(32권, 293)에서 발전시킨 원칙들을 적용, 독일통일 이전에 同 事件과 같은 행위가 독일연방공화국 형법에 의해 판결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는 바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연방대법원 제3형사부는 연방대법원 형사심 판결 30권 1면과 32권 293면에서 당시 舊東獨에서 주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 처리를 당해 自由剝奪 (Freiheitsberaubung)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독일연방공화국(西獨) 형법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1972년 基本條約 (Grundlagenvertrag) 체결 이후에는 舊東獨地域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犯法行爲에 대해서는 직접 西獨 형법 7조(1)항에 따른 심판이 가능하지 않으나, 정치적 無告 (Verdächtigung) 나 拉致 (Verschleppung)와 연관된 法治國家에 反하는 自由剝奪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독일연방공화국(西獨) 형법 5조(6)항에 보장된 포괄적 보호(연방대법원 형사심판결 30권,1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西獨) 형법 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연방대법원 형사심판결 30권 1면 및 32권 293면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同 事件은 형법 5조 6번째 문장과 연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벽에서의 사격이 있기 전 어떤 危害行爲 (Gefährungsdelikt)도 발생하지 않았다. 희생된 S는 물론 형법 234a조, 241a조에 규정된 범행의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自由權을 경시하는 정치체제의 희생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S에게 가해진 행위를 刑法의 場所的·人的·

空間的 적용에 관한 조항 (Rechtsanwendungsrecht : 형법전 3조-7조)과 관련시키고 나아가 舊東獨에서 행해진 다른 행위(형법전 7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와 구분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즉 입법자가 統一條約을 통해 刑法典 導入法(EGStG) 315조를 개정함으로써 형법의 場所的·人的·空間的 적용에 관한 조항에 간섭을 가했다는 것은 입법자가 분명 舊東獨 사건과 관련 형법전 3조-7조의 적용과 관련한 판례, 특히 聯邦憲法裁判所 형사심 판결(30권 1면, 32권 293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통일조약 발효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만 적용된 동 판결이 현시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면, 刑法典 導入法 315조 개정은 입법자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刑法典 導入法 315조(4)항의 적용범위는 기존의 판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동일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舊東獨에 삶의 기반을 갖고 있었던 독일인들은 예외없이 형법전 7조(1)항에 따른 독일인(西獨人)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최근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다. 야같은 해석이 統一條約의 근거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은, 舊東獨住民들에게 가해졌던 모든 행위가 刑法典 導入法 315조(4)항에 해당된다고 여길 경우 刑法典 導入法 315조 (1)항 규정은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개인적인 희생이 발생시키지 않은 행위나 외국인에 가해진 행위)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조약, 刑法典 導入法 315조-315조c 규정 전체를 보면 입법자는 분명 - 물론 형법 2조(3)항에 의하면 - 舊東獨法의 적용범위가 포괄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 II.

致命的인 銃器 使用 (tödliche Schußwaffengebrauch) 이 舊東獨法(國境法 27조(2)항 및 舊東獨 형법 213조(3)항)에 의해 정당화되고 이 正當化 事由 (Rechtfertigungsgrund)가 오늘날에도 피고에 유리하게 참작된다면, 형법 2조(3)항 (또한 통일조약의 刑法典 導入法 315조(1)항)에 따라 舊東獨法

은 독일연방공화국법에 비해 형량이 낮다. 그러나 법적 검토 결과 두 피고인은 - 행위시 舊東獨 법해석 실무 관행에 따르면 - 國境法 27조(2)항에 규정된 요건은 충족시키고 있으나 이로 인해 어떤 유효한 正當化 事由가 발생할 것은 아니다.

1. 舊東獨 國境守備隊는 1982년 3월 25일자 國境法 18조(2)항에 따라 國境의 不可侵性を 保障해야 했다. 특히 불법적인 무단 월경은 侵害(Verletzung)로 간주되었다(國境法 17조(2)항).

國境法 27조(2)항1에 따르면 총기의 사용은 “정황상 범죄로 간주되는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이나 續行을 저지하기 위한 경우 정당화된다”. 동법 27조(5)항1은 총기 사용시 인방은 “가능한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東獨 형법 1조(3)항2에 따르면 특히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사회위험적” 범행, “사회주의적 法治秩序에 대한 중대한 정시 행위”가 중범죄로 여겨졌으며, 2년 이상의 實刑이 주어졌다. 무단 越境도 심한 경우 1년 내지 8년의 自由刑에 처해졌다 (1979년 6월 28일자 제3차 刑法改正法에 따른 舊東獨 형법전 213조(3)항). 舊東獨 형법 213조(3)항2에 따르면 이같은 범행이 특히 “위험스러운 수단이나 방법으로” 실행에 옮겨진 경우에는 重犯罪에 해당했다. 실제로 舊東獨은 범행시 직접적인 국경접촉을 통해 “공화국탈출”(Republikflucht)을 시도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重犯罪로 간주, 2년 이상의 自由刑에 처했다는 점을 담당판사는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형벌은 舊東獨 최고법원(大法院)과 舊東獨 대검찰청이 1988년 1월 15일 “형법전 213조 적용을 위한 共同立場”에서 舊東獨 형법 213조(2)항2에서 의미하는 위험한 방법이란 특히 “국경시설을 통과하기 위해 사다리나와 같은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한데서도 나타난다. 1980년 10월 17일자 舊東獨 최고법원 및 대검찰청 共同 立場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舊東獨 법무부와 ‘정치학 및 법학 학술원’이 출간한 형법전 註釋 (독일민주공화국형법, 제5판 1987년, 이하 “舊東獨 刑法註釋”이라 칭함)에 따르면 범행 희생자의 행위는 또한 舊東獨 형법 213조(3)항2에도 해당한다. S

는 障壁을 넘기까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행동했으며, 협조자가 무단 월경 시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S가 舊東獨 형법 213조(3)항2 다섯번째 문장(“다른 사람과의 공동 행위”)의 전제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 少年裁判所의 견해와는 달리 본 재판부는 同 규정들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피고들의 행동이 동 규정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國境法 27조 法條文은 그같은 해석을 가능케한다. 즉 舊東獨 형법 23조(3)에 따라 重犯罪로 간주되는 越境 行爲는 행위의 직접적인 실행이 발생한 경우 총기를 사용, “저지해야 한다”(國境法 27조(2)항2). 동 법조항은 총기사용을 “극단적인 조치”(國境法 27조(1)항1)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越境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國境法 27조(5)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능한 한” - 즉 “어떤 경우에서도”가 아니라 -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法條文에 따르면 越境 이라는 목적을 다른 수단을 갖고 저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未畢的) 殺人 企圖 (Tötungsvorsatz)를 지닌 총격이 허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國境法 27조를 이같이 해석하는 것은 越境 沮止라는 목적이 인간 생명의 보호와 갈등 관계에 처할 경우 越境 沮止 목적이 우선권이 있다는 前提에서만 가능하다. 逃走者의 生命과 國境의 不可侵性 중 어디에 더 비중이 주어지는가는 條文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舊東獨 법원의 판결은 공표되지 않았다. 국경에서의 총기사용에 관한 舊東獨 문헌에는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은 西獨의 규정과 동일하며, 국제법에 위배됨이 없이 국가 안전과 공공 질서에 기여한다”는 견해만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같은 견해들은 舊東獨에서 國境法이 발효되기 전에 나온 것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國境法 27조가 행위시 國境法 해석과 적용에 책임있는 인사들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어 졌는지를 알려면 담당 판사가 확인한 命命 狀況과 - 주어진 명령에 기초한 - 實際事件의 情況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aa) 命命에는 보다 유화적인 수단이 逃走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逃走를 無力化하기 위한 逃走者에 대한 意識的 殺人 (die bewußte Tötung)”도 포함되어 있다. 즉 도주자가 西베를린에 도달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그리고 결국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기적인 근무집합시 하달된 핵심 내용은 “越境은 어떤 경우든 허용해서는 안된다. 무단 월경자는 停止되거나 消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國境守備隊 교육시에는 “逃走가 성공하는 것보다는 도주자가 죽는 것이 낫다”는 철칙이 통용되었다. 逃走 沮止라는 이해 관계가 도주자의 生命權보다 우선시되었다. 도주 성공은 “한 중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중대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장벽을 넘고자 하는 도주자를 사살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수반하지 않았다”. 즉 도주자를 사살했다고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주를 저지한 초소는 표창과 보상을 받았다. 담당판사는 舊東獨 법원이나 검찰 혹은 다른 어떤 심급기관이 國境守備隊 병사들에게 命命으로 하달된 총기 사용 수칙이 國境法 27조의 한계를 이탈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bb) 무단 월경자의 생명 보호가 중상자에 대한 비밀준수를 포함한 다른 목적들의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은 담당 판사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國境法 27조(5)항은 가능한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것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면서 응급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총격후 나타난 國境守備隊원들이나 다른 부대 부대원들중 그 누구도 도움을 요청하는 S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S는 중상을 입은채 한 초소담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西獨측에서는 볼 수 없는 곳에 “뒹어졌다”. S는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엠블런스가 아니라 출발에만 45분이나 소요된 인대 한 위생차량에 실려 수송되었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라 멀리 떨어져있는 경찰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송이 완료된 것은 重傷을 입은지 2시간이 지나서였다.



연대 위생차량에는 차량 징발시 중상자가 있다는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의사가 동승하지 않았다. S는 應急治療를 받았더라면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다. 이같이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 조치는 생명 구조보다는 사건이 양측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한 命命 狀況과 부합한다. 비밀 준수는 國境法 27조(5)항2에 따르면 “필수적인 안전조치”로 여겨졌다. 생명 구조보다는 비밀 준수가 우선이었다는 점은 위생 병들이 차량 출발을 聯隊 醫務官에게 알리지 말아야 했고, 중대장은 야간 근무 중 “事故無”라고 기록해야 했으며, 희생자의 이름이 병원 출입 명부나 사망 진단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잘 부합한다. 사망자의 아버지도 1984년 12월 4일에서야 자신의 아들의 사망을 통고받았다.

국경에서의 射殺命命이 國賓 방문, 全黨大會, 자유독일청년(FDJ) 회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正當 防衛, 越境을 위한 高度의 技術 사용 또는 兵士의 탈출 등에 제한되었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중요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소의 경계도 강화되었다.

cc) 언급한 실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무단 越境의 저지는 중대한 이해로 간주되었으며, 生命을 포함한 個人的 法益은 이보다 비중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행위시 舊東獨內 국가 실무 관행에 따르면 하체 부분 조준사격을 생략한채 자동 연속 사격을 가하는 것이 違法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왜냐하면 피고는 자동 연속 사격을 통해 사살 위험을 높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逃走 沮止의 기회를 높였으며, 이는 國境法의 일반적인 해석상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이해된 逃走 沮止라는 目的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는 물론 언급한 판결 기준에 따르면 다리에 단발 조준 사격을 가함으로써 도주를 확실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蓋然性이 높은 경우에는 國境法 27조(5)항1에 근거한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간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같은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즉 S는 피고인들이 총격을 가할 당시 사다리를 대단하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S는 장벽꼭대기까지 이르는데 5초 정도를 소요했다. S는 몇초내에 장벽꼭대기를 넘어 자신을 안전하게 은닉시킬 수 있었다. 확인한 바로는 단발 사격을 가할 경우 2발을 사격하는 데는 적어도 1.5초가 걸린다. 도주저지를 위해 남겨진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 연속 사격(초당 10발 발사)으로 逃走阻止라는 목적을 달성할 기회가 훨씬 높았다. 이외에도 S와 총격 지점 간의 거리, 그리고 동 사건이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

dd) 피고인들의 행동은 舊東獨內 국가 실무 관행에서 보면 國境法 27조(2)항의 正常化 規定에 해당한다. 국가 실무 관행에 따르면 생명 보호 보다는 도주 저지가 우선이다. 법통제를 담당한 법원이나 舊東獨內 국은 이같은 실무 관행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행에 나타난 國境法 27조(2)항의 해석에 따르면 未畢的 故意와 연속 사격이라는 피고들의 행위는 정당화된다.

본 재판부는 이같은 고찰 방법에 있어 少年裁判所와는 다른 방식을 갖고 있다. 少年裁判所는 國境法을 그 법에 의해 일깨워진 “法治國家라는 外樣” 때문에 법치국가적 기준에 의거, 특히 比例性의 原則을 고려해 해석했다. 少年裁判所는 生命은 最高의 法益 (das höchste Rechtsgut)이기 때문에 國家의 豫防目的 (staatliche Präventionszwecke)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殺害하는 것, 또는 未畢的 故意에 의한 殺人이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少年裁判所의 견해에 따르면 國境法 27조(2)항은 國境法 27조에 표현된 國家目的이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고의적 살인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少年裁判所의 이같은 法理解는 독일헌법공화국 基本法과 유럽인권협약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少年裁判所의 法理解는 UZwG 11조 및 UZwGBw 16조의 해석의 기초가 된다. 한편 여기서 문

제가 되는 것은 동 규정의 해석이 아니라 형법 2조(3)항에 의거, 행위시 효력을 가졌던 외국법에 따른 正當化 事由가 보다 형량이 낮은 법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b) 피고인들의 행동이 당시 동독내 국가 실무 관행으로 적용된 舊東獨 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같은 正當化 事由 (國境法 27조(2)항)는 舊東獨도 인정한 일반적 법원칙을 손상하고 比例性의 原則을 심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형법 2조(3)항을 근거로 외국에서 인정된 정당화 사유에 대한 검토가 생겨난다 할지라도 참작되지 말아야 하는 정당화 사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상호 별개의 문제이다. 본 재판부는 그같은 정당화 사유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國境法 27조(2)항에 명시된 正當化 事由는 당시 舊東獨 국가 실무 관행에 의하면 다른 방법으로 무단 월경을 저지할 수 없을 경우 비무장한 채 일반적으로 인정된 法益을 위협함이 없이 越境을 시도하는 사람을 미필적 혹은 고의로 살인하는 것을 정당화해준다. 즉 無斷 越境의 禁止 실행이 여기서는 人命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이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국가 실무 관행에서 이해된 것과 같은 正當化 事由는 법 적용시 참작되어서는 안된다.

aa) 물론 행위시 인정된 正當化 事由를 참작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정당화 사유가 독일연방공화국의 公共秩序를 위반했다고 해서 舊法 하에서 발생한 행위를 판결할 때 正當化 事由를 참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州法院은 法的 安定性 (Rechtssicherheit)의 중요성을 지적했는데, 이는 타당한 견해이다. 法的 安定性은 형법 2조(3)항에 따라 보다 형량이 낮은 법을 검토할 때 원칙적으로 舊法에 의한 正當化 事由를 참작하는 것을 지지한다.

bb) 行爲時 인정된 正當化 事由는 그 정당화 사유 내에 正義 (Gerechtigkeit) 및 人間性 (Menschlichkeit) 의 기본 개념에 대한 重大

한 違反이 표현된 경우에만 보다 上位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重大한 違反이란 모든 민족에 공통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파괴한 경우를 말한다. 즉 實定法이 正義에 심하게 위배되어 올바른 正義의 法으로서 성격을 상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사회주의(나치스) 독재가 종식된 후 重大한 法毀損 (Rechtsverletzung)을 지칭하는데 바로 이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3권 225면, 232면 및 판결 65권 132면, 198면 이하 참조). 물론 東西獨 國경에서의 살인은 국가사회주의 시가의 내량 학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같은 관점을 이번 사건에 援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얻은 통찰, 즉 국가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판결할 때는 그 당시 국가가 보편적인 확신을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국가에 설정한 극단의 한계를 넘어섰는가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

cc) 오늘날에는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평가 척도가 첨가되었다. 즉 國際人權協約이 언제 어떤 국가가 세계 법공동체의 확신에 따라 인권을 침해했는가를 말해주는 근거가 된다. 여기에는 1960년 12월 19자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IPbürgR)이 특히 중요하다. 舊東獨은 1974년 동 협약에 가입했고, 1974년 11월 8일 비준서를 제출했다. 동 國際協約은 兩 독일 국가에서 1976년 3월 23일 발효되었다. 물론 舊東獨은 舊東獨 헌법 51조에 규정된 대로 동 협약에 의거 국내 관련법을 개정, 이를 이른바 舊東獨 인민회의 (Volkskammer)에서 비준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舊東獨이 동 협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도 “國內法을 이유로 자국에 부여된 의무 수행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즉 그 국가는 “국제법에 의해 국내 입법 영역에서 이같은 의무에 부응해 행동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舊東獨法을 평가할 때 國際法上 인정된 인권과 國境法 및 무기 사용 규정의 실제적 적용간에 모순이 발생할 경우, 이 모순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 국제법 조약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자가 법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평가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舊東獨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진 견해와는 달리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의 특별한 내용상 동 협약의 비준으로 동 협약이 이미 가입국 사람들에게 국가에 대한 일종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 여부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1)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12조(2)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自國을 포함 모든 나라를 떠날 자유가 있다.” 동 협약 12조(3)항에 따르면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그리고 國家 安全이나 公益 秩序의 保護 등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1979년 6월 28일자 舊東獨 旅券法 (Paßgesetz)은 이같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舊東獨은 旅券法 및 관련 규정들에 포함된 제한 사항은 공공 질서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항상 주장했다. 그러나 동 협약 12조(3)항 英文 텍스트(“The ....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와 동 조항의 형성 배경 나아가 동 조항의 국제적인 해석을 보면 公共秩序 (public order) 라는 관점은 包括的 法留保 (ein umfassender Gesetzesvorbehal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한은 例外的인 경우에 국한되어야 하며, 결코 居住 移轉의 自由 (Freizügigkeit) 나 移民權 (해외여행권, Ausreiserecht) 의 본질적 내용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Nowak, UNO-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1989, 23면 및 32면 이하, Hannum, The Right to leave and return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1987, 52면 이하 참조).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경제적, 사회적 福利라는 관점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제한하는 신빙성있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

UN人權委員會는 1977년과 1984년 舊東獨으로부터 동서독 국경상황에 관한 청문을 개최한 바 있다. 舊東獨은 1977년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은 國際人權協約에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1984년 UN보고서에서는 舊東獨은 다수의 외국여행 허용을 예로 들면서, 제한은 국가 안전과 공공 질서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舊東獨 대표는 口頭

審問에서 1982년 舊東獨 國境法은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에 부합하며, 동 협약 6조(생명권)와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國境守備隊는 다른 수단으로 범죄 - 여기서는 暴行 (英文으로는 “violence”라고 되어 있음)의 경우를 의미 - 를 충분히 저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총격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12조의 내용은 물론 舊東獨憲法 8조의 의미에서 “제민족의 평화적 공존과 협력에 봉사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國際法規”에 속하는 것이었다. 즉 舊東獨 헌법 8조는 명백히 다양한 국가의 협력과 공존을 규정한 國際法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12조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치들로서 법해석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가치들이다.

(2) 舊東獨 사민들에게는 자유로운 移民權이 예외적인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보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12조에 명시된 移民의 自由라는 인권은 舊東獨 국경행정에 의해 침해받았다.

東西獨 국경의 합법적 越境의 전제가 되는 여권발급 관련 舊東獨 법규(1979년 6월 28일자 여권법, 여권 및 비자 규정 - 1982년 2월 15일 보충규정)에 따르면 1989년 1월 1일(1988년 11월 30일자 비자규정 발효) 이전에는 정치적 특권층에 속하는 정년 퇴직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긴급한 家事問題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해외여행 신청이 불가능했다. 해외여행 신청건에 대한 결정은 1989년 1월 1일 이전에는 1979년 6월 28일자 관련 규정 17조에 따라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으며, 또한 그 시점까지는 어떤 異議提起 (1988년 11월 30일 비자규정 23조)도 불가능했다.

이 규정은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12조(3)항의 제한 규정, 즉 제한은 例外的인 경우에만 국한된다는 원칙과 출국 거부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보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본

재판부는 舊東獨 외에 다른 국가들도 자국 시민들의 移民 (외국여행)을 제한했으며 憲法 제정시 해외여행의 자유가 독립적인 基本權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같은 제한은 당시 우수한 인력의 國外流出을 우려해서 생겨났다는 사실도 참작하는 바이다. 본 재판부는 또한 UN내에서도 자국의 우수한 인력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개발 도상국들과 가능한 한 무제한의 외국 여행 자유를 추구한 서유럽 국가들간에 견해차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Hannum, The Right to leave and return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1987, 31면, 52면, 55면, 109면 이하). 본 재판부의 확인에 따르면 행위시에도 구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국가들에서는 移民 (국외 이주)와 관련 포괄적인 제한이 행해졌다 (Hannum, 같은 책, 96면 이하 참조).

그러나 舊東獨의 國境 行政은 특히 엄격하게 시행되었는데, 이는 舊東獨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은 동서독 국경을 넘어 西베를린과 서독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動機가 매우 강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경계선 저편에 사는 사람들과 한 국민에 속했으며, 그들과 다양한 친척 관계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었다.

(3) 특히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인 여권 및 비자규정으로 나타난 당시 상황은 “장벽, 철조망, 순찰, 사살 명령”이 지배했으며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6조에 대한 위반이 다반사로 행해졌던 당시 국경에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6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타고 나면서 生命權을 갖고 있다”. “그 누구도 恣意的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6조 (1)항 1과 3). 아직까지는 恣意的 (willkürlich) 이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이 많은 것은 아니나, 美대법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의 판결을 보면 국가 기관에 의한 사망을 초래하는 총기 사용은 比例性的의 原則에 따라 타인의 육체와 생명에 위해가 되는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982년 生命權에 관한 UN 인권위원회

의 “一般 論評” (General Comment)에는 恣意的 殺人으로부터의 生命 保護는 특히 중요하다는 견해가 받아들여졌다. 즉 국가기관에 의해 다른 사람의 생명 박탈이 허용되는 상황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재판부의 견해로는 제3자에게 무단 월경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危害할 목적으로 국경에서 총기 사용이 일어난 경우에는 恣意性에 해당된다. 무단 월경자에 대한 故意的 殺人을 포함하는 命令도 제3자에 대한 危害 目的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나아가 본 사건의 경우에는 國境 行政이 유례없이 완벽한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또한 國境法 27조 및 舊東獨 형법 213조(3)항에 의거 실제 상황에서 총기 사용이 통상 이유없이 국외 이주를 거부하는 행정 실무로 인해 舊東獨에서 西베를린 또는 西獨 지역으로 여행이 봉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차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舊東獨 국경행정은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6조와 12조를 동시에 위반함은 물론 인권을 침해했다.

(4) 본 재판부는 생명권에 관한 한 피고 W가 上告 理由에서 제시한 바 직무 규정 조항(UZwG 11조 및 UZwGBw 15조, 16조)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바이다. 재판부는 일반 문헌상의 견해와는 달리 비필적 살인 기도가 UZwGBw 16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지 않으며, 독일연방공화국(西獨)에서는 사람에 대한 총기 사용은 危險性 (연방대법원 형사심 판결 35권, 379면과 386면 참조)을 감안 국경 지대에서도 사람에 대한 防禦, 즉 사살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 프로바인(Frowein)과 견해를 같이 한다. 현행법의 총기 규정에 관한 현재의 해석이 比例性의 原則에 비추어볼 때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해 舊東獨 國境守備隊에 의한 총기 사용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독일연방공화국(西獨)에서는 국경개방으로 인해 舊東獨 國境守備隊의 총기 사용과 같은 비슷한 예를 찾을 수가 없다.



dd) 본 재판부의 견해로는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6조와 12조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가 東西獨問 國境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舊東獨 國境法 27조 및 舊東獨 형법 213조 (3)항 규정을 舊東獨 국가 실무 관행과 마찬가지로 正當化 事由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 인력이 대량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해당 국가로서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舊東獨 국경에서의 상황은 바로 인간의 생명권보다는 국가를 떠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해 관계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舊東獨法에 근거를 둔, 즉 國境法 27조에 규정된 正當化 事由는 당시 국경에서의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해석에서는 - 왜냐하면 인명보다는 국외 탈출을 중시하는, 국제법상 또는 比例性의 原則에 위반되는 원칙에 기초한 사유이기 때문에 -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正當化 事由는 또한 보다 刑種, 刑量이 가벼운 법(형법 2조(3)항 및 刑法典 導入法 315조(1)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참작될 수가 없는데, 이는 舊東獨은 이미 자국에 의해 인정된 원칙들을 정립할 때 正當化 事由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3. 다음으로 본 재판부는 國境法 27조가 舊東獨法에 고유한 해석 방법을 따를 경우 언급한 인권 침해가 회피 가능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같은 제한적인 正當化 事由는 基本法 103조(2)항을 고려할 때 참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토 결과 그같이 규정된 正當化 事由는 피고들의 행동(未畢的 殺人企圖에 의한 자동 연속 사격)을 정당화 해주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a) 본 재판부는 이같은 해석을 내리는데는 基本法이나 國際人權協約(MRK)를 끌어들이지 않았다. 즉 재판부는 단지 舊東獨法에서 인권보호적인 법해석을 위해 제시된 가이드 라인만 참조했다. 우선 舊東獨憲法 89조(2)항이 검토되었는데, 결과는 해당 법규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舊東獨憲法 30조에 따르면 舊東獨의 모든 시민의 人格(Persönlichkeit) 과 自由(Freiheit)는 침해받을 수 없으며, 제한은 법률에

의해 당사자가 형벌을 받을 행동을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즉 권리는 “법률이 이를 허용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30조 (2)항) 제한이 가능했다. 서방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헌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生命權과 身體 保護權은 舊東獨 헌법에는 명시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으며, 舊東獨 문헌에서도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E. Poppe (ed.), Grundrechte des Bürgers i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1980, 163면, 265면 참조). 그러나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 6조를 고려하면 人格을 침해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舊東獨 헌법 30조(1)항 규정은 生命權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舊東獨憲法 30조(2)항으로부터 생명에 대한 간접적 보호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舊東獨은 1987년 12월 8일 제4차 헌법 개정법을 통해 死刑制度를 폐지함으로써 명백히 생명이라는 인권을 고려했다. 舊東獨 헌법 30조(2)항2 규정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에서 比例性의 原則으로 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회주의(나치스) 독재 국가와는 달리 舊東獨에서는 실질적인 권력 소유자들의 자의적인 의지에 따라 법제정을 가능케하는 원리가 없었다. 법률은 拘束力을 갖고 있었으며 (헌법 49조(1)항 참조), 법률은 舊東獨 인민회의 (Volkskammer) 에서만 제정되어야 했다 (헌법 48조(2)항). “사회주의적 법치질서의 실현”을 위해 자유, 평화로운 삶,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司法 (Rechtspflege) 이 동원되었다(헌법 90조(1)항). 舊東獨 헌법 90조 (1)항에 따라 재판에 있어 법관의 독립성이 인정되었고 법률은 권력자의 어떤 指示나 국가 실무 관행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는 독자적 효력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 舊東獨의 법률들을 舊東獨 헌법 및 國際人權協約에 연관시켜 검토해 보면, 舊東獨 법에는 이같은 법의 獨立性의 요구를 부인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舊東獨 閣議 부의장은 1982년 3월 25일 인민회의에 國境法 법안을 제출하면서 특히 총기 사용에 관한 규정(27조)는 “다른 국가들이 국가기관에 대해 확정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총기사용은 “舊東獨 법질서를 파괴했거나 법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회피를 시도하

는” 사람들에 대해 취해지는 極端的 措置라는 것이다 (舊東獨 인민회의, 8대 국회, 제4차회의, 속기록 88면 이하 참조).

b)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協約”에 따른 國境法 27조의 해석은 舊東獨 헌법 302조(2)항2에 나타난 比例性的 原則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원칙은 또한 國境法 26조(2)항과 총기사용은 “사람에 대한 폭력 사용의 극단적 조치”라는 표현(國境法 27조(1)항1)에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사다리를 타고 장벽을 오른 사람을 舊東獨 형법 213조(3)항2 두번째 문장에 따라 重犯罪 行爲者로 간주한다면, 이는 比例性的 原則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도주는 舊東獨 형법 213조(3)항2 두번째 문장에 따른 重犯罪 行爲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國境法 27조(2)항에 따른 총기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舊東獨 최고법원과 대검찰청이 제시한 해석, 그리고 舊東獨 형법 213조(3)항2 다섯번째 문장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國境法 27조(2)항 조문은 舊東獨 법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발견되는 比例性的 原則을 참작하는 해석을 허용했다. 즉 國境法 27조(2)항1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國境守備隊는 國境法 27조(2)항1에 규정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총기사용이 허용되기는 하나, 정황상 비무장 상태이며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은 도주자를 故意的 殺人 또는 未畢的 殺人 意圖를 갖고 사살할 경우에는 正當化 事由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그같은 상황에서 자동 연속 사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未畢的 故意에 의한 살인은 國境法 27조(2)항2의 인권보호적 해석에 따르면 정당화되지 못한다. 사실 관계가 國境法 27조(2)항2 (舊東獨 형법 213조(3)항에 따른 범행협약이 짙은 인사의 체포)에 해당한다 해도 正當化 事由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즉 이 경우에는 생명의 보호가 우선권을 가지며, 國境法 27조 (5)항 1의 해석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c) 피고들의 행위는 國境法 27조(2)항에 따른 正當化 事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즉 피고들은 당시 舊東獨法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違法的 殺人을 행한 것이다.

4. 基本法 103조 (2)항에 따르면 행위는 行爲 發生時 그 행위의 可罰性 (Starfbarkeit)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遡及效 禁止 (Rückwirkungsverbot)]. 그러나 이 헌법 규정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a) 앞에서(2와 3부분) 제시한 상황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미 행위시 법인 舊東獨法의 올바른 해석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므로 基本法 103조(2)항이 피고들의 처벌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는 단지 책임 조각 사유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b) 그러나 본 재판부는 基本法 103조(2)항을 고려, 행위시 법이해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보았다. 行爲時 법에 국가의 명령에 의해 수행된 행동이 위법으로 나타나게 하는 척도가 제시된 경우(2와 3부분 참조), 소급효(遡及效) 금지는 처벌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행위시 존속했던 법상황을 평가하는데 주로 국가내 실제했던 권력상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基本法 103조(2)항의 적용은 다른 결과를 가져 온다. 피고에서 국가의 한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된 권리, 즉 생명권을 침해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명령으로부터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可罰性이 행위시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가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가의 여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aa) 동독정권하 국가의 임부 수행 과정에서 生命權과 같은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판결하는데 있어 基本法 103조(2)항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언급되고 있는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들(연방헌법재판소 판결 3권 225번 이하, 6권 195번 이하 참조)은 형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현행 형법의 公訴時效期間 (Verjährungsfrist) 이 연장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다. 정당화사유에 있어 遡及效 禁止 문제는 영국군 관할지역에 대한 舊東獨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제기되었다.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의 판결 및 특히 이른바 法曹人 裁判 (Juristenprozeß) (제 3 美군사재판소, 1947.12.4자 판결, 공식문서 29면 이하)에서 해양법의 강한 영향하에 적용된 遡及效 금지라는 관점은 후에 독일의 판결에서는 수용되지 않았다. 행위시 가벌성이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處罰禁止는 國際協約 15조와 MRK 7조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 두 규정은 (2)항에서 행위시 국제공동체에 의해 인정된 일반적인 법원칙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遡及效 禁止가 유죄판결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은 MRK 7조(2)항에 대해 동 규정은 기본법 103조(2)항의 한계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유보 조건을 달고 있다. 國際協約 15조(2)항에 대해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은 어떤 유보 조건도 첨가시키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基本法 103조(2)항은 헌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正當化 事由는 기본법 103조(2)항의 보호 영역에 의해 일반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이는 基本法 103조(2)항에 나타난 遡及效 금지에도 해당한다. 본 재판부는 遡及效 금지는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단계 (Tatbestandsstufe)에서만 관계하는 것이지 違法性 段階 (Rechtswidrigkeitsstufe)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는 견해를 달리 한다. 범죄 구성 요건과 正當化 事由간의 관계는 法益의 침해가 정당화된 경우에도 사회적 反價値 判決 (Unwerturteil) 을 허용하는 사실 관계를 항상 반영해주는 것은 아니다. 犯罪構成要件을 제한하거나 또는 무제한적인 犯罪構成要件의 경우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는데 나타나는 입법자의 판단은 기술적인 성질의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行爲時 違法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화 사유가 추후에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이전에 규정된 정당화사유가 참작되지 않는 경우는 舊法이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법 2조(3)에 따른 법률검토에서도 遡及效 禁止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 최근의 논의에서는 본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시 적용된 정당화사유는 상위 규범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 피고에게 불리하게 - 참작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왜냐하면 정당화 사유를 참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基本法 103조(2)항을 위반하면서 행위시 존재하지 않았던 가벌성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b) 본 재판부는 법적 검토 결과 이러한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1) 물론 이상의 법해석 과정에서 평화, 인간성을 파괴한 범죄 혹은 戰犯 (Kriegsverbrechen)에 대한 舊東獨 규정(특히 舊東獨 헌법 91조(1)항)이나 舊東獨 형법 95조 규정을 논거로 끌어들이 수는 없다. 舊東獨 형법 95조는 외관상 아무런 제한이 없이 基本權 내지는 인권에 위배되는 법률을 끌어들이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률내 동규정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건테 동 규정은 舊東獨 刑法 85조-94조에 규정된 범죄에만 관계하는 것이다. 즉 동 규정은 기본권이나 인권이라는 척도에서의 법률적 검토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舊東獨 형법 95조가 당시 공식적인 해석(舊東獨 註釋 95조 脚註 1 참조)에 따르면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 정관 8조의 내용을 수용해야만 했다는 점과도 부합한다.

(2)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基本法 103조(2)항과 피고인의 行爲가 違法性이라는 판단이 상호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이다: 즉 결정적인 문제는 행위가 저질러지기 전 可罰性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동 문제의 검토에 있어 담당판사는 순수한 사실관계라는 의미에서 행위시 국가 실무관행에 나타난 해석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법조문에 제시된 한계를 고려하면서 行爲時 法 (Tatzeitrecht)을 舊東獨 헌법에 비추어 해석할 때 인권 문제와 관련 舊東獨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같은 인권보호적인 법해석에 따른 行爲時 法은 기본법 103조(2)항의 의미에서 가벌성이 행위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피고의 행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정당화 사유는 命喪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국가 실무 관행에서는 받아들여졌으나, 올바른 해석이 가해진 법 으로부터는 당시 이미 정당화 사유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遡及效禁止는 피고를 恣意性에서 보호하고 국가의 형벌권 사용을 일반적인 법집행에 국한시키는 것이다. 즉 遡及效 禁止는 피고가 행위시 당시 효력을 가졌던 법의 존속에 부여했던 신뢰감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이같은 보호적 방향이 여기서 잘못 적용되고 있지 않다: 즉 법이 국가 실무관행에서와 같이 미래에도 人權에 反하는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기대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피고가 피고 행위의 위법성과 관련 범행시 舊東獨法을 올바로 해석할 경우 받게될 평가를 받는 경우, 이는 결코 恣意性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동 사건에 있어 이의 제기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이른바 법률에 의한 정당화 사유는 人權 指向的 해석에 따르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c) 이에 따라 피고들은 어떤 正當化 事由도 갖지 못하며, 違法的으로 형법 212조의 犯罪構成要件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법 2조(3)항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법이 舊東獨 형법의 해당 범죄 구성 요건보다 刑種, 刑量이 낮으므로 독일연방공화국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少年裁判所의 견해는 타당한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형법 213조에서 죄가 중하지 않는 경우 보다 낮은 형벌을 규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 III.

1.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한 결과 少年裁判所는 피고들에게 共同 殺人罪 (gemeinschaftlicher Totschlag, 형법전 212조 (25)항 2)를 적용했는데, 이같은 법률 적용은 타당한 것이다.

a) 자동 연속 사격과 관련 피고들은 이같은 행위가 희생자에게 위협하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少年裁判所는 피고들의 이같은 위협

행위를 피고인들이 수행해야 했던 命命과 연관시켰으며, 동 위협행위를 피고인들이 未畢的 殺人 意圖를 갖고 행동했다는 견해의 기초로 삼았는데, 이는 법적으로 타당한 견해다. 未畢的 故意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들의 행위는 聯邦大法院 형사심 판결(35년, 379년)에서 다루어진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이 사건은 담당 판사의 확인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은 했으나 설마 사망하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도주자에게 치명적 상해를 입혀 사망한 경우이다.

b) 피고 H도 加害者다. 피고 H는 물론 자신의 의도대로 희생자의 다리 부분만 방충시켰다. 그러나 두 피고는 모두 S의 장벽을 넘어가려는 기도를 저지키 위해 S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은 감수하면서 자동 연속 사격을 가했다. 물론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만 行爲의 共同遂行(형법 25조(2)항)에 대해 까다로운 요건 제시가 가능하다. 이점에 있어 이들에게는 少年裁判所의 판결이 정당하다. 두 피고인은 다른 수단으로 도주를 저지케할 수 없을 경우 도주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도주자에 사격을 가할 것을 명령받았다. 두 피고는 담당판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각각 다른 피고가 命命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행동했다. 피고인들은 각각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을 실행했다는 점을 인식케했다. 군인 신분의 두 피고인 각자가 자신의 총격 행위으로써 도주 저지에 기여했다는 점은 命命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피고 H는 力割分擔的 共犯(arbeitsteilige Mittäterschaft)이라는 의미에서 도주자를 사망케한 다른 피고인(W)의 행위를 자신에게 歸屬시켜야 한다.

共犯에 대한 舊東獨 형법 규정(22조(2)항2)은 독일연방공화국 형법 2조(3)항에 따라 형량이 낮은 판결을 내리게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미필적 살인 의도를 갖고 사격을 가했기 때문에 舊東獨 형법 22조(2)항2의 의미에서도 행위를 공동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사격의 순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희생자 S가 볼 때 장벽을 넘어감으로써



피고 W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어쨌든 피고 H가 그에게 사격을 가함으로써 줄어들었다. 따라서 피고 H도 희생자의 사망을 초래한 행위를 기도하였다.

c) 두 피고인은 명령에만 따라서 행동했던 단순 방조자들이 아니다. 연방 법원 (연방대법원 형사심 판결 18권, 87면)은 단순 방조자들에 대해서는 제2차 형법 개정법 25조 (1)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제한 바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役割分擔的 行爲의 相互 歸屬 (wechselseitige Zurechnung arbeitsteiligen Verhaltens)을 통해 모든 犯罪構成要件의 특성을 충족시켰음은 물론, 사격 직전에 명령을 수령한 자들과는 달리 도주자가 갑자기 출현했을 때 자신에게만 의존된 상태였으므로 행동의 裁量權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들의 행위가 바로 犯行이었음을 말해 준다.

2. 피고인들은 - 正當化 事由가 없는 違法的인 - 殺人을 명령에 의거 수행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들은 행위시 명령의 수행이 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피고인들의 책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a) 본 재판부는 이와 관련 우선 명령에 의한 행위시 舊東獨 刑法 258조(1)항이 형법 23조(3)항에 비추어볼 때 독일연방공화국법의 해당 규정 (군형법 5조(1)항)보다 형량이 적은 법인가 하는 점을 검토했다. 만약 군인이 舊東獨 형법 258조(1)항에 따라 명령 수행이 형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언제나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한다면, 舊東獨法은 독일연방공화국법보다 형량이 적은 법일 것이다. 舊東獨 註釋에 보여지는 해석들은 이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석은 법조문의 실제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舊東獨 형법 258조(1)항에 따르면 명령의 수행이 명백히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이나 형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군인은 자신의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규정은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형법위반의 명백성을 지적하는 것은 바로 행위시 형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형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형법 위반이 명백한가 아닌가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보다 낮은 형량을 규정한 독일연방공화국 軍刑法 5조(1)항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軍刑法은 연방군 군인에게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군형법 1조(1)항). 그러나 두 피고인이 그들에게 명령을 부여한 자에 대해 갖고 있던 복종관계를 舊東獨法 혹은 독일연방공화국법에 따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軍刑法 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b) 군형법 5조(1)항에 따르면 부하의 경우에는 자신이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정황상 명백히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지될 경우에만 책임이 부과된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자신의 행위의 違法性을 알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군형법 5조(1)항에 따라 면책이 될 수 있는가 여부는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알려진 정황에서 볼 때 형법(형법 11조(1)항5)의 의미에서 위법적인 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少年裁判所는 피고인들에게 알려진 정황상 피고인들이 명령에 따른 사격 행위를 통해 형법적 의미에서 殺人罪를 행했다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사실관계의 법적 평가 결과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少年裁判所는 피고들이 舊東獨 國境守備隊의 일원으로 특히나 집중적인 정치적 教化를 받았으며 “사회주의의 정신에서 독일연방공화국과 폐쇄 시설을 극복함으로써 舊東獨을 떠나려 했던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도 참작했다. 少年裁判所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군형법 5조(1)항의 의미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명백성이라는 高度의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군인은 명령에 대한 檢討 (Prüfung)의 의무가 없다. 군인은 의심이 있지만 아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명

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형법의 위반은 위반 행위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명백한 것이다.

한편 정황상 사격행위가 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명백했다는 少年裁判所의 견해에 대해 법률적인 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少年裁判所는 人間性的의 戒名 (Gebot der Menschlichkeit)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한 견해이며 여기에는 특히 가해자도 생명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少年裁判所는 人間性的의 戒名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는 無斷 越境行爲를 저지키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베를린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한 사람을 무단 사살케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했다. 심의 결과가 明白性 (offensichtlich)이라는 특성의 적용이 본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주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한다. 주지 하다시피 베를린 장벽과 기타 동서독 국경 지역에서 사살 행위가 행해진 수년 동안이나 舊東獨 정계, 군 지도부, 사법부 및 학계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경에서의 사살 행위에 대해 명백히 소견을 밝힌 적인 없었다. 피고인들의 성장 내력과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 安易性 (Bequemlichkeit), 法에 대한 無知 (Rechtsblindheit) 또는 獨自的 思考 缺如를 탓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가 행위 직후 “S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비인간적이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이 피고인 H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사격의 결과가 발생한 후 피고인이 이 문제와 心的으로 대결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良心의 가책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마지막으로 少年裁判所는 살인 금지라는 기본적인 계명을 범하는 것은 政治的인 教化를 받은 사람도 능히 알 수 있는 명백한 계명이며, 따라서 주어진 정황속에서 비무장 도주자를 자동연속사격으로 사살한 행위는 可恐스러운, 모든 합리적인 정당화를 벗어나는 행동이었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이는 타당한 것이다. 舊東獨 주민 다수가 국경에서의 총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에 부합한다. 이같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사건 진행의 비밀 준수라는 명령상황이나 희생자의 즉각적인 생명구조보다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상황도 舊東獨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주민들이 사살행위에 대해 거부반응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로 잘 알고 있었는지 말해 준다. 희생자 S는 직업이 복수로 國境守備隊에 차출되는 것을 엄격히 거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담당판사는 피고인들이 명령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명령에 따라 도주를 저지키 위해 무단 월경자를 사살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았다. 담당판사는 이같은 錯誤는 법상 인정되지 않은 正當化 事由의 한 예로서 형법 17조 (2)번째 문장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回避 가능했던 禁止 錯誤(Verbotsirrtum)라는 견해를 보였는데, 법적인 면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담당판사는 이 마지막 문제의 평가를 위해 다시 生命權은 모든 法益중 最高의 法益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법적인 이유에서 이같은 견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담당판사는 이와 관련 피고인들은 교육을 받을 시 인간성에 반하는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禁止 錯誤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舊東獨 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결코 형량이 낮은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형법 2조(3)항). 물론 舊東獨 문헌에는 행위자가 사회주의적인 기본 규범을 범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 경우(에만) 고의적으로 행동한다고 詳論하고 있다(舊東獨 刑法 註釋 6조 각주 1). 레크샤스(Lekschas)에 따르면 특히 故意 (Vorsatz)는 “스스로 인간 공동 생활의 기본규율과는 반대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행동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舊東獨형법 교과서, 1988년간, 288면). 공포된 舊東獨 법원의 판례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재판부는 명백히 형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誤謬的 假定이 舊東獨法에 따를 때 故意를 배제할 수도 있다라고 추론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의 법적 검토 결과 刑量 (Starfzumessung)은 適定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판사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듯이 피고인들이 베를린 장벽이 형성된 이후에 성장했으며, 출신과 인생역정 상 政治的 敎化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被告人들의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手工 기술자로서의 직업교육도 피고인들에게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군대내 위계 질서에서도 아주 낮은 그룹에 속했다. 피고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경과 연관된 이해 관계의 희생자들과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은 사태를 보다 개관할 수 있었으며 보다 세련된 교육을 받은 上級者들에 앞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형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피고인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부여토록 원인을 제공했으며, 少年裁判所는 이같은 사정을 참작했다고 볼 수 있다.

라움휘테(Laufhütte)      호르스트코테(Horstkotte)      셰퍼(Schäfer)

해거(Häger)      바스도르프(Basdorf)

## <부록 36>

獨逸民主共和國(DDR) 최고법원(舊東獨 대법원) 資料

- \* 독일민주공화국(DDR) 최고법원 자료는 두달에 1회 간행되며 内部用임.
- \* 간행인 : 舊東獨 최고법원(1026 Berlin, Littenstraße 13)

### <目次>

#### 1986년 7월 16일 獨逸民主共和國(DDR) 最高法院 총회와 法務部 지도부간 공동 협의

- 독일민주주의공화국(DDR) 最高法院과 法務部 共同文書:  
“第11次 全黨大會 決議 실현을 위한 독일민주공화국 법원의 과제”
- 공동문서 제안에 즈음한 閣議 부의장 겸 法務長官 호이징거(Heusinger) 연설문
- 공동문서 제안에 즈음한 독일민주공화국 最高法院長 자르게(Sarge) 박사 사 연설문
- 토론 기고분 :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 분과위원장 헤거(Siegfried Heger)  
로슈북 地區法院長 케르스텐(Inge Kersten)  
칼-뫼스市 地區法院長 휘네펠트(Gerhard Hünefeld) 박사

독일민주공화국 최고법원  
- 총 회 -

독일민주공화국  
법 무 부

##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 實踐을 위한 獨逸民主共和國(DDR) 法院의 課題

### I.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은 인민의 복지와 평화수호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으며 그 타월함이 입증된 對內外 政策의 계속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목적과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모든 司法活動에 있어 절대적인 기초를 형성한다. 즉 全黨大會 결의사항은 법관들, 法院書記 및 종사자들, 陪審員, 그리고 社會法院(gesellschaftliche Gerichte) 구성원들에게 行動準則과 업무의 質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全黨大會에서는 특히 司法業務가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사법분야 종사자들은 전력을 투구해 全黨大會 결의사항을 실천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 아나베르크 지역대표의 보고에 대한 1984년 10월 24일자 SED 중앙위원회 書記局의 결의는 현실적인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司法活動의 핵심은 다음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주의적 법을 동원, 대외정책적 목표와 黨·政府의 정책 지원
- 노동자·농민 권력의 전반적 강화, 사회주의적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의 보장, 특히 독일민주공화국(東獨)의 安全 및 공공질서 보장을 위한 조치
- 勞動者階級黨의 경제전략 지원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가운데 통일적인 경제, 사회정책의 지속적 추진,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 국민경제적 손실 방지.
- 근로자들의 사법활동 참여, 특히 社會法院에서의 陪審員 및 종사자들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확립
- 사회주의적 행동 양식의 발전,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勞動者階級

黨과 사회주의적 국가에 대한 신뢰 강화에 기여. 특히 생명, 건강, 개인적인 소유 및 권리 실현의 보장

- 靑少年들의 사회주의적 인격형성 촉진 및 社會主義的 가족관계 확립

司法部에 부과된 이같은 임부의 수행은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근간 조직의 지도하에 目標志向的인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은 주요 활동에 힘을 집중시키고, 전반적인 사법활동 영역에서 政治的이고도 專門的인 활동이 고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民主的 中央集權制度를 엄격히 관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차원에서는 法院의 自己 責任性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과 법률의 책임있는 운용, 근로자들과의 연대 강화, 人事問題에서의 개방성과 일관성은 法官들의 직업윤리에 속하는 것이며, 법원 종사자들의 업무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법원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당조직의 지도 활동을 보장하며, 각급 국가기관, 司法機關 公安機關간의 협력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勞組 및 자유독일청소년(FDJ)을 비롯한 諸般 사회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법원은 법과 법률, 질서와 안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회세력들, 집단, 주면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갖고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法院의 법교육, 계몽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법원은 법교육, 계몽 활동을 통해 의무와 권리의 일체감을 보다 강하게 제시해야 하며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愛國心 고취, 근로의욕 고취,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第11次 全黨大會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제들을 부여했다.

## II.

1. 法院의 主活動은 判決活動 (Rechtssprechung)이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특수한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국가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의 실현에 기여한다. 判決은 “모든 시민은 法앞에 平等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판결활동은 全黨大會에서 제시한 과제에 부합하게 法治성과 法的 安定性 (Rechtssicherheit) 을 高揚하는 수준높은 활동이 되어야 한다. 모든 판결은 충분한 정치적 고려, 법적용의 정확성, 설득력 있는 論據, 사회적 효과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을 주관하는 法院이 自己 責任性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適法性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는 형사사건의 재판시 특히 중요하다. 證據는 세심하게 제출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辯護權은 포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刑事訴訟의 경우 법원은 모든 罪人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責任을 물어야 하나, 無罪한 자가 處罰을 받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刑事訴訟에 있어서는 刑量과 관련해서는 개별화와 차별화의 원칙이 계속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사회주의 국가와 시민의 희생을 통해 개인적 蓄財를 일삼는 자들, 寄生蟲的인 삶을 사는 자들, 教化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규율들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刑法이 특히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抗訴審의 활동도 高度化되어야 한다. 上級法院에 의한 사법적 판단의 再審은 사회주의적 法治성과 正義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판결의 統一性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주의적 국가와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시

켜 준다. 抗訴節次는 모든 자료 선정 절차와 소송 규정들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誤謬가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判決指導는 最高法院(das Oberste Gericht,大法院), 그리고 각 관할 지역에서는 地區法院 (Bezirksgericht)<sup>1)</sup>에 의한 憲法 委任으로 생겨난다. 효율적인 판결지도를 위해서는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자기책임성의 보장과 더불어 民主的 中央集權制度의 원리를 철저히 관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고법원 총회(Plenum), 指導部 會同, 최고법원 법관들에 의한 방향 제시 및 共同文書에 제시된 指針은 완벽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또한 이 共同文書의 실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判決指導는 특히 司法活動의 內容的인 면에 집중되어야 한다. 지도 내 용으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설정될 수 있다:

- 판결의 統一性 보장
- 판결 분석과 지도활동을 위한 결론 도출
- 판결 실무를 위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 적용에 필요한 구속력있는 방향 제시
- 효율적이고 교육효과가 있는 소송 진행에 유의하면서 재판과정에 다양한 사회세력의 참여 보장
- 社會裁判의 판결 유도
- 재판절차와 관련해 사회주의적 법질서 違反行爲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1 地區法院 (Bezirksgericht)란 地區(Bezirk) 단위에 설치된 법원. 地區란 舊동독의 경우 수개의 市, 郡을 묶은 보다 큰 행정 단위로 총 14개의 地區가 있었음. 일반적으로 地區法院 산하에 市, 郡단위 법원으로 Kreisgericht가 속해 있음.

이 부여한 권한, 특히 法院에 의한 批判 (Gerichtskritik)<sup>2)</sup>으로 對應하고 指示 및 勸告를 통해 犯罪行爲 및 기타 法毀損 행위의 原因과 與件의 제거.

3. 黨과 政府의 대내외정책적 목표 지원, 사회주의적 국가 질서 및 법질서의 보호, 自國民의 업적 보호, 외부의 모든 攻擊行爲와 여건하에서 주민의 평화로운 삶의 보장은 모든 법영역에 있어 법원에 주어진 階級的 任務 (Klassenauftrag)이다.

법원은 다른 司法機關 및 公安機關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판결활동을 통해 노동자·농민의 권력 강화, 독일민주공화국(DDR)의 主權과 領土의 보전, 국경의 불가침성 보장, 通過路(transit route) 확보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의 安全保障에 기여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사법적 공격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憲法에 근거를 둔 독일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뒤흔드는 모든 파괴적인 공격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진정한 사회주의와 그 業績을 중상 모략하는 시도들은 강력하게 저지되어야 한다. 반면 法治, 秩序 그리고 安全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대외 경제정책상의 과제 수행에 기여해야 한다. 법원은 判決行爲를 통해 외국에서 自國民과 自國企業의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며 이들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민주공화국내에서의 外國人의 권리는 독일민주공화국 법질서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外國人이 관여된 소송은 독일민주공화국과 공화국 시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엄정하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司法共助와 領事條約을 양심껏 이행함으로써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제적 명망과 권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2 법원에 의한 비판(Gerichtskritik) : 법운용 절차와 관련 다른 국가기관 또는 사회기관의 미비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批判

4. 第11次 全黨大會에서 결의된 10大 經濟戰略은 법원에 高度의 要求를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 모든 작업장 근로자들이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게 작업에 임하도록 근로자들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사법활동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원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국가의 경제적인 資源이 최고도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며, 국민경제적 연관관계와 영향을 적극 고려하는 가운데 모든 판결을 내리야 한다.

법원은 경제전략 실현을 위한 中央司法機關의 共同文書에 기초, 다음의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 노동과 생산의 安定性 提高, 기술부문의 강화, 사회적 勞動資產(인력)의 활용도 제고, 제품의 품질 향상.
- 모범적인 질서, 규율, 안전을 위한 근로자 집단의 鬭爭 支持
- 근로자의 생산의욕 고취, 작업 여건·생활환경의 향상.

판결 활동을 통한 경제적 전략에 대한 법원의 支援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사회주의적 소유와 國民經濟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원은 海損, 火災, 생산 장애, 불량 경영, 사회주의적 소유의 낭비와 횡령, 기타 국민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犯罪行爲나 違法行爲를 처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손실에 대한 보상은 철저하게 관찰되어야 한다. 불법으로 획득한 이익은 철저하게 還收되어야 하며, 社會主義的 所有에 귀속하는 請求權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경제의 보호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비밀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첨단기술의 개발, 사용과 관련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어나는데 판결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첨단기술 개발 책임자가 일방적으로 不利益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과 기타 활동을 통해 경제전략 수행을 위한 콤비나트와 작업장들을 지원하고, 특히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의 統·원칙, 業績원칙, 사회주의적 合理化, 사회주의적 分業, 그리고 勞組의 권익보호를 위해 勞動法 (Arbeitsrecht)을 指導手段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작업장 근로자들이 점증하는 요구에 장기적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과학, 기술의 進歩가 중요하다.

發明者에 대한 소송이나 특허 소송은 특히 생산의 합리화, 현대화, 효율화, 물질과 에너지 경제분야에서의 進歩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극복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판결활동을 통해 法院은 주택건설 프로그램을 중요 사회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민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받으면서 이유가 있는 보장을 요구할 시는 법원은 제품과 서비스의 質 改善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시민들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귀속되는 지불 요구의 이행, 특히 집세와 기타 自명한 지불의무 이행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사회주의적 사회질서는 사회주의의 소중한 업적과 가치로서 法과 法治의 실현, 고도의 法的 安定性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사회주의적 행동 방식의 배양, 시민의 福利와 安全의 증대, 勞働者階級黨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생명, 건강, 사적 소유의 보호와 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보장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시민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暴行, 주택이나 기타 공간의 무단 침입, 性犯罪 등의 범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犯行者가 이미 받은 형벌에 의해 教化를 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범행을 시도할 시, 法院은 형법상의 책임을 계속 물어 사회주의적 공동체와 시민의 보호를 위해 重刑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어

야 한다.

범행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보호는 특히 중요한 일이다. 법원은 이러한 시민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리고 다른 기관(예를 들면 '國營保險')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非官僚主義的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법원은 가능한 한 시민들의 성취의욕, 사회주의적 法治에의 적극적 동참,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에서의 성실한 의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작업장을 불가피하게 바꾸어야 할 경우 기본권인 勞動權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며, 시민간 관계에서 투기성의 이익 발생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주고, 債務者가 자율적으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법원은 이외에도 모든 소송에 있어 형사소송, 민사소송 소송절차상의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소송 관계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나아가 법원은 시민들이 가까이 느끼는, 설득력을 갖춘 수준 높은 판결 활동을 통해 법원의 권위와 명망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6. 법원은 판결활동을 통해 사회주의적 青少年政策의 목표 실현과 사회주의적 가족관계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법원은 청소년들의 교육과 자기개발을 위한 社會的인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형법의 적용은 청소년의 인격형성과 청소년들이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봉사해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刑事訴訟에서는 절차상의 규정에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 형법상 규정된 책임 추궁에는 세심한 注意가 요망되며, 청소년 범행자들 - 특히 自由剝奪의 경우 - 의 敎化를 위한 사회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법원은 청소년에게 형법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성장과 관련한 특수성에 크게 유의해야 한다.

離婚 裁判은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離婚訴訟에서는 결혼의 존속을 위한 전제조건이 계속 성립하는 경우 가능한 한 和解에 이르도록 중재해

야 한다. 이혼 소송은 자녀양육권, 생활비 문제 등을 포함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離婚判決을 내려야 하는 경우 법원은 교육적 효과를 발휘, 이혼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지 인식하도록 책임감을 각성시키면서 이를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就業과 어머니로서의 자녀 양육을 결합시키는 문제는 법원이 地域 人民代表들과 이들이 운영하는 조직, 작업장, 관할권내 사회시설 등과 협력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한다.

7. 法院에 주어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을 지닌 指導 活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도 활동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판결 수준과 효과 제고
- 당원과의 협력 및 고도의 작업 요건을 갖춘 업무 집단의 형성
- 法院書記 및 社會法院과의 수준 높은 작업, 근로자의 재판절차 참여 보장
- 대중활동
- 업무조직, 정보교류 활동, 분석 활동의 수준 제고
- 請願과 관련한 업무의 개선
- 엄격한 節約原則에 입각해 財政部門에서의 과제 실현

모든 법원의 成果와 業績은 근본적으로 法院長의 活動에 달려 있다. 지도과정에서 法院長의 역할은 지도과정에서 民主的 中央集權制度를 실현하는 가운데 증대되어야 한다.

市·郡法院(Kreisgericht) 法院長의 활동에는 특별한 주목이 요구된다. 특히 “뤼르스텐발데 郡法院 指導 事例” 文書에 제시된 요구 사항들은 法院長 활동의 척도가 된다.

8. 法院 指導의 과제와 방법으로서 民主的 中央集權制를 완성하려면 중앙에서 제시한 기준과 決議 事項, 規定, 지침, 방향 제시를 반드시 시행하고 시행 여부를 감독하며, 시행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 上部機關에 보고함은 물론 지도의 형태로 폭넓은 경험교환과 實績比較 작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指導에 요구되는 또 다른 자질로는 정보교류 활동의 개선, 정보교류 규율의 엄수, 정보의 신뢰성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모든 차원에서의 분석작업과 작업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法院長은 指導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무제한적으로 上部 指導機關에 전달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거나 민감한 내용의 재판과 기타 중요한 재판 또는 指導過程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上部指導機關에 보고해야 한다.

9. 법원 업무의 質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法院 幹部들의 정치적·전문 지식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幹部들은 內的으로 확신이 있고, 국가의식이 투철하며 또한 사회주의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민감하며, 나아가 책임성 있는 법운용을 통해 고도의 法的 安定性 (Rechtssicherheit) 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조인들의 職業 倫理 教育이 개선되어야 한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는 새로운 요구에 대처하고 중앙의 요구 사항을 능동적, 창의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法院內 젊은 간부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대학교육중인 간부 후보생들에게는 실습기간 중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젊은 간부들은 初期에 지도적 역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젊은층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이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고도의 업적을 수행케함으로써 표현되어야 한다. 중앙차원, 지방차원에서 계획성있는 법조인 양성과 再敎育은 법원에 부여된 과제 수행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법조인 교육은 사회·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지식의 체계적 심화와 혁신, 교육과 문화수준의 향상에 역점이 주어져야 한다.

10. 中堅 법조인 간부들의 활동 성과를 높이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하며, 주민과 법원간의 신뢰관계 강화, 국가 권위의 提高, 법원의 총체적 임무 수행을 위한 이들의 책임도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指導 書記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드높이는 동시에 法院長의 지도활동과 관련한 이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指導書記는 특히 1) 집행분야에서의 업무실적 향상, 2) 訴 접수처 (Rechtsantragsstelle) 활동 개선 3) 높은 수준의 업무조직 확립에 기여해야 하며, 중견 법조인 간부들과 이하 간부요원들에 대해 체계적인 再敎育이 실시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11. 사법활동에 있어 陪審員(Schöffe)들의 역할은 강조되어야 한다. 陪審員들의 主課題는 판결이다. 배심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법관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陪審員들은 또한 사법적 판결의 시행, 특히 교육 및 보호관찰 재판 (Erziehungs- und Bewährungsprozesse) 의 관할, 法院에 의한 批判 (Gerichtskritik)과 참조 문서 작성의 시행 여부에 관한 감독, 근로자의 支拂義務 이행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

陪審員들의 독자적인 법 계몽, 교육활동은 지원되어야 한다. 陪審員들은 작업장과 가정에서 法治와 安全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경험을 전달받아야 한다. 陪審員 집단이 국가적 지도자들, 당간부들 그리고 노조 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法治實現을 위한 작업장 차원, 지역 차원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부

엇보다 배심원들의 책임성 있는 재판 참여, 배심원들의 자질 향상, 배심원들의 사법활동 평가, 작업장이나 주거지역 내에서의陪審員들의 예방적 법률활동 참여,陪審員 집단의 효율 제고에 역점을 둔 작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2. 각 법원은 자신의 관할권 내 社會法院 (gesellschaftliche Gerichte)의 활동이 고도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助言活動이 適期에 이루어지고 適法한 판결이 내리지며 고도의 교육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社會法院의 구성원들은 판결, 법실행, 법교육에 있어 고도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仲裁委員會 (Scheidskommision)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중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은 계획에 의거 실시되어야 하며, 노조에 대해서는 葛藤仲裁時 그리고 노조 구성원 資質向上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市, 郡·面 차원에서의 질서 확립을 위한 仲裁委員會의 가능성은 활용되어야 한다. 적절한 질서 위반 행위는 仲裁委員會의 조언과 판결에 맡겨야 한다. 또한 仲裁委員會의 자문을 받는 顧問團은 중재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이 정한 모든 과제를 계획에 따라 철저히 조언해야 한다.

13. SED 안나베르크 (Annaberg) 郡指導部の 報告와 관련해 1984년 10월 24일 중앙위원회 書記局 결의에 나타난 방향 제시와 지침은 법원에 대해 구속력있는 과제를 제시해 준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당 기관은 黨의 指導活動에 중요한 司法活動상의 인식과 경험들을 통보받아야 한다.

법원은 통일적인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과제 수행을 위해 地域 人民代表體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자신의 활동을 자신의 관할지역내 전체 공동체의 발전에 편입시켜야 한다. 地域 人民代表體와 관련, 법에 규정된 의무, 특히 사회주의 법치 실현을 위한 人民代表體의 기여 활동과 판결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보고 의무는 고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법원은 市·郡單位 의회의 장기적 프로그램과 기타 地域 人民代表體

議決事項을 기초로 지역 및 직장차원에서 법, 질서, 안전의 실현과 법교육, 법계몽 활동을 위한 조치들을 법원에 주어진 특별한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 법원은 좋은 성과를 一般化시키는데 협력함으로써 콤비나트, 일반 작업장 및 단체들에게 法違反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활동의 경험들을 대거 전달해 주어야 한다.

14. 법원은 각 기관의 自己責任性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검찰, 國家公證人 (Staatliche Notariat) 및 公安機關과의 協力體制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관할권내 犯罪나 기타 法毀損 行爲와의 전쟁에서 司法機關과 公安機關은 특히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상호 조정을 통한 협력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법원은 변호인단과도 사건 중심으로 신뢰성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 이같은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地區法院 차원에서 공동관심사에 대한 정기적 협의, 市·郡法院 (Kreisgericht)에서의 변호인단 지도부 및 支部間 업무 협의, 변호인단에 대한 교육활동, 법 계몽활동과 법교육 활동에 변호인단 참여 활동이 있어야 한다.

15. 법교육, 법계몽 활동은 관할 지역의 정치적·사상적 활동에 편입되어야 하며, 사회주의적 法解釋을 위해 중앙에서 제시한 중점사항에 집중해야 한다.

법원은 가능한 한 많은 방청인 앞에서의 재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에서의 재판 진행, 공판에 대한 평가 작업, 나아가 기타 사별 홍보활동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재판의 教育的 效果를 제고해야 한다. 법원은 法治, 질서, 규율, 안전 확립을 위한 작업장 근로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靑少年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법계몽 활동은 청소년들이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책임을 의식하고, 사회주의 사회 실현에 동참하며, 직장·휴

가 활동시 능동적이고 自己責任性이 있는 질서, 안전, 규율을 실천에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원은 특히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 재판, 법교육, 법계몽 활동의 통일성을 전체적으로 관철하고 홍보활동을 일상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선정, 시행한다.
- 주민들에게 법에 대한 지식, 특히 국가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法規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
- 법계몽 활동의 정치적·사상적 내용, 형태와 방법을 계속 개발한다.
- 언론에 대중적인 효과가 있는 법을 주제로 하는 출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특히 市·郡, 地區 단위로 언론인들과 협력 활동을 강화한다.

法院은 법교육, 법계몽 활동시 청소년 대표제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16. 法院의 자질과 효율성, 주민들 가운데 권위와 명망은 무엇보다 사법적 판결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指導活動은 특히 이와 관련한 과제들에 주력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 형법상 책임 추궁은 기한에 맞게 시행되도록 배려
- 保護監護 판결의 효과적 통제
- 罰金刑의 즉각적 시행
- 사회적 소유 관리자들의 청구권 보장, 범행에 의해 손실을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사법적 판결의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실행.

17. 임부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법원은 작업장 근로자들과의 긴밀한 인대성, 인적 교체에서 정직·철저·정의, 과학적 작업 방식, 법률과 국가 규율의 엄격한 준수, 그리고 성과중심의 임부시간의 철저한 활용을 위해 노력할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속한다:

- 재판 참여자의 권리를 완전 보장하는 가운데 집중적, 즉각적, 합리적 재판 진행.
- 주민 중심의 설득력있는, 수준높은 법원 실무를 통해 사회주의적 국가 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강화
- 사안 취급시 정확성, 대민봉사의식, 전문성을 갖춘 對民 活動
- 주민들이 사안을 신속 용이하게 파악 가능하도록 예약제도의 시행
- 작업장, 지역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法相談 활동

법원은 민원처리의 개선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안의 근저에 놓여 있는 갈등을 신속하게, 非官僚的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신뢰에 바탕을 둔 주민들과의 대화 모색, 住民代表와의 긴밀한 접촉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申請件에 대해서는 분석적 평가를 실시, 이를 업무 개선,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18. 법원은 업무조직의 합리화와 法院文化의 고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원내 컴퓨터 지원을 받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계획에 따라 정치적·사상적인 전제조건을 갖추고 幹部와 조직도 이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 설치된 사무용 컴퓨터는 작업의 質과 效率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가동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 법원에게 부과된 과제의 전반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법원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成果意慾을 높이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勞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같은 작업 분위기를 형성, 동료간 집단 협력이 이루어지고 各自가 전체 과제의 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집단이나 법원 종사자 집단의 창의력은 적극 수용하며 도덕적·물질적 차원에서 적극 장려해야 한다. 經驗交換이나 成果比較는 법원 자체적으로

그리고 地區法院의 중요한 指導形態로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1987년 7월 16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최고법원장 자르케 박사/ 법무장관 호이징거

## 共同文書 제안에 즈음한 舊東獨 閣議 부의장 겸 법무장관 호이징거 演說文

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第11次 全黨大會는 우리 나라 역사상 共和國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특히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독일민주공화국의 全體政策에 대한 항구적 신뢰와 고도의 力動性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全黨大會에서 도출된 성과들, 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했으며 새로운 성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 집단에 대해 그러했듯이 이번 全黨大會는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독일민주공화국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全黨大會 결의사항들은 향후 사법활동의 根幹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몇년간 척도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결의사항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로 부터 실천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정의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始作段階에 있습니다. 全黨大會 문서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작업과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을 실천하는 작업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결의한 최고법원과 법무성의 共同文書는 이같은 목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면에서 우수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持續적으로 發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계속적인 작업을 위해 커다란 장점입니다. 여기서 持續性이란 단지 日常業務로 되돌아 간다거나 이미 달성한 것을 보존하려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같은 現狀維持는 사회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持續性이란 오히려 새로운 과제에 부응해 새로운 성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全黨大會 중앙위원회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듯이,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進歩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행동을 지지하는 포괄적인 法制度”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우리에게 있어 모든 사법활동의 기초입니다. 법률이 사회발전 단계에 부합하며 수년전부터 安定的이고 未來指向的이었다는 점은 司法活動을 위해 커다란 잇집이 되고 있습니다. 司法機關의 모든 종사자들은 예를 들면 민법전이나 노동법전을 확고한 작업의 기초로 삼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모했는지 알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그 우수함이 입증된, 성공적인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모든 영역에서 質的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共同文書는 長期的으로 우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적 인사들과 법원 종사자들은 이를 기초로 진보와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적으로 이를 지향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共同文書에서 裁判의 질적 향상을 법원의 주요 과제로서 다시 설정했습니다. 判決活動은 법원의 가장 첫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업무의 사회적 효과를 제고하는 것은 바로 판결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共同文書에 제시된 몇가지 과제를 보다 詳論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法院의 역할과 책임, 사회적인 과제의 해결을 위한 기여를 높이며 활동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 指導活動의 중요한 정치적·사상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指導活動의 최우선은 모든 여건하에서 사회주의적 국가질서, 法治秩序의 확실한 고장을 위한 우리의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80년대의 사회적 요구와 현재 진행중인 사회적 변화가 우리의 활동에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통해 사회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辨證法을 체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勞働者階級黨의 사회적 전략 실현을 위한 단일한 사회주의적 국가권력에 부여된 기본과제는 우리의 역할을 결정해 주며, 우리 활동 수준과 효율성은 이 과제를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을 사회주의적 국가의 全體政策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의 指導活動에 있어 중요한 결과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고도의 국가 규율을 바탕으로 우리의 책임을 완전히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활동에 있어 國家全體의 課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地區法院, 市·郡法院 法院長의 정치적·사상적 활동이 고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法院長들은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全體政策의 실현에 고도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기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寄與 行爲는 사법활동의 모든 영역, 즉 판결의 실행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법계몽 및 법교육에서 訴 접수처 업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各自의 責任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발전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과제들을 고려, 他機關과의 協力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째, 우리는 인민에게 다가가는 업무방식을 통해 근로자들이 국가적 과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인민들이 秩序, 安全 규율의 확립에 기여토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업무방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치적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分析的이고도 기획력을 갖춘 업무추진과 더불어 指導活動의 과학적 기초인 고도의 정보교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共同文書에 제시된 몇가지 법원의 과제는 全體政策의 관점에서 黨 자료를 평가, 시행하는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엇보다

다 勞動者階級黨의 경제적 전략 지원을 위한 우리의 기여에 주목하는 바입니다.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고도화되어가는 사회발전의 과제들은 특히 경제적 과정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업무에서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이 力動的 發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幹部들 - 법관 및 法院書記들 - 이 정치적·사상적인 면에서 부여된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심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간부들이 국민경제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일상업무 속에서 어떻게 이 과정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고도의 判決行爲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判決行爲는 특히 우리의 국민 경제와 인민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 특히 勞動法 분야의 경우 범위반의 原因과 與件을 除去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확대된 방청석 앞에서 진행해야 할 公判의 선정, 사회주의적 所有에 귀속하는 청구권의 조속한 이행 또는 目的志向的 법개봉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물론 경제학을 새로이 공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幹部는 경제의 기본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국가권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다양하게 전개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과제들은 우리의 指導過程에 있어서도 民主的 中央集權制度를 확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은 특히 共同文書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주목하는 바입니다. 즉 판결활동에 있어 陪審員 (Schöffe)의 역할, 특히 작업장 근로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裁判人로서 책임성을 자각하며 陪審員으로서의 자질 향상, 그리고 社會法院 (gesellschaftliche Gerichte)의 활동 강화가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세력을 仲裁로 시민들이 판결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 권력 행사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基本權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 특히 작업장과 주거지역에서 - 法治, 질서, 안전,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전쟁에서 우리의 활동을 사회적 활동과 보다 긴밀히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第11次 全黨大會는 社會的 地域政策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統一性이 필요합니다. 즉 사회주의적 공동체가 法的 安定性과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점, 자신이 사회주의적 국가권력 활동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시민이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 人民代表體를 통해 법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全體政策의 실현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의 활동을 관할지역내 정치적·사회적 과제와 문제설정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특히 法治, 질서, 안전, 규율 제고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제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발전시킨 指導事例의 경험들을 一般化하는데 협력하고 노동 그룹의 지원, 특히 노동 그룹에 대한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또는 자유독일청소년(FDJ)의 법계몽, 법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또한 우선적으로 국가기관, 당, 그리고 관할지역내 社會組織體들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목적하에 분석작업과 情報交流 작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생겨난 경험들을 사법활동의 고도화, 특히 指導 活動의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은 또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업무의 효과와 사회적 法治, 安全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法的 安定性을 계속 공고히 하고 제고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민들간에 사회주의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데 특별히 기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이해는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헌법상의 基本權을 보장하는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전체 사법활동의 폭은 바로 헌법의 基本權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첫번째의 과제는 물론 수준 높은 判決行爲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민원처리 활동이나 法相談 활동 (Rechtsauskunft), 執行業務와 訴 接受處에서의 活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제 실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으로써 사회주의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幹部가 매일 이러한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해 낸다면, 우리의 업무는 계속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共同文書는 모든 법원의 能力과 成果는 法院長의 활동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能力이란 법관, 法院書記 및 기타 종사자들이 접수된 訴訟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근무의욕, 목적 지향, 強度, 合理性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成果란 사법적 판단과 실행의 適法性, 正義, 效力, 관사와 書記들의 법계몽, 법교육 활동의 효과 그리고 법원 정보교류활동의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法院長의 지도책임과 지도활동, 특히 판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法院長의 활동은 언급한 두가지 측면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法院長이 이같은 과제를 다 수행하려면 법원 집단내에서의 정치적 지도 활동, 법원의 司法活動 및 법원의 사회적·정치적 활동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共同文書는 市·郡單位 法院長들에게 특별히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진전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즉 法院에는 뷔아스텐 발데 (Fürstenwalde) 郡法院의 指導事例 문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文書와 더불어 여러 원칙과 방법을 기초로 조사된 郡法院의 경험들을 건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든 市·郡 法院長들의 정치적 임무입니다. 이 임무의 수행에는 장기적인 지도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도식적인 수용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 文書에 나타난 요구들은 훌륭한 지도 활동을 위한 척도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척도는 아닙니다. 指導事例의 창조적인 실천을 통해 指導事例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指導事例 文書는 사법활동에 있어서의 第11次 全黨大會의 역동적인 결의사항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力動性은 우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과 실행을 통일시키면서 판결의 수준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第 1 審級에서 내려진 判決이 法에 일치하며, 정당하고 올바른 근거를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전문적, 그리고 기획력을 갖춘 소송 절차 준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審에서 내려진 판결을 필수적으로 교정해야 한다면, 이는 법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1審에서 올바르게 내려진, 확실한 근거를 갖춘 판결은 法 毀損의 원인과 여건을 가장 신속히 제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판결을 계몽하는 것은 명백히 원하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第 2 審級 또는 중앙에 의한 판결 수정이 있을 경우 이 판결은 고도의 사회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관할지역 내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사법기관이 내리는 모든 판결이 얼마나 正義롭고 適法한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판사, 검사, 공증인, 변호사 혹은 書記는 재판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신뢰는 司法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請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사법활동에 있어서도 “이미 달성한 것을 다시 달성해 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통합니다. 이와 관련 사법적 판결의 실행 문제가 특히 원칙적인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법원의 판결을 일부만 시행하거나 집행을 주저하는 경우, 아무리 훌륭한 근거를 갖춘 판결이라도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이같은 업무방식은 법원이 보호를 위해 동원된 시민과 국가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며, 法的 安

定性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갈등 해결이나 비판, 지시와 관련해서는 물론 법계몽, 법교육과 관련, 法院이 갖고 있는 실제적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일은 가능한 한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法領域과 모든 법원에서 내려진 사법 판결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指導活動은 시행의 문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많은 法院의 경우 집행 신청건이 늘어나 書記들의 집행 신청건 처리에 관여하는 부문의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집행의 문제는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새로운 창의성, 즉 업무조직의 변화와 합리적 작업방식을 통해 많은 것이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사상적 영향력 행사와 교육, 地區法院, 市·郡法院 法院長들과 指導書記의 문제중심적 지도 활동을 통해 우리는 量的으로 늘어난 이 업무를 質적으로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電算 事務器機에 의해 주어진 처리 가능성을 소송절차에 얼마나 신속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전제조건이나 전문적인 자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정치적·사상적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끝년에만 해도 52대의 사무용 컴퓨터가 法院에 투입되는데, 이로써 地區法院은 모두 컴퓨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미 특히 家事裁判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수동식 법원통계를 이제는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아마 100대의 컴퓨터가 法院과 國家公證所에 투입될 것입니다.

다. 이로써 우리는 이미 1990년까지 설치 목표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써 이에 필요한 정치적·사상적 준비와 전문지식의 구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달에는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 실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와 국가지도부는 우리에게 고도의 요구를 제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무용 컴퓨터가 완비되는 순간부터 가동율을 높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1,500명 이상 종사자들을 法院의 이 새로운 機器 導入과 연관된 업무에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법원의 모든 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이 작업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가를 말해 줍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사법분야 종사자들을 일상 반복적 업무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판사, 공증인, 서기들이 法相談 업무, 訴 接受處 또는 공판에서 시민들의 사안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시간이 객관적으로 늘 부족했는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민들에게 그들을 위한 시간이 없으며, 그들이 제기하는 사안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우리는 분명 기획력을 갖춘 소송 준비, 판결의 효력 발생 조치, -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 법계몽과 법교육,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직업 재교육, 심화교육 조치를 위한 시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째, 第11次 全黨大會 보고서에는 “현재 그리고 향후에 진행될 재판들은 인간의 행동 방식, 활동, 책임의식, 창조적 활동과 집단성, 그리고 규율·의무·신뢰·공공의식과 같은 특성들을 보다 고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共產主義 교육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법원과 國家公證所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윤리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共同文書에 나타난 간부들의 활동에 대한 요구는 바로 여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간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發展의 展望을 항상 염두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부회의와 과거 法院長會議에

서는 이와 관련한 토론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본인은 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가지 사항만 적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지도 차원에서 법률 수업에 적절한 간부 후보들, 특히 독자적인 생산 활동 경험에 있는 후보들을 얻음으로써 우리 조직을 계급에 맞게 강화한다는 책임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간부를 예비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지도적 인사들은 예비간부 양성작업이 전적으로 중앙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地區法院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적절한 幹部候補들을 목적 의식을 갖고 양성하고 適期에 지도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부의 정치적, 전문지식적 수준은 전체 사법, 공증 활동의 수준 제고, 진정으로 사회주의적인 法文化 함양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郡부지역에 있는 郡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정치적·사상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작업장 근로자들과의 연대의식, 고도의 국가의식, 遵法精神, 정의감,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예절 등 법조인으로서의 태도와 능력을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법과 법률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부들을 교육, 양성하는 것 - 특히 일상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 은 국가 지도활동과 사회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지속적인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法院과 國家公證所에는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유능한 간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郡부의욕이 높으며 객관적으로 중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간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우수한 인력들도 업무에 있어 능력부족이나 誤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의 郡부 집단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즉 경험있는 간부들이 은퇴하고, 젊고 가능성있는 새로운 간부들이 流入됩니다. 따라서 판사, 공증인, 서기 또는 사법 종사자로서 역할에 대해 이에 연관된 모든 요구들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기본 태도를 함양하고 확립하기 위해서는 黨과 勞組와 공동으로 이들에 대해 훌륭한 정치적·사상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히 보다 거대한 사상적 내용과 과학성을 갖추고 幹部養成과 재교육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중도적 작업 결과에 만족하는 것을 극복하고 도덕적·물질적 자극 수단을 가하면서 최고의 업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간부들은 상호 신뢰 가운데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창조적인 근무 분위기 속에서 자질을 최고로 향상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집단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이같은 작업 분위기가 형성되면 최선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척도로 인정됩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노후한, 비효율적 작업 방식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새롭고 좋은 것에 대해 사람들은 개방적인 법입니다. 젊고 아직은 경험이 덜 풍부한 동료들은 이같은 작업 분위기에서는 탁월한 간부의 작업방식을 가까이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 나지는 않으며, 목적의식을 갖고 수행되고 조직되어야 합니다. 뤼어스텐발데 郡法院의 指導事例에 대한 작업은 이같은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아이제나흐 지역 사법기관 근무자들, 그리고 이들의 呼訴를 좇아 새로운 창의력과 의무감을 갖고 全黨大會 결의사항의 이행에 특별히 기여코자 노력한 모든 집단도 개방적, 창조적 자세로 현 과제의 해결을 시도한 위대한 지역에 속합니다. 지도활동에서 특히 간부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 주며, 이들이 자질을 향상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은 어디서나 훌륭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같은 작업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며, 안정적인 근무 집단은 확보하고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해 부여된 과제를 탁월하게 수행해 낼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집단의 능력을 활용하고 창조적 열의, 다양한 창의와 아이디어로 全黨大會 決意를 통해 주어진 고도의 요구를 영예롭게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共同文書 제안에 즈음한 舊東獨 최고법원장 자르게 박사 演說文

우리는 모두 1991년까지 우리 나라의 법원활동에 전략적 구상을 공동으로 세우고, 이로써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으로부터 司法活動의 위치, 목적, 내용을 결정하려는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인은 共同文書에는 법원이 향후 몇년간 지향해 나가야할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는 호이징거 법무장관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法院에 다양한 작업 분야를 포괄하며 상호 연결시키면서 二重作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주어야 할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10차 全黨大會 이후 실행된 성과도 이같은 작업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제시되는 共同文書는 全黨大會 이후 철저한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즉 이 文書는 수많은 토론과 숙의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1981년-1985년간 경험과 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출발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우리의 활동에 현재도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아나베르크 郡 지도부 보고에 대한 1984년 SED 중앙위원회(ZK) 書記局 결의
- 클라린마흐노프 (Kleinmachnow)에서의 地區法院, 市·郡法院 차원에서 지도활동 인사들에 대한 당 지도부 및 지도서기들의 자문 활동
- 中央法務機關 및 公安機關의 연간 공동계획에 의거, 수행된 활동, 입장, 공동 조치들

- 第11次 全黨大會 준비를 위한 국가, 법, 민주주의 위원회 결과

- 1985년 6월의 정치학, 法學會議 결과

- 最高法院 14차 총회와 地區에 대한 분석, 평가서

우리는 이같은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치 상황을 평가하고, 나아가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을 기초로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할 업무와 관련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判決과 指導活動과 관련, 본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法院의 主活動은 判決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술은 모든 과제의 첫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국가 권력 체계 내에서의 법원의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계있습니다. 이같은 前提는 緊急狀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주의 法院制度의 기본 임무입니다. 모든 다른 문제들은 이 임무에서 도출되거나 이 임무에 부속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부여해야 할 가장 책임이 막중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國家-市民, 市民-市民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인간 갈등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국가가 운영하는 法院의 업무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해 20만건 이상의 공판이 열리고, 이의 두배나 되는 지불·집행 사안, 50만건이나 되는 法 상담활동, 게다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법 해명 조치 - 이 모든 것을 1,300명의 法官이 감당해야 합니다. 법관 한 사람은 매년 평균 1,000명의 市民을 직, 간접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市·郡法院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늘어난 업무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수준이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각 판사의 업무의 양호 여부

는 個別 件의 수준과 그가 다룬 모든 소송의 합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출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사안이 선한 판사가 관장한다는 점, 담당 판사는 법적으로 정당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린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第 1審에서 내려진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구호는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 最高法院 제10차 총회에서 강조했듯이 - 上級審을 통해 모든 오류가 밝혀지고 교정된다는 점을 첨언해야 합니다.

最高法院 제4차 總會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우리는 法院文化의 고양을 위해 더욱 노력을 강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특히 非官僚主義的인 친절한 對民活動을 들 수 있습니다. 민원사항의 處理, 訴 接受 업무, 법률상담 등의 활동도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모든 활동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人生을 통해 법분야가 긴밀히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특히 비정치적 요구, 사회적 안정, 공공 질서의 보장, 경제전략에의 기여도 증가, 시민의 생명·건강·자유·존엄 및 재산의 보호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는 물론 判決指導를 위한 우리의 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호연관 (Verzahnung)은 단순히 同等한 配列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刑事訴訟은 우리의 특별한 주목 대상입니다. 刑事犯의 경우 危險은 사회주의 사회, 시민의 공동생활, 개인에게 특히 영향을 미칩니다. 刑事犯이 어떤 특성과 차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犯罪 退治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독일민주공화국은 이 문제에 있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범과 관련, 우리는 특히 다음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 未決 拘留의 형사 소송
- 靑少年에 대한 소송
- 再犯 處理
- 유형상 사회주의 사회에 특히 危害가 되는 범죄에 대한 소송
- 外國人 관여 소송

세째, 우리는 향후에도 법원 판결의 連續性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刑法에 해당됩니다. 자체 평가에 따르면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내 형사범과 관련 아주 적절하고 성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한 것으로 입증된 것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連續性은 固着 (Erstaaru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急激한 變化에 대해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 국가 안전, 공공질서, 시민보호에 있어 발생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 우리는 사전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再犯, 亂動, 폭력범, 주택 침입, 반사회적 범죄, 腐敗와 投機와 같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뢰감을 잃지 않으려면 輿論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당,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는 刑事犯으로부터의 보호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네째, 모든 사안, 모든 소송에 있어 適法性의 준수 는 모든 판사의 기본 의무입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方法이 또한 正當해야 합니다. 1984년 9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은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法的安定性은 근본적으로 법원의 행동과 전체적 모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共同文書에서 이 문제와 법원의 自己責任性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발견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책임성을 완전히 인식하는 가운데 다른 사법, 公安機關들과 좋은 의미에서의 동료로서 협력하는 것은 그동안 좋은 성과를 가져 왔으며, 법원에 대해서는 판사의 獨立性이라는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證據節次의 개선, 변호권 강화, 소송에 있어 일반 시민의 민주적 동참권 보장, 재판과 기록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사안의 대소를 떠나 適法性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의 기본 특성입니다. 適法性은 우리 업무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열쇠며, 사회주의적 삶의 질을 고양해주는 요소며, 우리나라에서의 人權의 實現이라는 문제에서 보다 능동적 태도를 갖출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섯째, 법원의 주활동이 판결이라는 점은 判決指導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판결지도는 최고급의 정치적 지도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원활동을 內的으로 規定해 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最高法院 제2차 총회에서 원칙적으로 표명한 견해, 즉 효과적인 判決指導가 사회주의적 법원에서도 民主的 中央集權制度라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게 해준다는 견해를 이번 共同文書에서도 수용했습니다. 이는 판사의 독립성이라는 원칙과 결코 矛盾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담당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은 裁量權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판결의 一般路線에 있어서는 중앙의 결의, 기준, 방향 제시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統一性和 平等의 原則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중앙의 방향 제사와 관할권 내에서의 상황을 의미있게 연결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의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중앙의 방향 제시를 각 판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신속하게 전환시켜 나가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最高法院에 의한 判決指導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또한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근간조직의 전투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最高法院의 判決指導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선출과 더불어 일련의 조치와 수정사항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추가적으로 4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통제그룹을 구성, 특히 총회 준비와 판결 분석, 그리고 성과 통제 작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당의 현실적인 정책에 부응하며 법원에서 전체 공화국내 법과 법률의 통일적 운영을 보장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효과적인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 6월 18일 이 자리에서 정치국원이요 독일민주공화국 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인 크렌츠(Krenz) 동지는 우리에게 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민주공화국 最高法院이 법원 판결의 적법성과 정의를 보장하면서 우리 맑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하에 다른 公安機關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社會主義社會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第11次 全黨大會에서 제시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크렌츠 동지께서 最高法院에 대해 하신 말씀은 구속력이 있는提言이며, 地區法院과 군사고등법원 지도활동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법원들, 그리고 法院長과 지도 인사들 및 집단 조직들은 판결 요청을 실행하고 독자적으로 소송작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 法院內 극히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共同文書는 바로 이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을 실행해야 할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共

同文書, 공동전략, 공동방향 제시를 통해 이미 훌륭한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이 共同文書를 수용한 이후 이제 身命을 다해 이를 완수하는 일반이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자계급 당의 지도하에 모든 여건 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원들은 이 임무를 훌륭히 받아들이고 수행해 낼 것을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SED中央委員會, 國家 및 法問題 分科委員會 헤거 (Siegfreid Heger) 委員長 討論 寄稿文

이 寄稿文에서 본인은 다시 한번 사법기관이 社會主義 法治를 확립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 第11次 全黨大會 평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당이 제10차 全黨大會 이후 사법기관이 달성한 성과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동지들이 이같은 가치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3개월간 最高法院과 법무성, 그리고 산하 법원들간에 全黨大會 결의사항의 창조적 실천을 위해 당에 제출된 중앙위원회 평가보고서와 다른 문서들을 철저히 연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 共同文書는 1987년 4월 8일 독일민주공화국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黨 프로그램 실천의 質的 跳躍을 위한 政治局 결의에 따라 地區法院 및 市·郡法院이 수행해야할 명확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제의 실천을 위한 最高法院과 법무부간의 협력, 실무자들과의 공동 토의, 이를 통한 사회주의적 공동작업의 심화는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당 지도인사들은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한 공동으로 과제를 계속적으로 분명히 설정하며, 文書의 실천



을 각자의 책임에 부응하는 공동의 지도과제로 인식한다는 이 결의에 전적인 지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는 법무부와 最高法院의 확고한 지도 하에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 실천을 위해 共同文書에서 제시된 이 과제가 地區法院, 市·郡法院內 전투적이며 신뢰감을 주는 집단에 의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그동안 法院長과 판사들, 그리고 법원 근무자들 모두가 당의 결의사항을 언제나, 어떤 여건하에서나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상의 책임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법무부와 最高法院간의 적극적인 공동 협력, 사회주의적 法治 實現을 위한 共同前線에서 黨의 결의에 기초한 실천 작업은 노동자·농민의 권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과제의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해 본인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共同文書의 실현에서 全黨大會 결의사항, 특히 평가보고서를 작업자료로 활용하고 모든 종사자들이 당의 全體政策을 기초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나베르트 郡 지도활동 보고에 대한 중앙위원회 書記局 決意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 사회질서에 대한 기존의 우수한 보호책은 새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司法活動, 공중활동의 영역에서 계급에 부응하는 올바른 判決이 내려지려면 적대자들의 새롭고 교묘한 공격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앙사법기관 및 地區次元의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특히 필수적입니다.

셋째, 주요 전투영역으로서 경제, 사회정책의 실현은 우리 모두에게 향후 몇년간 창조적 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共同文書는 국민경제와 사회주의적 소유의 보호 및 노동보호, 화재·海損으로부터의 보호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데, 모든 법분야가 이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이 분야에서는 예

방작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범행 동기, 오래된 껍질 등을 정확히 밝혀 내며, 法院에 의한 批判(Gerichtskritik) 업무에 있어 恠性에 쫓겨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은 교육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判決, 豫防 그리고 弘報活動은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法과 法院의 특수한 활동을 통해 과학, 기술혁명의 새로운 과제들, 첨단 기술의 도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든 세력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제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발전의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째, 第11次 全黨大會 평가 보고서에서 호네키 (Erich Honecker) 동지는 “모든 시민을 공동 사안의 해결에 보다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전통에 속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인민의 이해와 복지를 위한 우리의 法政策은 인민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陪審員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陪審員의 구성에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면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人民代表體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실현에 있어 지역 人民代表體를 통해 法的 安定성과 노동자·농민 국가의 법률, 법규의 엄격한 준수가 고도로 보장되도록 人民代表體들과 협력하고 인민대표체의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시민은 法앞에 平等하다”는 원칙에 따라 법과 법률을 책임있게 운용하는 것은 모든 법관의 직업윤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적법하고 올바른 판결만이 시민을 위한 司法活動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판결만이 인민과 당, 국가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訴訟法과 관련한 업무에 특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기된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당, 근무 집단에서 아이제나흐 地域의 모범을 따라 정치활동과 전투 분위기면에서 발전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樂觀主義와 現實論간에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 중앙위 國家 및 法問題 分科委員會 이름으로 본인은 이 고도의 과제 실현에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로슈톡 地區法院長 (Inge Kersten) 討論寄稿文

第11次 全黨大會의 첫 평가들과 全黨大會 결의사항 실천에 관한 서술은 全黨大會를 준비하면서 거둔 성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는 이미 반복된 평가 보고서에서 다루었으므로 본인은 이 자리에서는 다만 標題語 정도만 나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全黨大會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市·郡法院과 국가공증소의 모든 집단이 개인이 거둔, 그리고 거둘수 있었던 성과에 대한 개인, 집단차원의 토론을 기초로 깊은 의무감을 갖고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했음.
- 로슈톡市 등 각 市·郡法院의 우수한 경험들은 신속하게 모든 市, 郡法院에 一般化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성과를 가져 왔음.
- 당조직의 지도하에 아나베르크 郡 지도활동 보고에 대한 SED 중앙위원회 書記局 결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을 실시했으며, 각 근간 조

직의 전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법 업무의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적인 면에 중점을 두며, 市民保護的인 法運用이 가능했음.

- 철저한 분석 작업과 市, 郡單位 法院長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判決의 指導活動이 크게 개선되었음.
- 陪審員과 社會法院의 업무가 내용적으로 대폭 개선되었고, 체계화되었음.
- 이 과정에서 우리 地區內 전체 지도활동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특히 퀴어스텐발데 지역의 경험을 실천하는데도 나타났음.

전체사회의 발전 속도와 다양한 대내, 대외적 정치 사건들 그리고 결코 경감되지 않는 업무 부담은 全黨大會 기간중 그리고 全黨大會 이후 우리에게 휴식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地區法院 법관들은 선거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市·郡法院 동료들의 지원을 받았으며 독자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업무를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地區法院 19명의 판사는 232회나 선거를 준비하면서 단독으로 혹은 陪審員들과 공동으로 나서거나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결산을 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담은 컸으나, 공동 평가를 보면 이 모든 작업은 모든 이들에게 대만족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 보나도 질서, 안전, 법치 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이해가 줄어들지 않았음은 물론 시민들이 비판적인 견해 표시나 지원 용의를 보나 분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우리는 초청받은 상담자였으며, 우리 자신의 문제를 第11次 全黨大會에서 받은 최근의 평가와 관련해 도처에서 점검했습니다. 특히 國民前線 (Nationaler Front)과의 협력, 평가 단계에서의 판사들과 陪審員들에 의한 행사 수행은 아주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외적” 업무와 병행해 “대내적” 업무, 즉 모든 市·郡法院과 國家公證所의 모든 집단에서

의 全黨大會 평가 작업이 있었습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근간조직은 또한 전투 프로그램을 결의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지도 활동에 의해 공동의 조치가 확정되었습니다. 大型行使를 통한 全黨大會 자료의 평가 작업 외에도 특히 소규모 집단, 그룹의 대화들이 유의했는데, 이같은 대화들은 법조인들이 지도했으며 잘 준비된 가운데 진행되었고 全黨大會 보고, 토론, 결의에서부터 다양한 정치적 일정, 나아가 개별업무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취급되었습니다.

이에 보완 작업으로 5월과 6월에는 1986년 5월 8일 地區法院長 會議에 대한 평가를 위해 市·郡 法院長 및 國家公證所長들의 地區次元 會議가 있었습니다. 아이제나흐 勞組가 결의한 것과 같은 공동결의를 독자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동료간 토론을 보면 우리의 동료들은 이 전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업무 집단들에는 의무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집단적, 개인적 의무감이 나타나 있으며, 사법기관 노조그룹들은 공동결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뤼겐(Rügen)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의가 완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실은 명백합니다:

- 법원 固有業務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독자적인 업무의 질적 향상은 또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도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몇년전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質이나 量이나 하는 문제는 이제는 過去事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분야에서 업무 부담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적인 업무의 질적 향상이라는 요구는 우선은 判決에 해당하는 것이나, 오늘날 이미 판결과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效果와 弘報活動의 문제에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 移住가 심한 관할지역, 새로 설립된 도시구역, 혹은 중요 직장에서 판사들과 公證人의 상담시간 운영은 의무의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며, 우리 업무에 있어서도 시민중심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확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 指導事例의 작성이나 로슈톡 市에서의 상담 지점을 설치하는데 협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로슈톡 市 法院은 이러한 과정에서 직장 배심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미 취한 바 있습니다.

아나베르크 郡指導 활동보고서에 대한 결의, 아이제나흐 郡 사법기관 勞組의 결의, 법원과 國家公證所의 정치, 전문분야 지도에 관한 최근의 중앙 자료들, 그리고 오늘 채택하는 이 共同文書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는 第11次 全黨大會의 결의사항에 따른 우리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이 지도부에서 시도한 사법기관의 업무에 대한 고도의 평가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地區法院에서의 선거, 그리고 이와 더불어 地區法院, 市·郡法院에서의 간부 변동을 통해 우리 地區內 법원들은 간부 확충이라는 면에서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향후에도 아무 것도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결의사항의 실행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黨 基本組織의 지도하에 내용적 측면에서 합의를 갖춘, 보다 긴밀한 국가, 사회지도의 협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협력은 보다 개방적, 비판적, 생산적 업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같은 분위기 조성은 모든 종사자들의 전문분야, 정치적 자질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전제이며, 특히 업무에 대한 즐거움과 달성한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둘째, 모든 차원의 지도활동은 우리 업무의 각 분야에 대해 보다 주목하고, 모든 지도적 인사들이 독립적으로 신중하게 종사 집단을 인도하며 이들이 최고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市·郡 法院長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보다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법원 간부 요원들이 최고의 근무의욕을 갖고 최대의 성과를 발휘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며, 개인적인 이해와 전체 사회정책적 측면을 올바르게 고려하는 가운데 간부 요원들이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네째, 우리는 또한 지도활동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형성과 연관이 있는 문제들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앙문서의 비타협적 관철에서 시작, 민원사항의 처리, 陪審員과 사회제판 업무는 물론, 전체 사법, 공중활동에서 適法性 준수, 나아가 종사자들의 권리, 의무 준수까지 포함됩니다.

다섯째, 선거 진행상의 경험에 기초해 우리는 홍보활동을 통해 대중적으로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서 우리는 多數라는 목표보다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업무 폭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은 우리 地區에서 地區法院 法院長과 黨書記, 그리고 老經驗者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1945년-1963년 기간에 대한 로슈톡 地區內 법원 年代記 (Chronik)를 작성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연대기의 초창기는 로슈톡 地區法院 初代 法院長인 슈미게 동지의 記憶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바드 도베란 地區法院長을 역임하신 슈미게 동지의 따님께서 1945년-1952년까지 제1부를 작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한편 年代記 위원회를 재설치 했습니다. 年代記 제1부는 공화국 창건 35주년을 맞아 완성되었으며, 1952년-1963년 기간에 해당하는 연대기 제2부는 同 委員會가

第11次 全黨大會 준비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목적대로 완성되었습니다. 본인은 오늘 法務長官과 最高法院長님께 이 年代記 한부를 각각 증정하는 바입니다.

## 칼막스市 地區法院長 (Dr. Gerhard Hünefeld)의 討論 기고문

본인은 우선 最高法院과 법무부가 마련한 共同文書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共同文書는 판결의 수준과 판결의 사회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와 문제 제시를 主內容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指導活動이 없이는 質 높은 판결이 있기 힘들듯이,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의 실천을 위해 SED 근간조직에 의한 정치적 지도의 수준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判決, 지도활동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칼막스市 地區에서는 아나베르크 郡지도활동 보고에 대한 SED중앙위원회 서기국 결의사항 실천을 감독하기 위해 1986년 3월 수일간 SED 중앙위원회 법무담당 동지들이 정치적 지도활동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정치적 지도활동, 法院의 지도활동, 그리고 判決은 辦證法的 關係에 있다는 점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SED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을 통일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제대로 쫓아 나가자면 地區法院의 당조직은 정치적 지도활동을 통해 지구법원 모든 동지들과 근무자들이 업무에 있어 제기된 새로운 요구에 부응, 정치적·사상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의 수준 향상, 그리고 관할지역에 보다 통합적인 사법활동을 위해서는 각 법원과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판결행위시 第11次 全黨大會에서 제시된 전체 과제, 전체



정책에 유의, 一方的인 사법적 판단만을 고집하지 말 것

- 관할지역내에서 진행되는 근본적인 경제적 변혁과 정치적, 사회적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식 구비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제 11차 全黨大會서 제시한 사회주의적 국가권력 강화를 위한 일반노선은 노동자·농민의 권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 법원이 기여해야 할 결정적 지침을 제공하는 점을 인식할 것.

이같은 辨證法的 聯關關係를 정치적·사상적으로 해명하는데 있어 예를 들면 작업장 근로자와의 협력이라는 시각은 배제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적 시각만 고집한다면 이는 思考의 後進性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와 접근 방식의 협소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특히 법원과 地域 人民代表體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地域 人民代表體들이 바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또한 작업장과 주거 지역에 모범적인 질서, 안전, 규율, 법치의 확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조직과의 협력, 社會法院에 대한 判決指導, 사회적 세력의 참여가 이러한 지원 활동이며, 이는 수사 절차에서부터 公判, 그리고 법훼손의 원인과 여건 제거를 위한 공판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陪審員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물론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黨集團에서의 창조적 연구, 토론, 조언의 결과 1986년 6월에는 SED기본조직의 전투 프로그램이 결의되었는데, 이 전투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융통성, 계획성, 장기성, 구체성, 예측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提案들과는 구별됩니다. 엄격한 당의 지도 하에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설정되었습니다:

첫째, 정치면, 법률면에서의 判決의 수준 제고와 地區法院에 의한 지도할

동.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 思想的 宗派主義로 독일민주공화국 사회질서의 파괴를 기도하는 행위, 선동을 통해 국가 권위를 경시하거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犯行, 스포츠나 대형 행사에서의 안전, 질서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訴追
- 사회주의적 소유, 국가경제에 대한 범죄, 국가경제 자산의 낭비, 오용행위, 그리고 생산방해, 방화, 海損, 노동보호침해 등 범죄의 예방과 퇴치.
- 罰金刑과 拘束 수사의 개선
- 판결을 통한 시민과 기업에 대한 法的 安定性 보장, 사회적 노동인력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勞動法의 투입, 사회주의적 소유에 속하는 청구권 관철을 위한 市民法의 효과적 적용.
- 法批判과 지시, 방청석을 개방한 공판, 노동자와 청소년 대상으로 한 소송의 평가 작업을 통한 소송의 사회적 효과 제고
- 국가법원의 社會法院에 대한 판결지도를 포함, 사법분야에 있어 작업장 근로자들의 동참과 협력 강화

둘째, 黨 결의와 아나베르크, 아이제나흐, 뷔이스텐발테 지역에서 거둔 성과를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地區法院, 市·郡法院이 수행하는 전체 국가적, 사회적 활동의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모든 사법적 과제를 모범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창의성, 개인적·집단적 의무의 개발

셋째, 간부양성과 관련한 SED 중앙위원회 書記局 결의사항의 지속적 이행. 즉 地區法院의 지도활동과 市·郡 法院長에 대비한 간부의욕이 강한 간부 자원의 예비 및 정치적, 전문적 지식을 식견을 갖춘 요원으로 양성.

네째, 법원 모든 종사자들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무장화에 관한 閣議 결의 실행

다섯째, 地區法院 차원에서 SED 地區 지도부, 地區 의회, 지구위원회, 勞組 지도부, 콤비나트와의 정보교류 강화 및 地區法院과 검찰, 기타 公安機關과의 협력 강화.

여섯째, 민원사항 처리에 있어 정치적 고려

당의 과제 부여, 그리고 地區法院長, 副法院長, 지구의회 의장, 지도서기와 재정국장을 포함한 다른 부서의 長들의 확고한 평가 보고 및 성과 보고를 통해 우리는 第11次 全黨大會에서 제시된 방향이 이같은 활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 우리는 또한 과거보다는 더 개선된 형태로 判決指導, 간부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 법률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法院長과 地區法源 지도 간부들에게 최고의 요구를 제기하는 바이며, 지도 간부들이 자신의 책임을 확고히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市·郡法院長들과 공동으로 중앙의 결의, 규정, 지시, 방향제시를 모든 법관들과 법원 종사자들에게 관철시키는 임무가 성공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간부들의 집단적 능력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시행 여부에 관한 감독, 분석 활동, 判決指導 활동을 더욱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간부의 집단 능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共同文書는 地區法院 및 市·郡法院 法院長들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같은 요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하는 法院長의 지도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으로는 地區法院 法院長이 얼마나 많은 소송을 직접 취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最高法院(구동독 대법원) 2차, 10차 총회와 1984년 9월 5일자 중앙의 지시를 자신의 지도활동에 얼마나 결단성을 갖고 실현했는가 그리고 모든 법분야에서 第 2 審級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고히 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지도 활동에 있어 전적으로 共同文書가

제시한 방향을 좇아 地區法院과 市·郡法院의 힘을 判決과 指導問題에 집중시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법적 힘의 幅이 아니라 集中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관철이 法院의 主課題라고 해서 안되며, 第11次 全黨大會에서 당이 부여한 과제 실현이 법원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도활동을 통해 地區法院과 市·郡法院의 힘이 分散, 浪費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黨은 우리 法院에 대해 부여된 임부의 완벽한 실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갖고 법적으로 그리고 중앙에서 지정한 시한내에 사회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여된 업무를 극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효율성과 업무의 質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급히 成果指向的인 구체적 判決指導 활동, 철저한 업적추구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法院의 모든 지도 간부들은 상황, 능력, 그리고 업무 결과를 평가하는데 냉철함과 더불어 成果中心의 사고와 행동을 갖추어야 합니다.

냉철함과 현실성은 市·郡法院의 객관적 능력을 평가하는데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법관들은 사실 實績을 내야 한다는 압력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算術的으로 보면 법관 1인은 독일민주공화국 기준으로 평균 1일 한건의 소송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담이 커나고해서 능력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원이 수행해야 할 모든 작업장 상담, 다른 기관, 작업장과 市·郡法院 간의 공동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긴요한 連連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市·郡法院의 관할권에 기초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에서 수행된 우리의 활동은 법적인 책임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하게 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관할권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법원은 업무시간이라는 자원을 司法의 중요한 과제를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法院 업무의 合理化라는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두가지 원칙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地區法院, 市·郡法院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도 활동과 개인 자질의 제고를 통해 節次法, 중앙의 입장 및 指導文書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케 하는 것이 첫째 원칙이며, 법원이 사회적인 면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특정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立法的인 次元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법(ZPO) 78조 (3)항을 개정, 문서에 의한 판결 이유 제시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으로써 컴퓨터 지원을 받는 문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의 실천에 있어 법관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地區法院長으로서 우리의 간부 집단 및 市·郡法院長들과 공동으로 自己責任性의 강화 작업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1984년 9월 5일 베를린 助言에서 나온 교훈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自己責任性의 강화는 아주 복잡한 과정으로서 법원 내부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정치적 원칙의 실행 과정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黨機關의 지원을 얻을 것이며,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自己責任性의 강화는 경험적으로 볼 때 地區次元에서는 모든 법원장의 철저성, 관할지역 내에서의 확고한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法院長들의 태도는 소송에 있어 사회주의적 법치를 보존하고 판결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해 주는 支柱 役割을 해줍니다.

법원의 상대자들은 민원 제기, 견해 표명, 입장 토로에 있어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여기에 또한 第11次 全黨大會 결의사항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존중, 전문성, 원칙에 따른 관계 형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場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할 영역에서의 법원의 自己責任性 강화는 법원과 검찰청 및 다른 공안 기관과의 동료적 협력을 객관적으로 규정해주기 때문입니다. 法院長들은 지도적 인사간 업무협의를 통해 상호간 협력과정을 확고하고 심화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칼팍스市 地區法院의 이름으로 第11次 SED 全黨大會에서 제기된 모든 과제를 영예롭게, 훌륭하게 수행해내기 위해 우리 地區內 모든 법원이 총력을 기울일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간 것을 감히 약속하는 바입니다.

## <부록 37>

### 共產主義 暴政 犠牲者를 위한 名譽回復 宣言

- 1992. 6. 17. 聯邦議會 第9次 본회의 速記錄 -

Rita Süßmuth 의장: 남녀 동료의원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개회를 선언합니다.

본인은 우선 1953년 6월 17일을 상기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獨逸聯邦議會의 今日 본회의를 1953년 6월 17일 東베를린과 동독에서 일어난 인민봉기를 상기하면서 開會합니다. 250여곳이 넘는 각 도시에서 수십만 근로자들이 봉기한 후 자발적으로 舊東獨 政權에 반기를 들었던 바로 그날이 지난지 어언 39년이 되었습니다.

1953년도 봉기에 대해 전세계는 예리하게 주시했었습니다. 이 봉기는 社會의 不平等과 自由의 不在에 항거하는 봉기로서 自由選舉를 실시하자는 요구와 직결되었고 통일을 성취하자는 의지와 직결되었습니다. 自由選舉와 統一을 갈구한 이 봉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每年 회고해야 할 의무입니다.

6월 17일은 정당한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요구하다가, 自由와 民主主義를 요구하다가 생명을 잃었거나 장기간 옥고를 치렀던 수많은 사람들을 슬퍼해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1953년 6월 17일로부터 1989년 가을까지 自由와 民主主義를 위해 생명을 무릅쓰면서 헌신한 수많은 남녀시민들은 그날 이후 장구한 세월, 직업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不利益과 迫害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자유에의 갈구와 용기에 있어서 확을 그어 놓았습니다. 독일의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바로 이날은 개인의 犠牲이 자칫 망각되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속에서 6월 17일을 망각한다는 것은 곧 체제에 반대한다는 사상에, 정의와 자유를 용기있게 주창했기 때문에 迫害를 당했던 사람들인 共產主義 暴政 犠牲者를 우리의 기억속에서 지워버림을 뜻합니다. 共產主義 暴政 犠牲者들은 이와같은 투쟁을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을 정당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法司委員會는 오늘 정오 계획된 第一次 舊東獨 共產黨 不法清算法의 통과에 즈음하여 공산주의 폭정에 의한 犠牲者들을 위한 名譽回復宣言을 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각 정당 원내의원단은 獨逸聯邦議會가 이 名譽回復宣言을 할 것을 본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 주십시오.

(의원들이 일어서다)

獨逸聯邦議會는 공산주의 폭정을 통해 不法處分을 받은 犠牲者와 그 家族의 고난에 찬 숙명을 고귀하게 인정한다.

공산주의 폭력치하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 대부분 不法行爲나 인의적 행위로 처분되었다.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인간적 조건하에서 구속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刑務所에서 생명을 잃었다. 그들은 拷問과 苦難을 받았고 죽음을 당했다. 그들은 직업생활을 하는 도중 昇進을 못하도록 방해되었고 모욕과 멸시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強制連行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당한 채 고향으로부터, 집이나 농장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이들이 소유하던 재산은 파괴되었다. 獨逸聯邦議會는 무엇보다도 공산주의 不法措置로 인한 犠牲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獨逸聯邦議會는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40년간 분단되었던 독일이 자유스럽게 통일되도록 기여한 모든 犠牲者들에게 깊은 정의와 감사를 표한다.

여러분께서는 犠牲者들의 名譽回復을 위해 起立하셨습니다. 본인은 이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자 합니다. 1950년 봉기는 진압되었습니다만 동쪽과 서쪽의 自由에의 意志는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는 피난은 장벽으로도, 철조망으로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自由에의 意志는 강압적으로 묵살시킬 수 없었고 그래서 1989년 가을 다시금 再現되었습니다. 슬픔이 끝나고 自由가 찾아 왔습니다. 억압과 분단은 끝나고 自由와 統一이 달성되었습니다. 6월 17일은 “獨逸統一의 날”인 10월 3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두 날은 過去와 未來에 대한 義務이기도 합니다.



## <부록 38>

### Kohl 首相과 Jelzin 大統領의 不法被害者 復權關聯 共同聲明 (1992. 12. 16)

Helmuth Kohl 수상은 1992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였음 (발췌)

Helmuth Kohl 수상과 Boris Jelzin 대통령은 不法被害者の 復權에 관한 共同聲明을 발표함.

독일과 러시아는

- 양국 공동역사의 치유하기 힘든 斷面을 숙고하면서
- 人權과 民主主義와 法治國家를 표방한다는 징표로서
- 독일민족과 러시아 민족간의 和解가 진작되도록 기여한다는 소망이 담긴 이 聲明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함께 한다.

불의와 압제에 의한 죄없는 犠牲者들은 正義를 통해 再審되어야 한다. 兩國은 당면한 개개인이 復權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인정하고, 個別사안의 경우 이와같은 노력이 신속하게 속행되도록 한다.

양국은 不法的으로 유죄처벌을 받은 사람들과 不法的으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道德的으로 復權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이 共同聲明을 초월하여 개인적 복권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적 절차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兩國은 復權決定이 현행 법률이나 양국간의 국제적 의무사항에 저촉되는 요구사항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 합의한다.

<부록 39>

登記所의 未決件數 現況

-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추정치: 단위 1,000 -

Land	Offene Anträge								
	Dezember 1991	Juni 1992	Dezember 1992	Juni 1993	Dezember 1993	Juni 1994	Dezember 1994	März 1995	Juni 1995**)
Berlin .....	34,0	4,6	1,4	2,0	2,4	1,5	1,5	1,5	1,5
Brandenburg ....	130,0 140,0	191,5	199,6	156,0	133,4	121,8	112,0	107,2	102,0
Mecklenburg- Vorpommern ....	105,0	*)	129,8	116,9	110,1	105,9	100,9	91,0 ****)	90,0
Sachsen .....	131,0	129,4	119,8	97,7	90,1	89,4	87,9	86,4	84,0
Sachsen-Anhalt .	86,3	77,8	85,7	82,7	78,9	83,3	81,6	82,3	82,0
Thüringen .....	114,5	116,4	88,1	59,9	57,3	59,6	56,2	52,3	48,0
Summe ***) .....	610,8	639,6	624,4	513,8	472,2	461,5	440,1	420,7	407,5

\*) 현재 각 주정부에 의한 수치가 아직 계산되지 않았거나 계산중에 있으므로 수치가 제시될 수 없음.

\*\*) 편집마감일까지 새로운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임.

\*\*\*) 각 주가 최근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의 예상치

\*\*\*\*) 새로운 집계 내지 진행중인 등기부의 정리를 통한 차이